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644-000082-01

GOVP1200709371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백서

2006

농 립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요 약 문

돼지콜레라는 1950년대부터 38선 이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에 방역당국과 양돈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의기를 투합하여 1996년 6월에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거국적인 단계별 근절대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질병은 1999년 8월 이후 2002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국임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군과 동년 10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결과 발생원인은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유전형의 돼지콜레라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피나는 근절대책을 수행하였으나, 발생이 종식되어 가는 시점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종돈장인 S 축산의 종돈 분양과정을 통하여 종돈 구입농장과 역학관련농장 등 전국의 65개 농장으로 돼지콜레라가 확산되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랜 숙원이었던 돼지콜레라 재청정화는 무산되었고,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 중단 등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미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긴급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약 96,000두의 돼지가 처분되었고 183억원의 보상금 및 304억원의 방역비용 등 약 4,000억 원 이상의 농림부 방역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S 축산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10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차례 준비서면, 증인진술서 공방이 있었고, 약 10개월만인 2006년 1월 1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200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송부됨으로써 동 민사소송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산발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불안과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종돈장에서의 전염병 방역에 대한 방심과 과오가 우리 양돈산업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되새겨 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소송 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이를 통하여 얻은 소중한 교훈 등을 담아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 차

제1장 소송 개요	3
제2장 사건경과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	7
제3장 최종 조정안	241
제4장 평가 및 교훈	245

【 부 록 】

부록 I.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요약)	253
부록 II.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해외 발표 논문	264

여 백

〈 제1장 소송 개요 〉

I. 소송 개요 5

II. 형사소송 주요 내용 5

여 백

제1장 S 축산 소송 개요

I. 구상금 청구 소송 개요

1. 사건번호 :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 피고(S 축산)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전국에 분양하여 '03년 3~5월 전국적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혔기에 이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183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05.3.10)

2. 원고 : 대한민국

- 원고측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정평(변호사 : 정성재, 김태욱 등 3인)

3. 피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대표:○○○)

- 피고측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 강금실, 조용환 등 5인)

II. 형사소송 주요 내용

1. 소송배경

- '03.3.18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발생한 이후 5.8일까지 총 6개도(25개시·군), 65개 농장에서 발생(S 축산 포함)
- 경기도 김포 소재 S 축산 및 이곳에서 돼지를 분양 또는 재분양 받은 농가가 전체 65개 농장중 45개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대부분 발생농장에 인접한 농장임
- * 경기 13건, 경남 14, 경북 12, 전북 19, 충남 6, 전남 1 / 미발생(강원·충북·제주)

- ※ 전북 익산 최초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원발농장인 S 축산(제1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확인(3.22일)
- 동 발생을 계기로 살처분정책에서 예방접종정책으로 전환

2. 위반자 및 위반내용

- 위반자 : 농업회사법인 (주) S 축산(대표 : ○○○)
- 위반내용
 -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후보모돈)를 전국에 분양하여 '03년 3~5월 전국적 돼지콜레라 발생의 원인 제공
 -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 위반(1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 ▶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300만원이하 벌금)

3. 처리현황

- '03.03.25 김포경찰서에 고발조치(김포시청)
- '03.10.15 김포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
- '04.02.03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S 축산과 대표자 한규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 '04.03.08 김포시청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 '04.6.29 S 축산 처분 관련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
 - '04.7.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고
- '04.8.24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04.10.12 항고 기각
- '04.11.04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04.12.02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

〈 제2장 사건 경과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 〉

I. 주요 추진내용	9
II. 준비서면(질의·답변서) 주요 내용 및 원문 ...	11
III. 증인진술서	174
IV. 관련회의	232
IV. 관련자료	235

여 백

제2장 사건 경과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

I. 주요 추진 내용

1. 소송 주요 추진사항 및 준비서면 작성배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05.3.10)
 -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 원고의 민사소송 제기내용에 대한 피고측 변호인단의 답변자료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4.18 접수)
- 농림부측 변호인단 검역원 방문('05.5.16)
 -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질의서를 작성 송부하면 답변해 주기로 협의('05.5.17 질의서 도착)
- 원고측 변호인단의 준비서면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6.16 접수)
- 피고측 변호인단의 답변 준비서면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7.9 접수)
- 원고측 2차 준비서면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8.26 접수)
- 1차 변론일 참석('05.8.30, 서울중앙지방법원)
- 농림부측 변호인단에서 요구한 증빙자료 송부('05.9.16)
 -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요약)
 - 서울대 채찬희 교수의 S 축산 가검물 등에 대한 검사결과
 - 2003년 S 축산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해외 발표 논문
 - 기타(농림부 작성자료) : '03년 돼지콜레라 발생 살처분 농가 권리 양도 확인서 및 관련공문
- 원고측 3차 준비서면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10.4 접수)

- 피고측 3차 준비서면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10.21 접수)
- 주요 쟁점사항 점검 및 차기 공판 준비를 위한 농림부 회의 개최('05.11.2)
 - 참석자 : 원고측 변호인단, 안수환 박사, 농림부·검역원 관계관
 - 공증인 재판 증언에 앞서 주요 쟁점 점검 및 보완자료 토의
- 뉴질랜드 모리스 교수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및 관련내용 모리스 교수에게 E-mail 송부('05.11.21)
- 피고측 증인 진술서(S 축산 상무 최○○, 유○○ 교수)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12.1 접수)
- 원고측 증인 진술서(안수환 박사님)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12.8 접수)
- 피고측 증인 진술서 반박 자료 작성 송부 - 농림부측 변호인단('05.12.12)
- 피고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S 축산 상무 최○○, 유○○ 교수)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05.12.15 접수)
- 최종 준비서면 자료 작성 - 농림부측 변호인단에서 12.15일 법원에 제출
- 2차 변론일 참석('05.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 3차 변론일 참석('05.12.22,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피고측 변호인단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
 - 운영기간 : '05.12.19~22(4일간)
 - 원고측 증인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05.12.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 피고측에서 변론기일('06.1.19) 준비서면 제출자료 송부
- 원고측에서 변론기일('06.1.19) 준비서면 제출자료 송부
- S 축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 조종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06.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통보

II. 준비서면(질의·답변서) 주요 내용 및 원문

1. 손해 배상 청구의 소장 원문('05.3.10)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종돈(번식용으로 사용되는 암수컷 돼지)을 생산·분양하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03. 3. 내지 5.경 전국적으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 돼지콜레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서, 발병 시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돼지는 전부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는 악성전염병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6~10일 정도이나 20~30일 또는 그 이상 가는 경우((OIE 기준 : 40일)도 있으며, 감염경로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이며, 감염돼지의 이동, 차량, 축산도구, 사람(신발·의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됩니다.[갑제2호증, 제143쪽 이하 참조]

돼지콜레라는 국내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여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특히 2003. 3. 18.에서 같은 해 5. 8.까지 발생하였던 돼지콜레라(이하 “이 사건 돼지콜레라”라고 합니다)는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6개도 25개 시군 지역에서 총 65건(농장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발병돼지 96,000두의 살처분,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183억원, 방역비용 304억원, 약 4천억원의 대일 수출액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3.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병이 있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는 그 발생 원인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후보돈)을 전국적으로 분양한 것이 그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농장의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은 2002. 12. 중순경에서 2003. 1. 초순경이라는 추정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 피고의 돼지사육체계를 보면, 제2농장(인천 서구)은 핵돈(核豚)농장으로서 이곳에서 순종을 생산하여 제3농장(김포)으로 공급하면 제3농장에서는 약 65일 동안 사육, 후보돈을 생산하여 위탁사육농장(20개)으로 보내고, 위탁사육농장에서는 약 150일령까지 사육하면서 후보돈을 선발하여 제1농장(김포)으로 이동하는데 제1농장은 주로 대기소 역할을 하면서 약 1~3 주 가량 사육한 뒤 수분양농장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의 제1,2,3 농장과 위탁사육농장은 사실상 하나의 농장을 간주할 수 있는 단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한편 피고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종돈 생산, 분양 업체이어서 피고가 분양하는 돼지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 이는 곧 전국적인 발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농장에 비하여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성 발병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03. 1. 22.경 이후로 평상시에 비하여 사육현황 대비 폐사 두수가 현저히 늘어나게 되어 전염성질환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관할 관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염성질환 발병의 의심이 있는 돼지를 전국적으로 분양하여 결국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65개 농장을 보면, 그 중 1개가 피고의 위 제1농장이고, 44개 농장이 피고의 후보돈 분양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18곳이 인근전파 또는 오염사람·차량으로 인한 전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등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피고의 분양돼지로 인한 것이었음이 역학조사 결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5. 만약 피고가 2003. 1. 22.경 이후 급격히 늘어난 폐사 돼지에 대하여 약간의 주의를 하여 전염성질환 감염을 의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다면,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그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에 타 농장과 비견될 수 없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관련법령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해태한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가져왔으며, 감염돼지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183억원 지급 등으로 원고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6. 이에 원고는 위 보상금 183억원의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 원인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제1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 1. 갑제2호증 | 2002-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

2. 원고의 민사소송 제기내용에 대한 피고측 변호인단의 답변
자료 제출('05.4.1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본]

2005. 4. 22

답 변 서

사 건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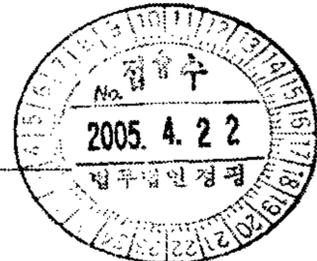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 기재 청구원인 중 피고가 종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3. 초 무렵 전국에

- 1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hl@horizonlaw.com



산재하여 있는 양돈농장에 종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급한 종돈을 통하여 2003. 3. 내지 5.경 전국의 여러 농장에 돼지콜레라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 피고와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에 대한 의문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83억원이나 되는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법정보상금 등 183억원의 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가정책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지출된 돈이 어떻게 해서 원고의 '손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에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지 피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하에서는 일응 원고가 향후 청구의 근거를 명백히 할 것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밝힐 것입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된 사실 주장으로 인하여 피고는 주요 거래처의 상

- 2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실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¹⁾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원고의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고 나아가 원고의 부당한 주장과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의 유포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반소를 고려중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나. 피고가 감염된 종돈을 전국 각지의 농장에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우선 무엇보다 피고는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종돈을 농장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설령 만에 하나 우연히 감염된 종돈이 일부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과정에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면 돼지콜레라가 엄청난 전파력을 지닌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확인된 돼지콜레라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종돈을 일반 농장들에 분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피고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무모한 일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일, 피고 농장에 돼지콜레라가 발병되었다면 피고로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당시에 양돈업계에서는 상당히

1)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산하 기관인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발표 내용(그 중 핵심이 갑 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임)을 통하여, 피고가 감염된 종돈을 공급한 것이 돼지콜레라의 발병원인으로 확인된 것처럼 단정하는 보도를 하게 하여, 피고는 주요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중단당하는 등 극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건설한 평판을 누리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종돈들을(그 감염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전국 각지의 농장에 분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피고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종돈을 농장에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것은 갑 제2호증(2002~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보고서) 뿐입니다. 그러나 매우 방대한 내용의 위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2003. 3. 무렵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피고가 공급한 종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3) 위 보고서에서 피고가 감염된 종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의 인정 근거로 제시된 대표적 자료는 피고가 사육하던 종돈 중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인된 돼지(이하 '감염 돼지'라고 함)들과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의 감염 돼지들에서 각기 검출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 염기서열 분석의 대상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2002년 이후 확인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들의 각 유전자 염기서열 중 위와 같은 단편 부분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실정입니다(갑 제2호증 하단 90면 그림 30).

- 4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hl@horizonlaw.com

외국의 발생 사례를 보더라도,²⁾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함)이 분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염기서열 부분은 돼지콜레라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지역 간 변이가 거의 없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병 원인 조사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감염돼지들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피고에서 발견된 돼지콜레라와 나머지 감염 농장에서 발견된 돼지콜레라의 염기서열이 (그것도 극히 일부만이) 동일하다는 점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피고가 사육하던 종돈들이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고, 그 후 피고가 위와 같이 감염된 종돈을 각 농장에 공급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농장에 돼지콜레라가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³⁾(이런 결과는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바이러스 근원이 동일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각 농장에서 발병이 일어난 구체적 시기나 유행율의 차이 등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나 이동 방향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2) 예를 들어, 1997-98년 네덜란드 발생 돼지콜레라 분리주의 염기서열 보고서 결과 (Widjoatmodjo, et al. 1999, Vet Microbiol. 66:291-299)

3) 외국과의 직접적인 돼지 이동이 극히 어렵고, 전국이 사실상 동일 생활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에 2002년 이후 국내에 유포된 돼지콜레라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돼지콜레라의 발병원인 규명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즉, 국내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감염된 전국 각 농장의 돼지들에서 추출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피고로부터 전국 각지의 농장으로 감염된 종돈이 공급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5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03년 돼지콜레라 발병 현황을 살펴보면, 2003. 3. 18. 전북 익산시 왕궁면 소재 송영민의 농장에서 돼지의 폐사(廢死)가 발생하는 등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최초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을 제2호중 보고서 82면). 이에 농림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초기에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세가 보고된 농장들의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공통점이 있음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소장 및 방역계장(이들 모두 수의사들임)이 2003. 3. 18. 오전 경⁴⁾ 피고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상증상 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돼지 40여 두에 대한 채혈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제1차 검사). 그러나 방역당국에서는 임상적으로 아무런 이상 증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채혈검사에서도 40여두 중 한마리도 양성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을 제1호중 양돈뉴스). 그런데 그 후 검역원에서 시행한 같은 달 20.⁵⁾ 및 23.⁶⁾의 추가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사육하고 있는 제1, 제2, 제3농장 및 14개의 계열농장 중 오직 제1농장의 일부 돼지들에 대하여 콜레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3. 20. 채혈로 이루어진 제2차 조사시에는 제1, 제2, 제3농장 및 14개의 계열농장의 약 800두에 대해 검사한 결과 오직 제1농장의 샘플 100두 중 단 2두에서, 3. 23. 채혈로 이루어진 제3차 조사시에는 제1농장 전체 921두 중 81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 4) 피고 농장에 대한 1차 검사가 2003. 3. 18. 오전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송영민 농장 등 초기의 발병 신고가 접수된 일시는 그 전날인 3. 17.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5) 갑 제2호중 하단 88면 <표 21>에서는 위 3. 20.자 채혈 검사를 1차 검사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3. 18.자 채혈에 따라 이루어진 1차 검사를 기준으로 하면 2차 검사입니다.
- 6) 마찬가지로 3. 18.자 채혈 검사를 1차 검사라고 하면 3. 23.자 채혈 검사는 3차 검사입니다.

- 6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5) 이와 같은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농장에서 발병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종돈 분양을 통하여 다른 농장으로 전파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발병신고를 한 송영민의 농장에서는 돼지콜레라로 인한 폐사가 발생할 정도로 그 질병 양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위에서 밝혀진 것처럼 피고 농장에서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및 검역원측의 전문가들이 3회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임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⁷⁾ 채혈을 통한 정밀 조사에서조차 극히 일부의 감염 사실만이 그것도 사후에나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고측 주장과 같이 돼지콜레라가 피고에서 위 송영민 등의 각 농장으로 전파된 것이 사실이라면, 돼지콜레라의 무서운 전염성에 비추어⁸⁾ 피고의 농장에서는 제1농장뿐 아니라 빈번한 왕래가 있는 제2, 제3농장 및 다른 계열농장에서도 양성판정이 나왔어야 합니다.⁹⁾ 또한 제1농장에서도 더 많은 양성판정의 두수가 나와야 했으며, 엄청난 규모의 폐사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폐사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차례에 걸친 임상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증상이 발견되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¹⁰⁾ 갑 제2호증 역

7) 평소의 피고 입장에서는 육안상으로 식별가능한 외부적 증상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채혈을 통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8) 원고의 소장 2면 참조

9) 소장 2면 하단 청구원인 4. 부분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농장은 핵돈농장인 제2농장을 비롯하여 후보돈을 사육하는 제3농장, 그 이후 이어지는 위탁사육농장, 제1농장 등 일련의 사육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피고 농장의 일부에서라도 감염이 있으면 전국 각 농장으로 발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 검역원이 실시한 제2차 및 제3차 검사 결과는 돼지콜레라의 임상 소견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혈액검

학조사 보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2차 및 3차 채혈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피고 농장에서 돼지콜레라의 증세가 발견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한편, 원고는 피고의 농장에서 2003. 1. 22.경 이후 사육현황 대비 폐사 두수(廢死頭數)가 현저히 늘어나게 되어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피고의 중요한 책임사유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김포시를 통하여 2003. 4.경 피고와 그 대표이사를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신고의무 미이행 등)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측의 위 고발에 따라 이루어진 장기간에 걸친 치밀하고 종합적인 수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나 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 미이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수사기관(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은 피고측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통하

사 결과를 통하여 혈중의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이므로 채혈 검사를 하기 전에는 피고로서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니다.

- 8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여 다투었으나 위 항고 등 사건 담당 수사기관 역시 원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위 고발 사건은 피고측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불기소 이유서 등).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전국적 발병 사태에 대한 피고측의 책임사유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아래 3.에서 상술함).

라. 역학적 조사의 엄격한 검증 필요성과 실패

(1)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2003. 3. 무렵 돼지콜레라의 발병 신고를 한 일부 농장이 그 전에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사실만을 중시하여 당시 돼지콜레라 발병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후에 그에 쫓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2) 원래 역학(疫學)¹¹⁾의 원칙상 특정 발병 대상군(이 사건의 경우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농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감염된' 종돈을 공급받은 것)를 발병의 원인으로 판정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학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

11) 질병의 발생 양상, 분포 및 원인 등을 규명하는 의학의 한 분야

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필요로 하며 한 때 원인으로 생각하였던 요소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역학조사 결과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위(胃) 내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라는 세균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많은 편인데, 종래 위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위암 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에 걸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론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을 제3호증 한겨레신문 기사).

(3) 이와 같이 역학적 조사를 통하여 특정한 요소가 특정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선정 및 분석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요소에 대한 엄밀한 비교 확인 등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병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발병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관련 요소간 비교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발병 사태 초기에 피고의 종돈 공급이 발병요인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 조사과정은 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선정¹²⁾과 조사결과 분석¹³⁾ 과정 등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병의 원인

12) 이른바 목적학적 예찰의 대상을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81개 농장에 집중함(갑 제2호증 83면)

13) 갑 제2호증 91/92면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81개 농장 중에도 38개 농장에서만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감염이 확인된 농장 중에서도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종돈(입식돈)에서는 음성(감염 없음)이 나온 반면 그 외 나머지 돼지들(동거돈)에서만 양성인 농장도 있습니다(92면 표 25-1 중 14/15번 당진 김진원, 김강수 농장). 피고 농장의 종돈분양과 무관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이 피고의 감염 돼지 공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마. 2003년 돼지콜레라의 발병과 관련된 고려 요소

(1) 이 사건 발병 전인 2001. 12. 무렵 방역당국은 그 이전에 지속해 온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2 보도자료 2면 상단). 위와 같은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 이후 2002. 4. 18. 철원에서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 강화 및 김포, 같은 해 12.에는 경기 이천에서 발생되어 (방역당국의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돼지콜레라는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인천 및 경기지역에 국한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5일 후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 11.경에는 강화지역에서 이동제한 기간동안 돼지가 전라도지역으로 무단 반출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의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보도자료). 설상가상 격으로 2003. 1. 초에는 이동제한이 해제되었고, 그 이후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2003. 2.에는 충남 아산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발표 후 다시 음성으로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의 2 내지 5 각 양돈뉴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돼지콜레라가 처음 보고된 2003. 3. 18. 무

된 사실이 18건이나 되었음에도 검역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전파나 차량에 의한 오염이라고 단정 하였으나, 이러한 인근전파 등으로도 볼 수 없어 어떤 이유로도 피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농장이 2개 있기도 합니다(83면).

- 11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렵 상황은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국내 전역에 이미 돼지콜레라의 감염률이 높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즉, 당시 국내 각 농장에는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지 아니한 돼지 사육 농장 중에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경우 돼지콜레라 감염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역학조사의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 두수나 다수의 돼지들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중에 소수나마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81개 농장에 집중하여 정밀검사¹⁴⁾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 농장이 많았던 사실만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발병이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이러한 추론의 문제점은 아래 바.에서 상술함). 그러나 실제로는 그에 비하여, 발병 지역 돼지들의 무단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차량 기타 감염체의 다양한 이동 등 방역당국의 이동제한 기간 및 해제 이후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돼지콜레라가 전파되어 만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관련 요소들에 대한 종합

14) 갑 제2호증 83면에 의하면 검역원에서는 이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 '목적학적 예찰'이라고 표현하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식은 계획적으로 상당 규모의 돼지들을 대상으로 임상관찰 및 유전자 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적인 분석이 생략된 채 피고 농장에서 감염된 종돈을 공급한 것이 이 사건 전국적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 정밀조사 대상 선택과정의 문제점

(1) 검역원이 실시한 이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 받은 농장들에 집중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 농장들에서는 실제 임상적으로 발견이 가능한 수준¹⁵⁾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병 상태가 '발견' 내지 '발현'되었을 것입니다.¹⁶⁾ 그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돼지 사육 농장은 (물론 피고와 같은 전문 종돈 공급업체에서 조차) 채혈을 통한 유전자 검사와 같은 정밀조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¹⁷⁾ 따라서 평소에는 외관상 식별가능한 임상증세의 관찰, 발견 등이 있는 경우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만 돼지콜레라의 발병여부를 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검역원에서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유행 초기인 2003. 3. 20. 무렵 발병 신고를 한 일부 농장들이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이후

15) 이는 각 농장의 가축주가 돼지의 외관상 증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함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됨

16) 을 제5호중의 3 보도자료 중 상단에 보면, “추가 발생된 것은 기 발생지역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상원축산의 종돈장에서 이미 감염된 것이 발현된 것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위 인용 부분 중 밑줄 친 상원축산의 종돈장에서 라는 부분은 검증된 것이 아닌 반면에 이미 감염이 이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통하여 발견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17) 채혈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돼지콜레라의 확인 진단은 오로지 방역당국인 검역원만이 배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농장이나 피고가 스스로 이를 실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 혈청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정밀 검사의 대상을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에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다.¹⁸⁾ 그리고 위와 같은 정밀 검사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어 나오기도 전에 농림부에서는 이 사건 발병 사태는 피고가 감염된 종돈을 공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을 제5호중의 3 내지 7 각 보도자료). 그리고 검역원에서 정밀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것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진 훨씬 이후였습니다(을 제5호중의 8, 9.).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다른 다양한 가능한 원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것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판정하려면,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돼지의 사육 규모나 농장의 위치 등에 있어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동일한 정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두 무리(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무리와 피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무리)의 감염률을 비교하였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엄격한 비교 결과 다른 조건(예를 들어 농장의 위치나 사육 규모, 돼지들의 구성, 업무자의 외부 출입 정도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의 차이로 인하여 감염률의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발병 사태는 피고의 종돈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역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역학조사의

18) 갑 제2호중 하단 83번 이하를 보면, S 축산으로부터 분양받은 농장 81개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35개 농장에서 감염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지 않은 농장의 경우에는 임상 증세가 발현되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로 검역원에서는 피고가 종돈을 분양한 농장(81개 상당)에 대하여 목적학적 예찰(임상관찰 및 정밀검사)을 실시한 결과 “신고 이전에” 돼지콜레라 감염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¹⁹⁾ 위 기록에 의하면 검역원은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들의 경우에는 임상증세 발견에 의한 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대규모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피고로부터 종돈을 분양받지 않은 나머지 농장들의 경우에는 임상증세의 발견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이 사건 발병 직후인 2003. 4.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백신 재개를 함으로써 돼지콜레라 감염에 대한 임상증세의 발견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²⁰⁾

특히,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모두가 (채혈을 통한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상²¹⁾ 위와 같은 차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역학조사의 결과는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이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

19) 갑 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83면 하단

20) 단일 위와 같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의 종돈 공급과 무관한 농장들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한 감염 및 그 원인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인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감염 및 그 원인 확인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마치 전국 각지의 대부분의 감염이 피고의 종돈 공급에서 비롯된 것 같은 상황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21) 설사 임상 증세가 나타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농장에서 이를 간과한 경우에는 역시 감염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서는 간과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의 돼지들은 임상적으로 발견이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감염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지 않은 농장들의 경우 (감염이 있었다고 하여도 임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임상증세가 나타났어도 농장주가 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기에) 실제 감염률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진단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슷한 시기임에도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들에서만 돼지콜레라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고, 나아가 이 사건 발병의 전체적인 원인이 피고가 감염된 종돈 공급인 것처럼 무리한 결론이 유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그 조사 대상군의 설정 및 조사 실시과정에서 역학적 연구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 조사 결과 역시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의 원용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포시장은 피고 주식회사 S 축산의 대표 ○○○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 고발에 따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6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②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hlh@horizonlaw.com

피의자 ○○○은 주식회사 S 축산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직영 3개 농장의 총괄책임자인바,

2003. 3. 18.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등 전국 32개 농장의 콜레라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촌면 태리 산 10 소재 상원축산에서 분양된 돼지 후보돈의 분양 이전에 이미 콜레라의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2003. 2. 1. 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사이에 관리하고 있는 3개 농장에서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약 2,404두 가량의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것이다.

나. 1차 수사 결과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부천지청에서는 피고인 ○○○은 물론 고발인 김포시장의 부하직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직원,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질 신문 등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도 위 한규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검사는 2004. 1. 30. 2003형제28653호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1 불기소 이유서).

나. 재기 수사 결과

- 17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5층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 한편 고발인 김포시장은 위와 같은 부천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부천지청 검사는 직권으로 수사를 재기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 위 한규진의 혐의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2004. 6. 30. 2004형제8267호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을 제5호중의 2).

(2) 수사한 결과

- 피의자들이 2003. 2. 1.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폐사된 돼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됨
- 피의자들은 당시 위 상원축산에 돼지 폐사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강화, 김포 지역이 돼지 콜레라 발병지역이라 돼지의 이동을 제한 함으로써 밀착에 의하여 폐사되는 돼지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폐사된 돼지를 처리할 당시 돼지에 대하여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며 위와 같이 임의로 처리한 이유는
 - ① 돼지가 폐사될 때마다 육안으로 돼지 콜레라 등 전염성 질병에 의한 폐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② 위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인 채○○, 영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축육종학과 교수인 유○○이 2번에 걸쳐 검사한 결과

- 18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jit@horizonlaw.com

돼지 콜레라라고 의심되는 돼지가 없었으며, ③ 2002. 10.경부터 2003. 1.경까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 방역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돼지 콜레라 검사를 하여 돼지 콜레라 음성반응이 나왔을 뿐 아니라, ④ 2003. 3. 18.에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 방역 담당 공무원이 항체 및 항원검사, 임상검사를 실시한 바 돼지 콜레라를 의심할 만한 돼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⑤ 당시 폐사 원인으로 이유자돈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PMWS), 돼지피부염신증증후군, 만성폐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병명이 불분명하지도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폐사된 돼지를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또한 ⑥ S 축산 농장 내 돼지들이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사실 여부에 대하여도 당시 돼지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면 임상검사시 쉽게 발견되어야 하는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⑦ 돼지 콜레라는 전염성이 강해 모든 돼지가 거의 다 감염되어야 하는데 같은 농장에 있는 일부 돼지 약8퍼센트에 해당되는 돼지만 감염되었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진술하며 범의를 부인

- ① 참고인 이원현(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임상학적으로 콜레라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180쪽 참조), ② 박성운(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 방역담당 공무원, 2003. 3. 18. S 축산 제1농장에서 돼지 42두를 선택하여 채혈 한 후 항원, 항체 검사 결과 돼지 콜레라 감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검사 당시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2002. 10. 29, 2003. 2. 26, 27, 3. 5, 6 등 5회에 걸쳐 돼지 콜레라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185-189쪽 참조), ③ 참고인 최호남(S 축산으로부터 돼지를 출하 받았는데 돼지를 가공하기 위하여 당시 수의사, 경기도청에서 파견된 검사원 2명이 검사한 후 도축하였

- 19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는데 돼지콜레라 감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196-198쪽 참조), ④ 참고인 채○○(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 2002. 10.경부터 2003. 3.경까지 S 축산에서 돼지 장기, 죽은 돼지, 살아있는 돼지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검사의뢰를 받았으며 의뢰한 가검물 진단과 혈청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205쪽, 제 860-862쪽 참조), ⑤ 유○○(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S 축산에서 돼지 콜레라로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은 전혀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212쪽 참조)의 각 진술, ⑥ 참고인 박희규(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담당 공무원, 2002. 10. 29., 2003. 2. 26., 27., 3. 5. 6. 등 5회에 걸쳐 돼지콜레라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653, 656쪽 참조)의 일부 진술 및 ⑦ 질병진단결과서(수시로 검사하였으나 돼지콜레라 반응은 없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284-308쪽 참조), ⑧ S 축산 방문의견서 및 ⑨ 혈청검사 결과(서울대학교 채찬희 교수가 S 축산을 수회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혈청 검사를 실험한 결과 돼지 콜레라 증상이 의심되는 돼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 309-318쪽 참조)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함

- 이에 반해 2003. 3. 18. 전북 익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콜레라 발생으로 확인된 농장들이 직·간접적으로 S 축산, 제1농장에서 후보돈을 분양 받은 농장으로 확인된 정황과 돼지콜레라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종돈장에서 후보돈의 분양이전에 이미 돼지 콜레라 감염 의심 또는 감염된 사실의 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고발 담당 직원 최근식의 진술,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공무원 박희규의 일부 진술, 같은 취지의 동 검역원 발행의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만으로는 피의자들 변명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음

- 20 -

범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다. 항고 및 재항고 제기 결과

(1) 김포시장은 위와 같은 부천지청 감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차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감사는 불기소처분 이유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2004. 10. 12. 2004 불항 제5443호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3).

(2) 이에 김포시장은 또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 감사 역시 위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2004. 12. 2. 2004불재항 제4120호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4).

마. 소결

(1) 이상과 같이 감사가 피고 대표자 ○○○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변명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① 참고인 이원현²²⁾(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② 박성운²³⁾(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 방역담당 공무원), ③ 참고인 최호남²⁴⁾ ④ 참고인

22) 임상학적으로 콜레라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23) 2003. 3. 18. S 축산 제1농장에서 돼지 42두를 선택하여 채혈 한 후 항원, 항체 검사 결과 돼지 콜레라 감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감사 당시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2002. 10. 29, 2003. 2. 26, 27, 3. 5, 6 등 5회에 걸쳐 돼지 콜레라 감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진술함

24) S 축산으로부터 돼지를 출하 받았는데 돼지를 가공하기 위하여 당시 수의사, 경기도청에서 파견된 검사원 2명이 검사한 후 도축하였는데 돼지콜레라 감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함

채○○²⁵⁾(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 ⑤ 유○○²⁶⁾(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조사나 목격 과정에서 위 한규진의 변명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한 각 진술이 있었습니다.

(2) 또한 위와 같은 진술 외에도 ① 참고인 박희규(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담당 공무원)의 일부 진술²⁷⁾ 및 ② 질병진단결과서,²⁸⁾ ③ S 축산 방문의견서 및 혈청검사결과²⁹⁾의 각 기재도 위 피의자 한규진의 변명에 부합되었기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배경(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처지)

가. 피고의 입장

(1) 피고는 197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종업원 80여 명, 2002년도 매출규모 122억 원의 업계 5위권의 중견업체로서 일반 소규모 업체들과는 달리 수

25) 2002. 10.경부터 2003. 3.경까지 S 축산에서 돼지 장기, 죽은 돼지, 살아있는 돼지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검사의뢰를 받았으며 의뢰한 가검물 진단과 혈청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26) S 축산에서 돼지 콜레라로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은 전혀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함

27) 2002. 10. 29., 2003. 2. 26., 27., 3. 5. 6. 등 5회에 걸쳐 돼지콜레라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진술함

28) 수시로 검사하였으나 돼지콜레라 반응은 없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음

29) 서울대학교 채관희 교수가 S 축산을 수회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혈청 검사를 실험한 결과 돼지 콜레라 증상이 의심되는 돼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2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의사와 축산 전공 인재들을 채용하여 방역 및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원종돈(原種豚)을 수입하여 육종하는 대다수 국내 종돈업체들과도 차별되게 독자적인 육종학 기술팀을 통해 국산 육종에 매진하여 국외로부터의 질병 차단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전실한 업체입니다.

(2) 그런데, 농림부를 위시한 방역당국측은 위 2003년도 돼지콜레라 파동과 관련하여, 피고가 역학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번 돼지콜레라의 근원지임과 동시에 나아가 피고가 돼지콜레라 발병 사실을 숨긴 채 종돈 판매를 감행하여 돼지콜레라를 전국적으로 유포시킨 주범이라는 취지의 일방적 발표를 각종 보도문과 인터넷을 통해 시들러 유포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6). 그 결과 피고 회사측은 약 30년 넘게 쌓아온 시장에서의 신뢰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나. 원고의 입장

사실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 및 전파 원인이 피고 회사측의 잘못에 있다기 보다는, 돼지콜레라 청정지대 선포 등을 통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조기에 중단하고(을 제6호증 양돈뉴스)³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전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30) 일부 나라에서는 예방접종 과정에서 드물게라도 돼지콜레라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나라의 돼지의 수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1. 12. 1.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이 경과한 2002. 4. 철원 지역에서 돼지콜레라의 재발이 확인되면서 일련의 감염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168면).

일어난 방역당국의 성급한 대응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갑 제2호증 역학조사 보고서는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고는 향후 위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등이 확보되는 대로 위 갑 제2호증의 문제점을 좀더 소상하게 규명할 것입니다.

5. 증거 신청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정책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법정보상금이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원고의 경솔한 속단과 비과학적인 조사방법에 기초하여 일어난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는 법적으로는 물론 역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 24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690-12 다봉타워빌딩 9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ll@horizonlaw.com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1호증 | 양돈뉴스(양돈협회 2003. 3. 19.) |
| 1. 을 제2호증의 1 | 불기소 이유서(2004. 1. 30. 부천시청 검사) |
| 1. 2 | 불기소 이유서(2004. 6. 30. 부천시청 검사) |
| 1. 3 | 항고기각 이유서(2004. 10. 12. 서울고검 검사) |
| 1. 4 | 재항고기각 이유서(2004. 12. 2. 대검찰청 검사) |
| 1. 을 제3호증 | 신문기사(한겨레 2005. 2. 3.) |
| 1. 을 제4호증의 1 | 가축위생방역본부 보도자료(2002. 12. 2. 강화지역 자돈 반출) |
| 1. 2 | 양돈뉴스(2003. 2. 19. 아산에 돼지콜레라 발생) |
| 1. 3 | 양돈뉴스(2003. 2. 19. 아산에 의사돼지콜레라 발생) |
| 1. 4 | 양돈뉴스(2003. 3. 5. 아산콜레라 의심돼지는 전신성연쇄상구균) |
| 1. 5 | 보도자료(2003. 3. 23. 돼지 S 축산) |
| 1. 을 제5호증의 1 | 보도자료(2003. 3. 21. 돼지예방접종실시) |
| 1. 2 | 보도자료(2003. 3. 21. 예방접종 3. 21.) |
| 1. 3 | 보도자료(2003. 3. 22. 방역추진현황 브리핑) |
| 1. 4 | 보도자료(2003. 3. 23. 3월23일 브리핑) |
| 1. 5 | 보도자료(2003. 3. 23. 돼지 S 축산) |
| 1. 6 | 보도자료(2003. 3. 24. 돼지콜레라상원고발) |
| 1. 7 | 보도자료(2003. 3. 24. 콜레라브리핑) |
| 1. 8 | 보도자료(2003. 6. 3. 역학조사 중간결과 설명) |

- 25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 9 보도자료(2003. 10. 11. 역학조사결과)
 1. 을 제6호증 양돈뉴스(2001. 11. 26. 한국경제신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5. 4.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 금 실



담당변호사 조 용 환



담당변호사 임 성 택



담당변호사 박 영 주



- 26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담당변호사 김 성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 27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3. 농림부측 변호인단 검역원 방문('05.5.16)

- 정부에서 (주) S 축산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측 변호인단에서 '05.4.22일 답변자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 지난 5.16일 농림부측 변호인단이 검역원을 방문하여 피고측 답변서와 대응에 관한 토론을 하고 그 다음날(5.17) 답변서 초안작성을 위한 질의사항을 송부
 - 토론회 참석 : 원고측 변호사(2), 검역원(역학조사과장, 바이러스과장 등 4) 총 6명
- 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 질의사항에 대해 바이러스과와 농림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답변자료를 작성

4. 농림부측 변호인단 1차 준비서면(접수 : '05.6.16,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준비서면

사 건	2005가합20052호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가. 피고는, 피고 농장에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였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원고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감염 종돈들을 전국 각지에 분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합니다.

나.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제1호 다목(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평가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피고의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전액을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업계5위권의 중견업체로 종돈을 생산·판매하던 피고는 도축용 돼지를 사육하는 일반 농장과 달리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 가능성을 근거로 책임 없음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2.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100% 일치 of 과학적 의미

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낮은 변이빈도를 가지기 때문에 경미한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에도 분자역학 연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인공적

으로 세포에 연속적으로 계대(passage)하는 방법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조사한 실험결과¹⁾에 따르면 유전자 염기 한 개 당 나타날 수 있는 변이 빈도수는 1/3,000,000에 불과하여 자연상태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 실험에서는 또한 살아있는 돼지로부터 다른 돼지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접촉감염 방식으로 연속감염하여 실험대상 돼지들에서 각각 채취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생체 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유전자염기서열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결론적으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유전자염기서열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논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수집하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유전자염기서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과학적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유전자염기서열이 100% 일치한다고 함은 양자가 동일한 바이러스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갑제2호증(역학조사보고서) 제159 내지 165쪽 참조]

다. 한편, 전세계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3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갑제2호증 제54쪽의 type1은 예방접종주형이고, type3는 과거 발생주이며, 2003년의 발생주는 당시 국내에는 없던 새로운 type2 야외주로

1)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Arch Virol (1999) 144: 1669-1677]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모두 type2입니다. 2001. 12.의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언은 당시 국내에 존재하던 type3가 완전 소멸되었음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2003년 들어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인 type2가 주변국(중국)을 통하여 새로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역학조사 과정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 이하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이라 합니다. 강제2호증 제198쪽 이하) 제11조에 의하면,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역학조사 내용은 돼지 이동상황,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및 물품 등이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역학조사는 확인된 발병농장에서 전파된 경로뿐 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전염경로를 역추적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나. 2003. 3. 18.에 전북 익산의 송영민 농장에서 최초 신고가 있었고, 이후 충남 당진의 김진원 농장, 경남 함안의 김외석 농장, 경북 상주의 박경화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병신고가 되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등은 위 발병농장에서 돼지의 입식 경위뿐 만 아니라, 정액 공급 내역, 약품의 구입, 사료의 구입, 수의사의 이동 경로, 출입차량의 이동, 분뇨처리 및 톱밥의 반입, 잔반 급여,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현황 등 돼지콜레라가 전염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농장들은 피고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하였다는 공통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검역원이 이러한 점만을 근거로 피고농장이 돼지콜레라를 전파하였다고 선불리 단정지었다고 주장하나, 검역원은 단순히 위의 공통점만을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감염돼지의 이동(돼지의 입식경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파요인이 되는 모든 사유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매개체에 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돼지콜레라의 전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돼지의 이동이 가장 중요한 전파요인인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원은 피고 농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농장에서 돼지콜레라 항원양성이 확인되었고, 돼지 이동에 의한 추가 발생이 우려되어 S 축산의 다른 위탁·분양 농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역학조사의 적절성을 문제삼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의도적인 표적조사가 있는 양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18. 최초 신고 이후 발생한 3개 농장에 대해서 돼지이동상황 등 모든 전염 매개체들에 대한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농장과 인근농장 역학관련 농장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역학조사가 수행되므로 피고농장만을 의도적으로 조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2003. 4.의 전국적인 백신재개로 인하여 S 축산의 분양농장 외의 다른 농장들의 돼지콜레라 발병현황 파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돼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돼지콜레라가 발현된다는 점, 따라서 2003. 4.의 전국적 예방접종 정책은 예방접종시점 이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전국적인 백신재개 이후에도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습니다.

다. 피고농장 검사과정

- 2003. 3. 18. 오후경의 조사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²⁾
 - 임상관찰 및 채혈
 - 제1농장 (분양대기 돈사 5개동) 42두
 - 검사결과 : 전부 항원음성, 항체양성 17두(40.5%)
- 2003. 3. 20.자 조사
 - 검역원
 - 채혈, 정밀검사
 - 제1농장 100두, 제2농장 60두, 제3농장 62두
 - 검사결과
 - 제1농장 검사두수 100두, 항원양성 2두, 항체양성 79두(79%)

2) 검역원은 농림부 소속으로 국가 가축방역기관이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도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으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하고 필요 시 검역원에서 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기술자문 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3. 3. 18. 최초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송영민 농장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 결과 피고로부터 돼지를 분양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검역원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로 현지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제2농장 검사두수 60두, 전부 항원음성, 항체양성 40두(66.7%)
- 제3농장 검사두수 63두, 전부 항원음성, 항체양성 53두(85.5%)
- 2003. 3. 23.자 확대조사
 - 검역원
 - 채혈, 정밀검사
 - 제1농장 확대검사 921두
 - 검사결과 : 항원양성 81두(8.8%), 항체양성 712두(77.3%)

라. 항체양성의 과학적 의미

피고농장에 대한 위 조사 결과 모두 항체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제1농장의 경우 100두를 대상으로 한 3. 20.자 조사와 921두를 대상으로 한 3. 23.자 확대조사에서 거의 유사한 수치의 항체양성이 나왔습니다.

돼지콜레라의 항체는 오직 2가지의 경우에서만 검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피고농장에서 (항원양성은 별론으로) 항체양성이 나왔다는 것의 과학적 의미는, 피고농장의 돼지들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었거나 피고의 관계자들이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면역이 되지 않은 돼지에게 감염될 경우에는 전형적인 임상증상과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지만, 예방접종의 실시로 면역이 된 돼지에서는 거의 100% 방어가 되므로 특별한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폐사도 거의 없는 질병입니다.

2003. 3. 18. 송영민 농가 등이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 온 것은 면역되지 않은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그것이 임상적으로 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접촉전파 등)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것이 임상증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데에는 약 2~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 4개 농장은 공통적으로 2. 18.~19.에 피고농장으로부터 후보돈이 입식되어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농장에서는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아래 상술). 그래서 3. 23.자 확대조사에서도 항원양성은 8.8%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3. 23.자 확대조사에서 712두(77.3%)가 항체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돈사별 양성개체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체양성을 상황에서는 자연적 바이러스에 대부분의 돼지가 보호되기 때문에 항원양성 개체가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임상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양성개체를 골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항원양성 검출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8.8%의 항원양성 돼지들은 미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던 돼지들입니다.

그러나, 피고농장의 축사 등은 물론 그 안의 돼지들이 이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돼지가 수분양농장(이하 편의상 “분양농장”이라 합니다)에 입식된 경우(입식돈) 분양농장에 있던 기존 돼지(동거돈)들은 돼지콜레라에 전염되어 일정기

간이 경과 후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갑제2호증의 제112쪽 <표31>에서, '입식돈 양성·동거돈 음성'은 아직까지 동거돈에 돼지콜레라가 전염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입식돈 양성·동거돈 양성'은 동거돈에 전염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식돈 음성·동거돈 양성'의 경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피고농장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대부분의 돼지가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돼지만이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있었으나(확대조사 항원양성을 8.8%), 이 중 예방접종된 돼지는 돼지콜레라 감염에 저항하므로 자신은 항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돼지의 이동과정(돼지, 사람, 이동차량, 기구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매개되어 동거돈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농장은 이 사건 초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제2,3농장 중 5주령 이상의 거세돈 위주와 위탁농장 중 심00농장일 뿐 제1농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제85쪽).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피고농장과 그 위탁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즉 거세돈이 아닌 제1농장의 분양대기돈에서 대량(77.3%)의 항체가 검출된 것과, 14개 위탁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갑제2호증 제99쪽) 전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은 다름아닌 고의적인 예방접종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농장은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병 직전 이동제한지역 밖에 있었고, 예방접종 금지지역이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21조 별표3에 의하여, 만약 피고가 제1농장에 돼지콜레라예방접종을 하였다면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었고, 과태료 부과 이상의 중요한 의미는 그곳에 발병한 돼지콜레라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에 피고는 제1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제1농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발병 사실을 인지하고는, 발병돼지들을 임의로 처리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항체양성율과 항원양성율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마. 3. 20.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 조사의 문제점

돼지콜레라 검사에 관한 시료채취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9조 제2항 별표4에 의해 연령별, 돈사별 일정비율로 골고루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두수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에서의 검사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시료채취기준(1000두 미만 농장의 경우 40두 채혈)에 의해 42두를 채혈하여 검사하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상 검사두수 물량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의 제1농장(921두 사육)은 일반 종돈장과는 달리 판매용 종돈의 대기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돈사 외에는 여러 위탁농장에서 반입된 돼지가 각기 다른 돈사에 일정기간 체류하였다가 판매되어지는 대기돈사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돈사별로 고르게 채취하되 규정에 명

시된 대로 검사두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검역원은 3. 20. 시료채취 대상을 대폭확대하여 항원양성 개체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 돼지콜레라 전국적 확산에 대한 피고의 책임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농장은 일반 소규모업체들과는 달리 수의사와 축산전공 인재들을 채용하여 방역 및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생 및 사양관리가 철저한 피고의 종돈장에서 2002. 12.말경부터 2003. 3.초경까지 돈사별 폐사율 및 위축율이 급증하여 폐사율이 최고 50%에까지 이르렀습니다(갑제2호증 제114쪽). 이는 명백히 돼지콜레라 감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나. 당시 피고의 제1농장은 이동제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지역으로의 돼지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반면에 당시 오염지역(이동제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다수의 위탁농장으로부터 제1농장으로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갑제2호증 제97쪽). 그리고 피고농장의 관계자들은 수시로 이동제한지역과 제1농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러한 매개체를 통하여 2002. 12.에서 2003. 1.초경 사이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제1농장에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농장의 수많은 돼지들이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폐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임의로 처리한 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리고 2003. 3. 18. 이후 신고된 송영민 등의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콜레라가 유입되어 돼지가 감염되고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바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잠복시기와 입식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65개 농장을 보면, 그 중 1개소가 피고의 제1농장이고, 44개 농장이 피고의 후보돈 분양농장이었으며, 18개 농장이 인근전파 또는 오염사람·차량으로 인한 전파로 전염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등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피고의 분양돼지로 인한 것이었음이 역학조사 결과상 과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 결론적으로, 피고는 오염지역(이동제한지역)으로부터 제1농장으로 이동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제1농장의 돼지들에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해결할 것을 도모하였고, 발병돼지에 대한 임의처리와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피고농장의 돼지들은 낮은 항원양성율을 유지한 반면 전국 각지의 분양을 통해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전국적 확산을 유발하였던 것입니다.

5.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후보돈의 분양 이전에 이미 돼지콜레라의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약 2,404두의 폐사 돼지를 임의로 폐기처리 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관할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만한 명백한 입증을 요하는 형사재판상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의한 것일 뿐, 이것이 민사상 피고의 책임을 규명하는 이 사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수사 자체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부실한데다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었으며,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하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차후 수사기록을 확보한 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 6. 16.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박 연 철

담당변호사 김 태 욱

담당변호사 정 성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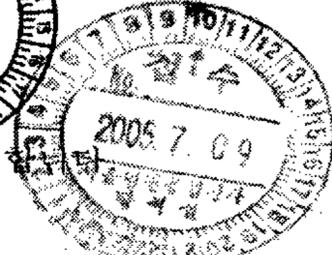
5. 피고측 변호인단 답변자료(접수 : '05.7.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2005. 7. 14

준비서면

사 건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이미 답변서에서 밝힌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83억원이나 되는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한번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법정보상금 등 183억원의 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가정책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지출된 돈이 어떻게 해서 원고의 '손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에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지 피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만 피고로서는 그러한 주장이 부당한 것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라는 제목 하에 일부 사실관계를(그나마 중요부분을 왜곡하여)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사실관계들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어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내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청구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제기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원고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반박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 준비서면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 원고의 주장들(즉, 유전자 염기서열의 유사성, 감염 경로 등)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도저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의도는 소 제기 후 3개월여가 경과한 현재에 와서도 그 청구원인마저 정리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가. 유전자 염기서열의 유사성과 관련된 부분

(1) 원고측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분양한 종돈을 통하여 위 질병이 전파된 것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합니다.

(2) 우선 기본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 비교는 수많은 유전자 염기서열 중 5'NCR, E2, NS5B 및 3'NCR 등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원고측에서는 많은 유전자 염기서열 중 5'NCR이라는 부분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15

분석한 결과 이 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측이 돼지콜레라를 유포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록 5'NCR 한 부분이 100% 일치하더라도 위 부분은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부분들(E2, NS5B)에 비해 염기서열의 상동성(相同性)이 높고 그 부분의 크기가 전체 염기서열 중 약 2%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5'NCR 부분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동일성만을 근거로 하여 유전자가 100% 일치한다고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분석을 5'NCR에 국한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더 유용하다고 알려진 E2 부위 등으로 확대하였다면 염기서열의 변이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는(이 사건 발병 바이러스와 같은 type2임) 5'NCR, E2 및 NS5B 부위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발병 농장간 1~3개의 염기가 다르게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갑2 역학조사보고서 54면 참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병 바이러스주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근거자료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완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 한편,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백 번을 양보하여 검역당국이 발표하지 않은 다른 부위의 염기서열이 설사 모두 일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바이러스의 근원이 같다는 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느 농장에서부터 다른 어느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경로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2003. 3. 무렵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바이러스 strain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위 동일한 바이러스는 그 이전에는 없던 type2로서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003년 들어 새롭게 출현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type2 바이러스는 이미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된 것으로 2003년에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갑2 90면 참조). 따라서 이미 2002년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type2로서 사실상 거의 동일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단지 위 시기 무렵 국내에 유행하였던 돼지콜레라가 동일한 종류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일 뿐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전파경로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피고 농장 및 분양 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경위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병사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돼지 자체의 이동인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 발병된 농장에 종돈을 공급한 피고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피고의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농장에서 돼지콜레라 항원양성이 확인되었고, 돼지 이동에 의한 추가발생이 우려되어 피고의 다른 위탁농장 및 피고로부터 종돈을 분양받은 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우선 피고 농장에서는 검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제1농장의 돼지들이 모두 매몰되기 직전까지도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세가 나타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전 직원, 수의사, 정기적인 방문 검사를 한 서울대 수의학과 채찬희 교수, 경기도 서부위생사업소 방역계장 및 소장, 채혈검사를 하러 온 방역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고는 부천시청의 수사기록이 도

착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3) 한편 2003. 3. 19. 경 피고의 제1농장에 대하여 실시한 1차 검사에서는 돼지콜레라의 항원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 검사 이후 다시 검역당국은 3. 20. 무렵 일시에 피고의 1, 2, 3농장 및 위탁농장에 대하여 채혈검사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종돈을 분양받은 농장 모두에까지 채혈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즉 본 역학조사 과정은 발병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고가 분양한 종돈을 통하여 전국적 발병이 된 것처럼 단정한 상태에서 정밀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조사내용도 미리 내린 결론에 짜맞추기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측은 전국적인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피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발목이 잡혀 애초에 내린 무리한 결론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 결론을 '역학조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입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다. 모든 발병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발병사태와 관련하여 모든 전염 매개체에 대한 다각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농장과 인근농장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2) 첫째,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들 중에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농장(예: 포천 지역의 2개 농장)의 발병원인이나 경로에 대하여서는 역학조사 발표과정에서 언급이 없고 단지 S 축산과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5/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역학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다는 소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갑2, 83면). 또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이 아닌 인근전파나 오염차량 및 사람으로부터 발병되었다는 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내용의 발표도 누락되었습니다. 막연히 상원축산으로부터 분양받은 농장과 관련된 농장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위 농장들 중에는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호남AI센터(인공수정센터)나 농장들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군, 면 단위라는 이유로 S 축산 관련이라고 규정짓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각 농장이나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모든 농장에 대하여 초기 발병 신고를 한 농장에서처럼 다양한 역학조사를 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원고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원고가 진실로 다각적인 조사를 행하였다면, 위에서 언급한 포천 지역 2개 농장, 호남AI센터 및 기타 농장 등에서의 콜레라 양성 판정 시 어떠한 조사를 행하였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결과론적으로 피고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그 양성판정에 대하여는 전혀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 역학조사의 원칙의 준수 여부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역학조사과정에서 역학조사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함)에서 발간한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을 제7호증)에 실린 '수의역학 개요'에 의하면 역학연구에는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6/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생태학적 연구, 단면연구, 환례-대조군 연구, 코호트연구 등이 있습니다. 위 각 조사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그 대상(폭로군과 비폭로군, 질병군과 대조군 등)을 선별하고, 선별된 비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검사나 추적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과학적 결론을 얻게 됩니다. 특히나 수의역학 자료를 찾아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정 농장으로부터 분양받은 농장만을 대상(모집단)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만을 가지고 감염의 경로를 규명하는 방식의 조사방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과연 검역원의 역학조사가 어떤 방식의 조사였으며 어떤 원칙이 준수된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역원이 역학적 조사원칙의 준수에 앞서서 선부른 결론을 내렸다가 문제가 된 사건은 이 사건 뿐이 아닙니다.

검역원은 이 사건 이후인 2004. 11. 무렵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인 제주도¹ 북제주군의 T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콜레라 항체를 확인하고 그 이후 “피고 회사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T 종돈장 및 T종돈장의 위탁농장을 중심으로만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농림부는 T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고 제주도를 통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발 이유는 양성반응을 보인 돼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백신 바이러스(ROM주)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며, 백신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검역원의 판단에 따라 위 종돈장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는 항체가 나올 수 없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마치 피고가 감염된 사실을 은폐하고 종돈을 전국 각 농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한 것과 매우 유사한 판

¹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음

단입니다.

이에 해당 ㄷ 종돈장에서는 예방접종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ㄷ 종돈장이외의 제주도 관내의 모든 농장의 혈청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관내 돼지 4천500여두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역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ㄷ 종돈장 뿐만 아니라 ㄷ 종돈장과 관련없는 제주시 H 양돈장, T 양돈장, 북제주군 S 농장 등에서 500여두가 항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정밀검사 및 실험조사를 마무리한 검역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위 항체양성의 결과는 종돈회사의 무단 예방접종 때문이 아니라 사료에 포함된 혈분에 의해 오염이 된 사례라고 그 결론을 번복하였습니다(을 제8호증의 1 내지 4 각 양돈뉴스 참조).

위 제주도 종돈장 사건에서도 만일 해당 종돈장이 요구한 전체농장 조사를 검역당국이 무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새로운 감염경로는 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치 피고와 비슷하게 위 종돈회사가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초기에 피고와 관련된 농장 외에 인근 농장 내지 대조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자는 피고의 주장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만일 피고에게도 위 제주도 사건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좀더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마. 피고가 예방접종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부분 등

(1) 원고는 피고가 사건 초기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사항을 숨겼다가 뒤늦게 발각이 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위 예방접종 사실은 물론 그 밖의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숨김없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8/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이 사실 그대로 검역원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측의 고발에 의한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가 2003년 1월 3일 접수한 '방역당국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리지침(을 제9호증)'에 의하면 예방접종의 실시 범위는 기 발생지역인 강화, 김포 및 경기 이천 지역 외에 안성, 용인, 광주, 양평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농장 역시 방역당국의 위 지침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측이 방역당국 몰래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습니다.

(3) 피고 농장의 폐사율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원고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처음 검역원의 역학조사때부터 피고 제1농장에서 발생한 이유자돈(離乳子豚, 젖 떼 새끼돼지)의 폐사는 이미 제3농장에서 수의사의 PMWS² 진단을 받고 이동되었고 이런 약한 자돈들이 PMWS라는 질병에 의해 폐사가 이루어졌다고 수 차례 밝혔고 관련된 많은 자료들(가검물 의뢰서, 수의사 진술, 농장일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1. 13. 이후 제1농장에는 제3농장에서 이동되어 온 많은 수의 위축돈이 수용되었고, 이들 중 많은 부분이 PMWS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개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제1농장에서의 폐사율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검역원의 발표나 위 역학조사보고서에는 피고 농장의 폐사가 PMWS로 인한 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4) 폐사의 원인질병과 관련하여 돼지콜레라는 연령, 계절에 관계없이

²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PMWS)의 준말로 주로 이유자돈에서 발생하고 점진적인 체중감소, 전신쇠약, 호흡부전, 설사, 피부의 창백 또는 황달 등의 임상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소모성질환으로 법정전염병이 아님

고발생, 고편사가 이루어지지만, PMWS는 특정연령(5~8주령)에서 주로 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갑2 155면). 그런데 상원축산의 폐사는 PMWS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로 5주~8주 사이의 이유자돈이 발병후 폐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실제로 전국 각 농장에 분양되는 후보돈에서는 거의 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 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114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돈사의 이유자돈의 폐사만 많고 실제로 분양대기돈(후보돈으로 각 농가에 분양되었던 암돼지)의 폐사는 거의 없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역원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숨기거나 간과한 채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이 명확히 PMWS라는 질병에 의하여 폐사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이러한 폐사가 돼지 콜레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원고는 피고가 돼지 이동금지지역에서 이동을 시키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이동은 김포시청 및 방역당국의 지시하에 움직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이미 검역원에 제출되어 있으며 추후 형사사건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피고농장 관련자들이 수시로 이동제한구역과 제1농장을 드나들었다는 표현역시 부적절합니다. 이동제한구역이라 함은 기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농장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농장에서 돼지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것이 해당지역 전체를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동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0/15

제한구역을 드나들었던 다른 농장들의 관련 사람들부터 사료차, 출하차의 기사, 기타 관련 공무원, 군인 등 및 기타 일반 사람들 모두가 감염 전파자로 의심되어야 합니다. 특히 S 축산의 직원의 경우에는 S 축산의 위탁농장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농장에 접근한 사실도 없으며 운행 차량도 대부분의 경우에 소독차량의 방역활동이었기에 철두철미하게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 1월 3일 경기지역 일부(강화, 김포, 이천, 안성, 용인, 광주, 양평 등)지역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15일 만에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이후부터 발생지역 내의 대부분의 농장에서 돼지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기에 이때 다른 매개체로 전국 각지에 전염병이 유포되었을 확률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밝힌 바와 같이 피고 농장내에서는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측이 이를 임의처리하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바.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 내용 부분

(1) 관련된 형사사건의 기록내용이 도착하면 다시 정리하여 주장을 할 것이지만 위 수사과정은 어느모로 보나 피고보다는 자료가 월등히 많은 원고에게 유리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원고측이 진실로 피고의 혐의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었다면 초동 수사는 물론 제기수사나 항고, 재항고 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 수사절차는 형사절차라서 입증이 어렵다거나 부실수사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1/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 위 사건의 수사기록이 도착하면 좀더 정확히 밝혀질 것이지만 위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측의 고의는 물론 과실도 찾을 수 없었기에 무혐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발병이나 전파사태를 예측할 수도 없고, 방지할 수도 없었던 상황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병이나 전파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 피고가 법정 보상금을 받기 어려웠다는 부분 등

(1) 원고는 피고가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나아가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법정 보상금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과거 구제역, 오제스키, 돼지콜레라 등 법정전염병의 발생에 의한 매몰 처분시 보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은 한,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100%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도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방역당국의 정밀 채혈검사에 의한 양성판정 후 매몰된 농장은 모두 100%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피고측은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다른 매몰 농가와 똑같이 혈청검사에서 양성판정만을 받았기에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는 어떤 보상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고측의 주장은 원고가 현재 피고에 대해서만 자의적이고도 차별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2/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3) 또한 원고는 피고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병된 사실이 밝혀지면 폐업 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원고측이 돼지콜레라의 치명적 전염성을 애써 도외시하는 억지입니다. 돼지콜레라 자체는 그 특성상 전염성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발병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은폐하려 한다고 해서 은폐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돼지콜레라가 발생된다면 무서운 전파성으로 인하여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는데 어떻게 은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폐한 후에 뒤늦게 발각되면 피고 회사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피고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종돈 업계 1, 2위의 종돈 회사들에서도 구제역이나 오제스키 등 여러 차례 법정전염병이 발생되어 잠시 기간동안의 어려움은 겪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돈판매가 잠시 중단되더라도 그 돼지들은 모두 비육돈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이기에 피고가 굳이 이를 은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피고의 폐업 상황까지 간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돈장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폐업으로까지 가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동안 종돈의 판매가 되지 않고 비육돈으로 판매될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경우와 같이 방역당국에서 여론몰이식으로 피고 회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관련업계에 거래에 관한 위압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더 폐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피고와 같은 일개 회사가 돼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3/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위험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피고와 같은 일개 회사가 돼지콜레라와 같은 무서운 법정전염병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돼지가 이동되는데 어떻게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합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부분 등 일부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발병 사태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전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수하였고, 방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7호증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
| 1. 을 제8호증의1 | 양돈뉴스(2004. 11. 29. 제주도에서 돈열 예방주사 항체확인.) |
| 1. 2 | 양돈뉴스(2005. 1. 22. 돼지콜레라 원인 아리송) |
| 1. 3 | 양돈뉴스(2005. 2. 5.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검출에 대한 중간결과) |
| 1. 4 | 양돈뉴스(2005. 5. 10.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 오염된 사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
| 1. 을 제9호증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지침(2003. 1. 3. 팩스로 수령)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4/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5. 7.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 금 실



담당변호사 조 용 환



담당변호사 임 성 택



담당변호사 박 영 주



담당변호사 김 성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5/15

서울 강남구 테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50-4200 e-mail:lit@horizonlaw.com

6. 원고측 변호인단 2차 준비서면 제출(접수: '05.8.26,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준비서면

사 건 2005가합20052호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축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청구원인 정리

가. 원고가 이 사건 돼지콜레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데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당해 가축전염병이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병하거나 확산된 것이라면, 그것의 추가적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된 살처분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사경제주체로서의 원고의 손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 귀책사유 있는 피고가 배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 가사,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청구원인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 먼저 원고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출한 보상금에 관하여 피고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원인제공자의 구상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고가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청구원인을 달리 하더라도, 피고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농장주나 인접 농장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된 보상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내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종돈공급계약에 의해 종돈을 분양 받은 농장주들이 피고에게 갖는 계약관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로서 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역학조사의 신뢰성에 관하여

가. 검역원이 피고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계속하여 검역원이 피고의 농장을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병원인으로 잘못 재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농장의 돼지들이 매몰되기 직전까지도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세가 나타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제1농장에서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의 돼지가 폐사하였으며, 피고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밀사에 의해 폐사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 채○○ 교수는 이러한 폐사 돼지에 대하여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이하 PMWS), 돼지피부염신증후군(Porcine dermatitis nephropathy syndrome, 이하 PDNS) 등으로 진단하였는데, 이 질병들은 돼지콜레라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하여야 되는 질병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의 제1농장의 전체 돼지에 대한 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8.8%의 돼지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양성)되어 있었으며, 77.3%의 돼지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예방약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실시한 돼지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 농장 조사 당시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방 접종을 통해 돼지들이 면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피고는, 피고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농장(포천지역 2개)의 발병원인이나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발표과정에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경기도 포천 소재 김○, 김○○ 농장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는데, 이 2개의 농장에 대해서도 피고 농장의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돼지 이동상황, 출입차량(사료, 돼지수송 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동제한, 소독 등의 방역조치도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합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피고 농장과의 연관성은 물론 발생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보고서”(갑제2호증) 83면에 기타(원인미상)로 언급을 하였을 뿐입니다.

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분양 받은 농장이 아닌 인근전파나 오염차량 및 사람으로부터 발병하였다는 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18개의 각 농장에 대해서도 위 포천 지역 2개 농장과 마찬가지로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원인을 구분하여 그 결과만을 종합보고서(갑제2호증, 83면)에 언급한 것입니다.

라. 피고는,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호남AI센터(인공수정센터)나 농장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종돈장 및 정액 처리업체(AI센터) 일제 정밀검사 중 전북 김제시 소재 호남AI센터(김○○)의 혈청검사결과 3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해당농장에 대한 돼지입식, 출하 이동상황, 동물약품·사료구입,

분뇨처리 현황, 외국인 고용, 잔반처리, 종사자 타농장 방문사항 등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정액을 공급한 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관찰,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을 통해 호남AI센터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 피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군, 같은 면 단위라는 이유로 S 축산 관련이라고 규정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갑제2호증에서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한 발생요인 구분 시 S 축산, 상주축산 분양 관련 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막연히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과 같은 군, 면 단위라 해서 S 축산 관련이라고 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피고 농장 돼지들에 대한 분양·이동이 확실히 확인되었기에 이를 구분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바. 위와 같이, 검역원은 피고 농장을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병 원인으로 선불리 재단하여 선별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발병 농장 및 역학관련농장(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 포함)들에 대하여 돼지이동상황,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등의 이동상황, 정액공급, 사료구입, 외국인 고용여부 등의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 역학조사 원칙의 준수 여부

가. 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 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파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바, 이 사건에서 검역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은 돼지 이동상황,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및 물품의 이동상황 뿐만 아니라 정액 공급 내역, 약품의 구입, 사료의 구입, 수의사의 이동 경로, 출입차량의 이동 경로, 분뇨처리 및 톱밥의 반입, 잔반 급여,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현황 등 돼지콜레라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한 것이었습니다.

나. 피고측은 특정농장으로부터 분양받은 농장만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경로를 규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생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3. 3. 18.에 전북 익산의 송영민 농장에서 최초 신고가 있었고, 그 이후 충남 당진 김진원 농장, 경남 함안 김외석 농장, 경북 상주 박경화 농장에서 신고가 되었는데 이 농장들에 대해서 돼지이동상황 등 다각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공통적으로 피고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하였다는 사실 및 역학적인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검역원이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농장을 주목하여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역학조사의 당연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인근 농장 포함)들에 대해서도 최초 신고된 농장과 동일한 역학조사가 수행되었으므로 단순히 피고농장의 정밀

검사결과만으로 감염 경로를 규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다. 피고는,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서 검역원의 이 사건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언급한 2004. 11. 제주도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사건은 돼지콜레라 항체가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하지 않고서도 예방접종 실시 후 백신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혈분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해서도 항체가 나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검역원은 위 제주도 사건에서,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아직 수행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라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접종에 의한 발생으로 의심하였던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는, 백신주(LOM주)가 검출된 종돈장이 검역원에 대하여 제주도 관내 모든 농장의 혈액 검사를 요구하면서 비로소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최초 발생 종돈장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역학관련 농장 위주로 처음에 정밀검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다른 농장의 추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도 전체 농장으로 확대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검역원은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 전문가 토의 등을 통해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검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초기에 피고와 관련된 농장 외에 인근농장 내지 대조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자는 피고의 주장이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역원은 피고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을 확인한 이후 피고농장 관련 위탁·분양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들에 대해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피고 농장에서 관련 농장 외에 타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무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타당성이 없습니다.

4. 예방접종에 관하여

가. 피고는, '방역당국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리지침'(을제9호증)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을 뿐, 방역당국 몰래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농림부는 2002. 12. 24.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실시요령을 시달하였는바, 그 기본방향은 인천, 경기지역의 위험·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단 종돈은 축주 희망에 의거 실시). 당시 피고의 제2, 3농장은 2002년 인천 서구, 경기 김포 발생농가의 경계지역으로 예방접종대상농가로 선정되어 있었고 제1농장은 예방접종대상농가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측은 피고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당시 예방접종은 제2, 3농장 중 5주령 이상의 거세돈 위주

와 일부 위탁농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을 뿐 제1농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제1농장의 돼지 전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77.3%(921두 중 712두 항체양성)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항원은 8.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측의 진술과 달리 피고의 제1농장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피고는, 제1농장의 폐사율이 높았던 것은, 제3농장에서 PMWS 진단을 받고 이동해 온 이유자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PMWS 등의 질병은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이 야외돼지콜레라 감염과 유사하여 혼돈을 초래 할 수 있는 질병으로 반드시 실험실 진단으로 감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여러 논문 등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진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돼지콜레라와 PMWS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이유자돈의 폐사가 높고 분양 대기돈사의 돼지 폐사가 없다는 이유로 돼지콜레라가 100%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 피고는 당시 모든 돼지 이동은 김포시청 및 방역당국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동금지지역에서의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피고의 20개 위탁 사육농장 중 12개 농장 및 피고 제2,3농장이 2002년 경기 김포, 인천 강화지역 일대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하여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되었고, 그 기간 내에서는 돼지이동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측에서도 제1농장은 이동제한도 받지 않고 예방백신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제2,3농장은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기간내에는 피고 제1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할 수 없었으므로 이동제한지역 밖인 파주, 일산 등지에 소재한 위탁농가의 돼지들을 육성, 선발하여 제1농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위탁 사육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일부 위탁농장(민병우, 이종수)에서 이동제한 기간내에 피고 제1농장으로 돼지가 이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제2호증 97-98면 참조)

마. 피고는, 2003. 1. 3. 경기지역 일부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15일 만에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이후부터 발생 지역 내의 대부분의 농장에서 돼지의 이동이 자유로와 졌기에 이때 다른 매개체에 의해 전국 각지에 전염병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숨긴 것입니다. 즉, 농림부의 2002. 12. 30.자 지침(농림부방역 51580-1772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이동제한지역 중 경계지역에서는 1차 예방접종 완료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이동제한이 해제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임상관찰, 항체·항원검사 등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때문에, 피고 주장과 같이 이동제한 해제 후 돼지 이동이 자유로와져서

전국 각지에 전염병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5.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의 고의적 은폐와 관련하여

가. 피고는, 돼지콜레라는 피고농장과 같은 규모의 업체에서는 은폐를 할 때야 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므로 대외 이미지를 고려하여 은폐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이미 상론한 바와 같이 피고농장에서 항체양성이 나왔다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는 피고농장의 돼지들이 야외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돼지들이 면역력을 형성하여 특별한 임상증상을 발현하지 않고, 폐사율도 낮게 됩니다. 야외돼지콜레라에 감염될 경우에는 전형적인 임상증상과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제1농장 돼지들은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었고 폐사율도 낮았던 반면, 정밀검사결과 일부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항원양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농장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로 돼지들이 면역이 되어 야외바이러스에 방어가 되었던 것이고, 피고농장에서 은폐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예방접종을 통하여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5. 8. 26.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박 연 철

담당변호사 김 태 욱

담당변호사 정 성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7. 원고측 변호인단 3차 준비서면 제출(접수: '05.1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준비서면

사 건 2005가합20052호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로 인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은 27개 농가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병 및 전파 원인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 받았는 바, 그 합계액은 5,879,291,650원이며, 내역은 별표 1과 같습니다(갑제3호 내지 29호증).

2. 피고의 농장관리의 문제점

가. 피고는 일반 돼지사육농가와 달리 종돈(정액제공용 수태지) 및 후보돈(임신 가능한 암태지)를 공급하는 농장입니다. 피고가 가축전염병에 걸린 돼지를 전국 각 농가에 분양하는 경우 그 파급력 및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돼지사육농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우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농장의 돼지가 가축전

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만약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사소한 징후라고 보인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생 전 여러 달 동안 비정상적인 규모의 돼지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정밀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수의사도 제대로 배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수의사 구○○은 2001. 1. 15.부터 2003. 1. 30.까지만 피고 농장에 근무하였을 뿐이며, 피고 농장은 그 이후부터는 수의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위 구○○은 피고 농장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던 중에도 주로 제3농장(대곶농장, 후보돈을 생산하여 위탁사육 농가에 위탁하는 농장)의 업무만을 보았으며 제3농장의 업무만으로도 벅차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농장(고촌농장, 위탁사육 농가에서 이동한 돼지를 일반 농가에 분양하는 분양대기 농장)과 제2농장(검단농장, 원종돈 농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을제10호증의 32).

이는 제1농장과 제2농장에 대한 관리는 수의사가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지극히 부실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 피고 농장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 및 인식 수준이 얼마나 안일하였는지는 위 구○○ 외에도 피고 농장의 근무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위 구○○은 “2002년도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제2,3농장 등에서 집중 육성된 돼지가 이동 없이 사육되다가 제1농장으로 옮긴 1월부터는 상당히 많은 돼지가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2농장의 경우는 150두 가량의 돼지가 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사된 돼지의 원인 등을 규명한 장부 등은 보관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작성하는 것은 없고 회사 내 각 농장에서 관리인들이 폐사 원인을 기재 작성한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폐사된 돼지의 관리, 원인 분석 등이 수의사 등의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 노무직에 불과한 피고 농장의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을제10호증의 32, 제121쪽). 이러한 사실은 종돈장의 방역위생관리가 지극히 부실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2농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은 “병든 돼지를 발견한 경우 박○○ 관리이사에게 병태를 보고하면 관리이사가 병명을 판단하여 약물 투여를 지시하면 이에 따랐고, 폐사된 돼지가 발생하면 관리이사에게 보고한 후 사체통에 처리하였다”(을제10호증의 34)고 진술하였고,

제3농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이○○은 “수의사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경험상 알고 있는 병명일 경우에는 폐사보고서 작성 (임의) 처리하고, 의심이 되는 병으로 폐사된 것은 가검물을 채취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 정밀검사를 받아 처리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을제10호증의 36, 제154쪽).

여기서 '의심이 되는 병'이라 함은, '가축전염성 감염 여부가 의심된다'라는 의미임은 할말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위반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고농장의 다른 관계자들은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하나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을제10호증의 18 등).

라. 그리고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농장에서 폐사된 돼지를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돼지 사체를 위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비록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피고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갖고 있던 안일하기 그지없는 인식과 대응 수준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 피고는, 그 간 폐사된 돼지 등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해 왔다는 사실로써 면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 교수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서 컨설팅 용역을 주로 해온 자로서, 피고가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결코 무사 공평한 객관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 교수는 2002. 10.경부터 2003. 3.까지 피고의 농장에서 의뢰한 대상물에 관하여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돼

지피부염신증증후군(PDNS) 등으로 진단을 내린 바 있으나, 이들 질병은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이 야외 돼지콜레라 감염과 유사하여 혼돈을 초래 할 수 있는 질병으로 반드시 실험실 진단으로 감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여러 논문 등에 보고되어 있고, 당시 주변지역(김포, 강화)의 돼지콜레라 발생 등의 상황과 피고 농장의 특수성(종돈, 후보돈의 중요성)으로 볼 때 방역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채 교수의 위 검사가 제2,3 농장에만 국한된 것이고 제1농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위 진단결과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대학교나 민간 실험실에 돼지콜레라를 진단 할 수 있는 시약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콜레라에 대한 정확한 진단(혈청검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채찬희 교수는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부검, 임상소견 등이 있었으면 방역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 교수가 행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만드는 사례가 있는 바, 채○○ 교수는 피고 농장 이외에도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항원양성으로 판정된 7개 농장의 가검물을 검사한 바 있는데, 채 교수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가 아닌 클래서씨병, 홍막폐렴 등으로 진단하였다는 점입니다(별표 2 참조).

3. 검찰의 불기소결정 및 이유와 관련하여

가. 검찰의 이 사건 관련 불기소결정은 엄격한 입증에 입각한 고의 책임만을 묻는 형사책임 여부에만 국한될 뿐 민사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는 점은 이미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밝힌 불기소이유(을제10호증의 143)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불기소이유에서는, 피고의 폐사돼지 임의처리에 관하여 2003. 2. 1.부터의 내역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도 피고의 제1농장에서는 지속적인 폐사 처리가 있어 왔으며, 이는 피고가 직접 위생관리를 지도하는 위탁농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불기소이유에서는 서울대 채○○ 교수와 영남대 유○○ 교수를 언급하고 있으나, 먼저 채○○ 교수에 관해서는 앞서 상론한 바와 같으며, 유○○ 교수는 수의사가 아니고 그가 근무하는 영남대학교는 병성감정기관이 아니므로 돼지콜레라를 검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유 교수는 피고의 상임고문입니다)

라. 불기소이유에서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의 2002. 10. 29., 2003. 2. 26, 27일, 3. 5, 6일 등 5회에 걸친 돼지콜레라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에서 방역 담당으로 근무 중인 박성윤은, 피고의 제1농장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2002. 10. 29. 30두에 관한 채혈검사를 하였고, 2003. 2. 26, 27일, 3. 5, 6일 우성식품이라는 도축장에서 혈액 및 장기 채취검사를 23두 실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을제10호증의 40, 제189쪽).

그러나, 2002. 10. 29.의 검사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와는 무관한 것이고, 2003. 2. 26, 27일, 같은 해 3. 5, 6일의 검사는 출하(도축)하는 모돈에 대한 것으로 각 2두, 3두, 1두 및 17두를 검사한 것이기에, 해당 모돈에 대한 결과일 뿐 피고 농장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전혀 갖지 못하여 피고 농장의 질병감염상황을 파악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고 제1농장에서 후보돈을 분양한 대부분의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므로 모돈 특히 도축하는 모돈에 대한 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 불기소이유에서는, 참고인 박최규(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담당공무원)의 위 라.항와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거시하고 있으나, 박최규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을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을제10호증의 98).

4. 기타

가. 이 사건에서 쌍방 간의 공방 과정과 수사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피고 역시 제1농장에서는 예방 접종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왜 높은 항체 양성율이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원고의 2005. 6. 16.자 준비서면 3. 라항 참조).

그리고, 현재 피고의 농장에서 발생한 폐사의 수에 관해서는 가공된 자료만이 있을 뿐(을제10호증의 89), 피고가 폐사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해 둔 원 자료인 폐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로 하여금 이 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석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나. 피고는 송부 문서인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을제10호증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합니다.

그리고, 갑제30호증은 이 사건 돼지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기록 일
체입니다. 피고는 검역원의 역학조사가 예단에 근거한 편파적인 것이
라 주장하는 바 이를 반박하고자 함입니다.

2005. 10. 04.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김 태 욱

담당변호사 정 성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8. 피고측 변호인단 3차 준비서면 제출(접수: '05.10.21,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상대방용

준비서면

사 건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

가. 가축예방법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정책의 의의

(1) 원고는 소장에서는 살처분 보상금등으로 지출된 18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가 전국의 여러 농장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청구금 내역을 상세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살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농장 소유자들로부터 콜레라 발생을 유발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일부 농장 소유자들의 채권양도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29호증의 2)만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58억7929만원 정도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도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 그러나 피고가 반복하여 지적인 것처럼 위 살처분 보상금 등은 원고가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살처분에 따른 적법한 행정비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돼지콜레라는 일종의 자연재해에 가까운 질병으로 특별히 고의나 중과실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특정인에게 금전상 책임을 묻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사건 청구금의 구체적 내역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농림부가 2002년 12월 24일 발표한 돼지콜레라 조기 차단대책(을10-51, 수사기록 하단 254면 이하) 9면에 의하면, 원고가 돼지콜레라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된 돼지는 물론 그 인근의 돼지들을 대량으로 살처분하는 이유는 감염의 확산방지와 더불어 이른바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의 획득이나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돼지콜레라 청정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된 돼지는 물론 감염이 발생한 농장의 사육돼지 전두수를 살처분 및 폐기하는 것이 청정국 지위 회복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돼지콜레라 청정국이 되어야만 돼지고기의 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감염이 확인된 돼지 이상의 대량 살처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의 조기 회복'이라는 특별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살처분에 대하여 그 비용을 책임사유도 불분명한 특정 농장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합리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의 돼지콜레라 만연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염 전파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인천경기 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사태에 대하여 원발농장과 그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농장들이

어디인가를 추정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갑2 역학조사 보고서 61면). 그러나 이러한 추정 외에 원발농장으로 추정된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책임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3) 더욱이 위와 같은 살처분의 경우에 그 지출비용을 개별적인 농장 소유자 등 감염의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려고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당연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러한 구상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 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규위반으로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장에 조차 보상금을 일부나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국가가 이 사건에서처럼 진정으로 살처분 보상금등을 구상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차등보상 규정은 그 존재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 회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관계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구상권에 관한 아무런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입법자는 위 살처분 등 정책에 소요된 비용을 구상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 채권양도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주장임을 우려한 탓인지 개별적인 농장 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채권양도를 통한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의 정책목적에 따라 감염된 돼지 이상의 돼지들 전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당한 농장의 입장에서는 위 정책의 타당성을 수용한 것이고, 그에 따라 법에 정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살처분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처분 자체로 인한 손실은 원래부터가 감염을 확산시킨 행위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추가적인 감염의 확산 방지 및 별도의 정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손실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나아가 본건 채권양도 확인서들이 채권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즉, 채권자라고 자처하는 위 농장 소유자들이 직접적으로 행사할 청구권 내용도 불분명하고, 위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 채권양도 확인서는 진정한 채권양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청구근거가 부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탈법적 의도로 작성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전부는 물론 그 일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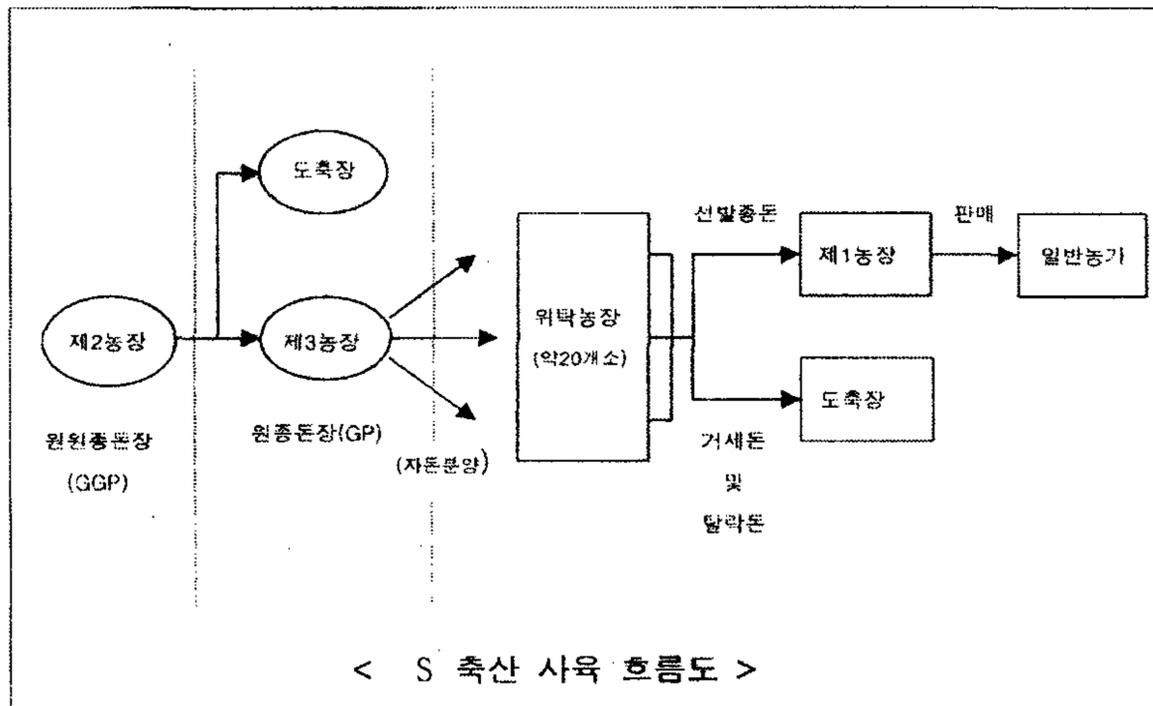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3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가정하여 예비적으로 피고가 감염된 돼지들을 공급한 사실이나 그에 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2.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 피고 농장의 운영 현황과 방역 관리 노력

가. 피고 농장의 운영 현황

(1) 피고가 운영하는 S 축산 농장(이하 '피고 농장' 이라고 함)은 크게 보아 제1농장(고촌농장), 제2농장(검단농장), 제3농장(대곶농장)을 중심으로 그 외에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농장이 있습니다(갑2, 84-86면, 을 10-47 피의자 의견서). 통상적인 돼지의 이동 순서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2농장→3농장→위탁농장→1농장→일반농장의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5/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즉, 2농장은 원원종돈장(GGP농장)으로 순종을 생산하여 원원종돈으로 사용하거나 3농장으로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숫돼지와 거세돈 및 종돈에 선발되지 못한 암돼지는 비육돈으로 분류되어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3농장은 원종돈장으로 2농장에서 선발된 종돈을 모돈으로 편입하여 인공수정을 통하여 낳은 새끼들이 후보돈(F1, 일반농장에 분양될 암돼지)이 되어 약65일 정도 기른 후 위탁사육농장에 보냅니다.

(2) 위탁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들 중 거세한 숫놈의 경우에는 180일 정도에 이르면 도축장으로 직접 보내고, 암놈의 경우에는 약160일 정도에 이른 돼지들 중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선발하여 분양대기돈사인 1농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농장에 대기하였던 돼지들이 약175일 정도에 이르면 종돈으로 일반농장에 분양됩니다. 이후 분양된 돼지들 중 무발정, 호흡기 질환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에는 1농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축장으로 가게 됩니다.

나. 평소 피고의 방역관리 노력과 정도

(1) 돼지콜레라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관리 분야에 있어서, 피고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회사 내에 자체 수의사가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위 수의사가 항상 피고 농장들을 순회하며 질병 진단을 해왔습니다. 나아가, 1995년 경부터 2005년 2월 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채○○ 교수(병리학 전공)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매주 채혈검사 및 가검물 의뢰, 기타 질병에 관한 진단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를 받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채○○ 교수가 직접 농장들을 순회하여 임상관찰 및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행하여 종돈장으로서의 방역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120여개의 종돈장들 중에서 현장수의사를 상시 고용

하고 있는 농장은 10개 미만이 될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2) 피고는 또한 수시로 내부 및 외부의 의사들과 기타 전문가들로부터의 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여러 질병들의 임상증상을 빨리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필요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을 10-61 수사기록 321면 2002년 11월 16일자 구경민 의사의 업무협조 공문 참조).

(3) 피고는 제1, 2, 3농장 모두 철저한 차단방역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일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을 10-66 내지 70 수사기록 372 내지 424면, 소독실시기록부 등 참조). 그리고 위탁농가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축사소독 이외에 별도로 피고에 소속된 위탁관리 담당자들을 별도로 전담 배치하여 자체 소독차를 운영하면서 직접 위탁농가를 방문하여 추가 소독을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돼지를 공급하는 제1농장의 경우에는 차량에 다른 전염성이 있는 균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외부 지역을 다녀온 차량은 반드시 세차 및 철저한 소독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농장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을 10-71 수사기록 428면 차량세차내역 참조).

(4) 피고는 환돈(患豚) 및 폐사돈(弊死豚)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방역관리를 위학 각별한 주의를 준수하였습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농장에서는 상근 의사가 최대한 농장내의 모든 질병에 대하여 관찰하고 진단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하여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 직원들이 환돈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반드시 관리 책임자들의 확인을 받게 하였고, 필요시마다 의사의 검진이나 서울대 수의학과에 가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7/38

서울 강남구 내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검물의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병명을 명확히 파악하여 왔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폐사돈들은 수시로 수의사가 반드시 폐사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5) 특히 상근 수의사가 없게 된 2003년 2월 이후부터는 이전에 진단이 나왔던 개체와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현장 간부의 책임 하에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기록 후 처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대 수의학과에 가검물의 조사를 의뢰하여 왔고, 수시로 영업 담당 간부인 이승준 수의사나 대한사료 수의사 등이 현장을 방문 관찰하여 왔습니다(을 10-55 수사기록 280면 가검물의뢰 확인서 참조).

(6) 피고 농장에서는 발생된 폐사돈 모두를 처리탱크에 수집하여 동물성 잔재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인 대양화학에 이송하여 합법적으로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을 10-72 내지 75 수사기록 445면 이하 참조).

다. 2002년 말 김포, 강화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피고 농장의 특별한 상황

(1) 2002년 4월 경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그리고 10월 경에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경기 이천 일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는 2002년 12월 하순 경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김포, 이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돼지이동을 금지시키면서 해당지역의 돼지들에게 예방접종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면서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타에 대해서는 축주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농림부가 종돈장등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강제하지 않은 이유는 종돈의 경우 모돈이 되어 약 3년 정도 생존하여 새끼돼지를 낳게 되는데, 예방

접종이 되면 위 생존기간동안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언이 늦어져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2) 농림부의 위 조치에 따라 피고의 3농장과 2농장에서는 거세돈을 중심으로 2003년 1월 10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종돈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나 강화지역에 있는 위탁농장으로 분양되는 자돈(새끼돼지) 중에서도 암돼지 900여두에 대하여는 강화지역 축산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 한편 농림부의 돼지 이동제한은 발병지역 반경 10킬로미터내에 국한되었는데 1농장은 위 반경 범위 밖에 위치하였습니다. 따라서 1농장의 경우, 원래 수용되었던 종돈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2농장과 3농장의 돼지가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위 제한범위를 벗어난 파주, 일산 등지에 위치한 위탁농장들에서 육성 선발된 돼지들이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 후 농림부는 2003년 1월 2일까지 전국 각 농장의 돼지의 채혈검사 후 돼지콜레라 음성을 확인하자, 1월 13일 김포지역, 14일 강화지역, 2월 3일 이천지역에 대하여 각각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라. 2003년 1월 이후 피고의 제1농장에서 폐사가 많았던 이유

(1) 위와 같이 2002년 10월 이후 약 3개월간 피고의 2, 3농장에 있던 돼지들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제한된 축사에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12월에 이르러서는 종래 수용 두수의 거의 두배에 이르러 과밀상태는 극에 달했고, 이 때부터 3농장에서는 자돈들이 밀사에 의한 위축증세를 보여 폐사되는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농장에 있던 돼지들도 이동제한에 따른 과밀현상과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의 추위로 인하여 피고 농장은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1월 초에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혹한 속에 자돈 이동을 하여야 했기에 자돈의 위축과 폐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자체 상근 수의사 및 서울대 수의학과 채○○ 교수, 대한사료의 수의사 방○○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돼지들에 대하여 호흡기질병이나 살모넬라 등의 진단 및 수차에 걸친 PMWS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003년 1월 13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그동안 이동제한을 받아 3농장에서 과밀하게 수용되었던 위축돈들을 그나마 여유공간이 있었던 1농장으로 이동하여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농장들에서는 위축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반면에 이동제한기간에도 1농장은 그 위치상 이동제한을 받지 않아서 이동이 가능하였으므로 2, 3농장보다는 공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농장에서 이미 PMWS 등으로 진단받고 위축되어진 허약한 자돈들이 1농장으로 이동되었고, 이동된 위축돈들 중 일부 자돈들은 잘 회복이 되지 않고 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무렵에 1농장에 위축돈이 많아진 것은 이와 같이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과밀하게 수용되었던 3농장의 위축돈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이지 돼지콜레라로 의심할만한 질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3) 이상과 같이 2003년 1월 무렵 1농장에서 위축돈이 많아지고 급기야 폐사가 증가한 것은 돼지콜레라와 무관한 일입니다. 실제로 2003년 1월 이후 피고는 1농장에 이동되어 수용되었던 위축돈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제3농장에서 방○○ 수의사 및 채○○ 교수에게 임상 진단 및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모두 일반적인 살모넬라, 호흡기 질병 또는 PMWS라는 일치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13일 무렵 채○○ 교수와 수의사인 S 인티의 이○○ 대표, 피고의 최○○ 상무가 1, 2, 3

농장의 임상적으로 관찰하였으나 돼지콜레라로 의심할만한 증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을10-55 내지 59 수사기록 280면 이하 참조). 나아가 2002년 10월 부터 2003년 1월 까지 경기 서부축산위생연구소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한 피고의 농장에 대한 채혈검사에서 모두 돼지콜레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을10-60, 수사기록 319면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결과 알림, 을10-99 수사기록 656면 S 농장 정밀 검사 결과 참조).

(4) 원고측이 제출한 역학조사 보고서(갑2)에서는 이와 같이 피고의 1농장의 폐사이유가 과밀수용에 따라 악화된 환경에서 발생한 PMWS로 인한 것임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폐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검역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문

가.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제기의 배경

(1) 원고는 소 제기 이래 방대한 내용의 “역학조사 보고서” (갑2)만을 근거로 피고가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역학조사 보고서는 과학적 조사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1/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동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 일정 기간에 일정 지역에 다발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한 농장의 돼지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나머지 농장의 돼지들에게 전파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한 정황이나 한 두 가지의 현상만으로 단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돼지콜레라의 감염방법이 다양하고,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농장의 돼지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전국 각지의 농장으로 공급되어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가정이 사실로서 인정되려면 이러한 복잡한 가능성 중에서 다른 방식의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학조사 보고서는 그러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여하한 시도나 검증도 없습니다.

(3) 무엇보다 감염의 전파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감염원측에 시간적으로 선행된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18일 무렵 이후의 돼지콜레라 감염과 관련하여 3월 18일 무렵 전북 익산의 송영민 농장에서 처음 신고가 되기 전에 피고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역학조사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전인 3월 23일 무렵에 이미 피고가 돼지콜레라 전파의 주범인 것으로 단정하고 심지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의 산하기관인 검역원을 통하여 자신의 발표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조사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 원고는 객관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것을 무시하기 위하여 피고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으로 불만한 돼지의 집단 폐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하에서는 검역원 역학조사의 방법상 문제 및 그 내용과 해석상의 문제를 순차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2/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나. 역학조사 방법의 문제점

(1) 검역원의 가축전염병역학조사지침 부록 1 수의역학개요에 의하면 질병 발생농장과 비발생농장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과거에 특정요인에 폭로된 정도를 비교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을7 역학조사 지침 중 하단63면 이하 참조). 그러나 역학조사실무에서는 질병 발생농장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문제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여실히 나타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근본 이유입니다.

(2)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면, 역학조사실무요령에 따른 역학조사는 실제로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과학(수의역학)적인 수준에서 근원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면한 감염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실무수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실무수칙에 기초하여 얻어진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돼지콜레라 전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3) 본건 역학조사의 방법상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의역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문가인 모리스 교수의 평가의견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본건 역학조사 보고서 중 2003년 부분을 전문 영어로 번역하여 위 모리스 교수에게 평가를 부탁하여 그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을 10-124, 125 수사기록 709면 이하 모리스교수 평가서 참조).

다. 수의역학 전문가 모리스 교수가 본 역학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1) 모리스(로저 스텐어트 모리스이나 이하 '모리스' 라고 함) 교수는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3/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현재 뉴질랜드의 매시(Massey) 대학교 역학연구센터(EpiCentre)의 교수로 수의역학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검역원에서는 직원을 모리스 교수에게 보내어 역학분야 연수를 시켰고, 검역원에 초빙하여 5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검역원 명예연구원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을10-122, 123 수사기록 704면 이하 모리스교수 초빙 세미나 기사등 참조).

(2) 모리스 교수가 보내온 공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역학조사 보고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역학조사 원칙에 어긋나며 S 축산이 감염원이라는 결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평가서에서 지적한 검역원 보고서의 중요한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을10-124, 125 수사기록 709면 이하 모리스 교수 평가서 및 번역문 참조).

* 검역원은 돼지콜레라 확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보고서에 언급하지도 않았고, 또 왜 이런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S 축산의 역할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역학의 표준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S축산이 질병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종돈회사는 전국적으로 여러 양돈장에 종돈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질병 전파의 책임을 종돈장의 탓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전염병 발생을 분석할 때 그릇된 결론을 피하기 위한 역학적 기법이 잘 정립되어 있지만 여기 보고된 역학조사에서는 이런 기법이 적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질병 발생을 분석할 때 사용하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4/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솜타워빌딩 ①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는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된 실험실 검사결과는 S 축산의 역할과 관련하여 역학적으로 확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부 결과는 신뢰도가 의심스러울 만큼 비정상적입니다.

* 한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농장에서 같은 계통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계통이 다르게 나타난 농장의 감염원을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검역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S 축산이 2003년 초 돼지콜레라 확산에 한 요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구함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S 축산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타당성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모리스 교수의 위 평가서에 의하면 피고 농장이 2003년 전국적 돼지콜레라 발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검역원의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가능성도 없는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 역학조사 결과 해석의 문제점

역학조사 보고서는 조사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물론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확한 사실관계나 합리성이 없는 추론에 기초한 판단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5/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용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 염기서열 일치 의미 <갑2 보고서 90면 상단 “유전자 염기 서열과 100% 일치하였다.” > 관련 부분

DNA 염기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바이러스의 근원 (origin) 이 같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어느 방향으로 전파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조사 결과만으로는 돼지콜레라가 피고 농장에서 분양농장으로 전파되었는지, 분양농장에서 피고 농장으로 전파되었는지 또는 제3의 오염원으로부터 피고 농장과 분양농장으로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갑2 보고서 90면 하단 그림30 도표를 보면 돼지콜레라가 2002년 10월 7일 강화에서 2002년 12월 23일 이전까지 발생하는 동안 분리한 바이러스는 6종류가 됩니다. 만일 이들이 모두 다른 바이러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바이러스의 종류만을 놓고 볼 때, 강화와 김포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농장 간에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유입되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는 동 보고서 61면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 전파경로 추정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2) 피고 위탁농장의 폐사율에 관한 해석 <갑2 보고서 100면 표 29 미사육 위탁농장에 대한 주요 역학조사 현황 내지 105면 미사육 위탁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 관련 부분

피고가 검역원에 제출한 사육성적표에서 위축돈은 체중이 85kg에 미달하나 정상적인 돼지를 말하며, 이는 위탁사육계약서 내용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기 역학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6/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하였으나 보고서에는 마치 모든 위축돈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폐사직전에 있는 돼지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을10-131 수사기록 818면 위탁사육계약서 참조).

나아가 집단적 폐사라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하여 검역원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위탁사육 폐사율 1~2%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미국의 폐사율 통계는 25kg에서 110kg까지의 체중이 나가는 돼지들의 경우 3~4%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위탁농장의 폐사율은 변이가 크므로 여러 해 동안의 사육성적을 집계하여 평균 폐사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일례로 역학조사 보고서 100면에서는 민○○ 과 심○○ 농장의 폐사율이 특히 높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민병두 농장임)의 경우 과거 여러 해 동안 육성율의 편차가 컸고 사육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즉, 김포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기 이전의 성적도 나쁠 때는 폐사율이 6% 이상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을10-132 수사기록 822면 농장별 사육성적표 참조).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한 기간에 폐사율이 높았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돼지콜레라와 연관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입니다.

또한 위탁사육의 경우 폐사는 대부분 입식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입식 초기에 많고 점차 줄어듭니다. 민○○농장의 경우도 월별 폐사두수를 보면 예상대로 입식 초기에 폐사가 많고 이후 점차 줄어듭니다. 만일 돼지콜레라의 감염으로 인한 폐사라면 자돈 입식 시기와 관계없이 어느 특정 감염 시기 이후부터 폐사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을10-133 수사기록 823면 월별 폐사현황 참조).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7/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①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심○○농장의 경우 역학조사 보고서 100면 표 29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름에 폐사율이 높아 14.4%에 달하였습니다. 이 폐사는 대부분 김포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났으므로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율이 높은 것만을 확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애매하게 기술한 원고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위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는 미사육 위탁농장은 2002년 12월 이동이 해제될 때까지 수차례 방역당국이 실시한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당시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검역원에서 제시한 각 농장별 기대 사료섭취량의 계산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기록된 사료섭취량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하나 실제로 당시 피고 농장에 입고되는 총 사료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지 어느 기간에 폐사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고 봅니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위탁사육의 폐사율은 높을 수도 또 낮을 수도 있으며 이런 사실은 검역원에 이미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폐사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피고 농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논리를 펴는 것은 오히려 역학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뿐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8/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3) 제1농장의 폐사율 문제에 관하여

위 보고서 113면 그림 36 과 그림 37 및 114면 그림 38에서 보면 자돈사의 폐사율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농장 자돈사의 폐사율을 분석하면서 PMWS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으로 자료를 해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10월 김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이동제한으로 제3농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밀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피고 1농장 자돈사에 수용했던 자돈은 3농장에서 건강상 문제로 위탁농장에 분양할 수 없었던 위축돈들이므로 폐사율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3농장에서부터 PMWS라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 질병에 대한 수의사 진단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농장의 자돈 폐사가 늘었고 사료 입고량도 줄어들었으나, 자돈사 이외의 다른 돈사에서는 폐사가 거의 없었음은 위 보고서 114면 그림 38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검역원의 역학조사 당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원이 PMWS에 기인한 높은 폐사율이 마치 돼지콜레라의 발현인 것처럼 자료를 해석하려 드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4)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관하여< 갑2 보고서 109면 오염된 사람에 의한 유입가능성 부분>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19/38

서울 강남구 테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위탁농장 관리팀 인원이 위탁농장과 피고 제1농장을 수시로 출입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농장 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농장에도 바이러스가 쉽게 유입할 수 있었을 터인데 검사를 받은 모든 위탁농장들에서는 음성으로 밝혀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탁 관리팀은 피고 농장과 위탁 농장 외에 어떤 다른 농장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한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면 이들 이외에 김포-강화지역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많은 사료차량, 돼지 출하차량, 방역차량, 방역 관계자 차량 등 모든 차량에 의하여 전국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염된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은 문자 그대로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하는 어느 돼지사육 농장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바, 구체적인 증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이러한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피고가 돼지콜레라를 전국에 전파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억지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 시기에 관하여 <갑2 보고서 111 내지 115면 돼지콜레라 유입시기 분석 부분>

역학조사 보고서의 유입시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 제1농장의 분양대 기사가 2003년 1월 14일 이전에 이미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고서가 다른 한편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 돈사의 돼지에 전파되어 혈중에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26~38일이 소요된다"는 돼지콜레라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용당 추정 최초 유입기로부터 60여일 이상 경과한 2003년 3월 24일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시점을 전

후하여서는 피고의 제1농장의 많은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증상이 나타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피고 농장의 관리자 및 직원들 뿐 아니라 각종 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교수와 외부 수의사들도 제1농장의 돼지들에서 돼지콜레라와 관련된 임상증상조차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을10-40 수사기록 185면 박성운 진술조서 참조).

또한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제1, 2, 3농장 뿐 아니라 모든 위탁농장을 하나의 농장체계로 보아야 한다면(역학조사 보고서 85면 하단), 그리고 제1농장에서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확산되었다면, 당연히 제1농장 뿐 아니라 제2, 3농장 및 위탁농장에서도 돼지콜레라 양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농장을 제외한 제2, 3농장 및 모든 위탁농장이 많은 채혈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제1농장에서 인천과 김포의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채혈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인 결과를 보더라도(을 10 수사기록 223면) 그 동안 피고 농장에서는 돼지콜레라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고 본건 돼지콜레라의 전국적인 확산이 피고 농장으로부터 기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보고서 111면 "나. S 축산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유입시기 분석"을 보면 분양대기 돈사를 1차 유입경로로 보았습니다. 만일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분양대기사 → 자돈사 였다면, 분양대기사의 폐사율이 자돈사보다도 높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대기사의 폐사율은 매우 낮았습니다[갑2 역학조사 보고서 114면 그림 38 하단 분양대기사 폐사두수 : 11월(2두), 12월(5두), 1월(11두), 2월(5두), 3월(3두) 참조].

(6) 임상증상 없이 돼지콜레라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 <갑2 역학조사 보고서 115면 박스 맨 하단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야외농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21/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1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장 감염 시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때까지의 기간(2~4주)등을 고려할 때 02년 12월 중순 ~ 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한 부분>

피고 농장의 경우 2003년 3월 23일 감염 판정후 집단적인 돼지 매몰 직전까지도 방역당국을 포함한 수많은 수의사들이 다녀갔지만 야외 바이러스 감염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원고가 문제로 삼고 있는 판단 근거는 임상증상이 아니라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채혈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이건간에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채혈검사 이외에는 법적으로 돼지콜레라의 혈청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사후적인 자료를 토대로 돼지콜레라 감염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수의병리학 분야에서 국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채○이 교수의 지속적인 병리 검사에서도 돼지콜레라 진단은 전혀 없었습니다(을10-43, 55 내지 59, 수사기록 137면 채○○ 교수 진술서 등 참조). 결국 제1농장에 돼지콜레라 감염이 있었다면 그 유입시기는 원고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돼지콜레라가 다른 농장에서 발현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03년 3월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7) 피고 농장 채혈 검사 결과 인용과정에서의 일부 내용 누락 문제 < 갑2 역학조사 보고서 88면 표 21, 표 22 S 축산 농장 채혈검사 결과 부분>

위 지면에 요약된 자료에는 전북 익산의 돼지콜레라 발생 직후, 역학조사를 위해 2003년 3월 18일(채혈일자) 경기도 축산 위생 연구소에서 실시한 제1농장 검사결과(42두 검사 모두 음성)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을 10~46 다음장 수사기록 223면, 10~99 수사기록 656면 S 1, 2, 3 농

장 정밀검사결과 중 2003. 3. 18. 자 검사 참조).

이러한 사실은 검역원에서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결과보고' <2003. 9. 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CSF분과위원회) 발행>라는 문서자료의 33면 참고자료(위 올10-99 수사기록 656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원에서는 2003년 12월 발간한 최종 보고서(갑2) 내용에서는 이러한 1차 검사결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은폐한 채 그 이후 2003년 3월 20일에 이루어진 2차 채혈검사를 마치 1차 채혈검사인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갑2 역학조사 보고서 88면). 이는 전북 익산에서 최초로 콜레라 발생신고가 된 이후에 피고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채혈검사에서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축소함으로써 마치 전북 익산의 돼지콜레라 발생 후 최초로 실시한 피고의 채혈검사에서 곧바로 양성 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4. 원고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반박

가.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은 " 피고의 농장에서 발생한 폐사의 수에 관해서는 가공된 자료 만 있을 뿐(올10-89) 피고가 폐사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해 둔 원 자료인 폐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제1농장 및 위탁농장의 모든 기록이 되어있는 제1농장 양돈종합 일보, 위탁농장일보, 비육돈 출하일지 등의 모든 자료를 이미 검역원 역학조사 및 경찰 조사 당시에 빠짐없이 제출하였고, 특히 2003년 4월 4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23/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일 추가로 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 경찰에 제출된 자료를 가져가 일체를 복사하고 원본을 다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검역원 담당자: 역학조사과 김철희 수의사).

원고는 이를 근거로 역학조사 보고서(갑2)에서도 모든 폐사기록을 정리하였는바(갑2 역학조사 보고서 101,114면), “ 을10-89” 도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측은 이미 모든 원본내용을 제출 받고도 자꾸 피고가 무언가를 은폐한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나. 제1농장 항체가 사유 규명

(1) 원고측은 피고의 제1농장에서 직접적인 예방접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항체 양성율이 나온 것을 근거로 피고가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적으로 제1농장에서는 직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자돈의 경우, 예방접종을 이미 제3농장에서 맞은 후 제 1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양돈의 경우, 위탁농장(정연홍 농장)을 거쳐 제1농장으로 전입되어 온 돼지들에 대하여 위탁농장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측은 이러한 사실을 경찰진술과 검역원 채혈조사 당시에 모두 밝혔습니다[을10-23 수사기록 74면 최상철 진술조서, 갑2 역학조사 보고서 99면 표28 중 중간에 위치한 정OO 분양두수 1,706(암) 란에 표기됨].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24/38

서울 강남구 테치동 3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표1] 제1농장에 대한 2003. 3. 23.자 확대 정밀검사 결과(갑2, 88면)

구분	돈 사	검사 두수	항체양성 (항원양성)	전입처	백신접종
분양	대기 1	131	129(1)	정연홍(명점순)농가	131두
분양	대기 2	82	66(1)	정연홍(명점순)농가	73두
분양	대기 3	63	5 (4)		
분양	대기 4	124	77 (35)		
분양	대기 5	40	0 (0)		
A.I.	용돈 1	20	19 (0)	제2농장	
A.I	운돈 2	17	12 (1)	제2농장	
A.I	용돈 3	11	7 (2)	제2농장	
A.I	용돈 4	10	5(0)	제2농장	
A.I	용돈 5	13	3 (0)	제2농장	
A.I	수입사	12	10 (0)	제2농장	
자돈	자돈 1	211	196(31)	제3농장	거세돈전체
자돈	자돈 2	187	183(6)	제3농장	거세돈전체

(2) 피고가 역학조사 및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은 제2농장과 제3농장에서 거세돈 위주로 접종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동제한으로 인해 돈사가 밀집된 가운데 일부 암돼지가 거세돈방을 넘어드는 사태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부 암돼지가 접종되었을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나 그 규모는 10% 미만일 것입니다.

다만 강화에 위치한 정○○(명○○) 농장의 경우 이동 전에 강화지역 관계자들이 돼지콜레라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할 수 없이 정○○(명○○) 농장에 입식된 암돼지 자돈에 한하여 백신을 접종하여 2003년 1월 초에 위탁농장으로 이동하였고, 이 돼지들 중 일부가 2003년 3월 12일 96두, 3월 14일 131두가 선발되어(합계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25/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27두) 제1농장 대기1호 및 2호에 나뉘어 입식 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른 농장으로 분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역원 역학조사 당시에 모두 진술되고 자료도 제출되었으며 제1농장 전체두수 채혈당시 채혈 내역을 정리하여 검역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기록이 되어있습니다[을11. 위탁농장선발리스트(1농장:고촌), 2003년 3월 25일 검역원 김철희 수의사에게 팩스로 제출함. 을12 S 축산 고촌농장 채혈내역, 제1농장 전체 채혈이 끝난 후 정리하여 방문한 검역원 담당자에게 제출함].

(3) 자돈사의 경우도 이미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제3농장에서 밀사로 인해 자돈들 중 상당수가 위탁농장으로 분양되지 못할 정도로 위축 또는 PMWS의 증상을 보여 할 수없이 제1농장의 자돈사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3농장의 자돈의 경우, 이동 전에 서부위생소의 채혈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도 판정 받았고, 자체수의사의 육안검사 뿐만 아니라 서울대 채찬희 교수의 여러 진단 결과상으로도 전염병에 대한 진단은 없었기에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이동된 자돈의 경우 거세돈과 암돼지가 섞여있는 관계로 그 중 거세돈은 제3농장에서 미리 예방접종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4) 제1농장 웅돈사에 있던 인공수정(A.I.)센터용 웅돈의 경우 2001년 12월 방역당국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의 지시로 인해 더 이상 백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농장들이 돼지콜레라 재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막 백신을 철저히 하였고, 피고 농장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추가 접종을 철저히 한 관계로 그 이후 상당기간 백신 항체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가 많으리라 추정됩니다. 피고 농장의 경우 2001년 12월 이전까지 예방접종 실시되었다고(2001년 12월 이전 출생) 추정되는 웅돈은 12두입니다(을13. 제1농장 매몰현황 자료 중 웅돈명세서, 03년 4월 김포시청에 기 제출된 자료임).

(5) 위에 서술된 이외의 경우는 (예를 들어 분양대기 4호의 경우) 항원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검역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항원과 항체가 모두 발견되었다고 생각되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은 피고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거나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피고가 아니라 전문 검역기관인 검역원의 몫이지 피고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주도의 T종돈장에서 백신주로 추정되는 항원과 항체가 발견되었을 때 검역원은 처음에 그 종돈장에서 불법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후 많은 시험과 검토를 거쳐서 처음 주장을 번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검역원도 많은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장기간 연구한 후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하물며 피고와 같은 규모의 종돈장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이 나온 결과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농장에서 나타난 항체 양성 비율은 1) 대부분 위탁농장(정○○)에서 백신 접종한 암태지와 3농장에서 백신 접종한 거세돈이 1농장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이며, 2) 인공수정용 웅돈의 항체 양성반응은 부분적으로(12두),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중지된 2001년12월 이전에, 백신접종이 된 웅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한 돈사의 경우는(대기 4호) 항체 양성과 항원 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아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항에서 언급한 거세돈은 백신 접종이 안된 암태지와 함께 두 돈사에서 (자돈 1호, 2호) 사육되고 있었으며 이 돈사에서도 항원 양성이 비교적 높아 항체 양성율이 높은 추가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27/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3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7) 항원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역원에서도 양성 판정을 항체가 아니라 항원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백신주는 약독화한 생독 바이러스주이므로 백신 후에 다른 돼지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시험 결과에 근거한 것이지 실제로 다양한 농장에서 모든 연령과 생리적 상태에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백신주가 다른 개체로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을10-135 논문(수사기록 831면 '의사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183면에서도 "시험소에서 이 LOM균주가 양돈장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다가 약간의 변이에 의해 돼지간에 전파될 수 있는 균주로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일부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농장 외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개체가 항체를 보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ELISA법에 의한 항체 양성 검사는 실험실 오류도(시약, 장비, 작업, 기록 등)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원고가 제출한 역학조사 내용중에서 항원 음성이거나 항원 양성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이거나 항체 양성 비율이 항체 양성 비율보다 높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추가적인 자료 없이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제3농장 검사성적은 물론, 역학조사 보고서 99면에 보면 위탁농장 정밀검사결과에서도 여러 농장에서 미접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률이 12-56%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28/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또한 원고측은 항체가 나온 것만을 근거로 하여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매물 농장들에서도 어떻게 항체가 나올수 있는지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갑30증 62이하 이○○, 조○○, 조○○, 이○○, 황○○, 이○○, 권○○, 갑○○, 김○○ 농장).

[표 2]항원 보유돈 보다 항체 보유돈의 수가 많은 농장들

농장주	동거돈			S 축산 후보돈		
	검사	항원	항체	검사	항체	항체
이○○	13	7	12			
조○○	10	5	7	1	0	1
조○○	15	3	4			
이○○	29	13	22	10	4	9
황○○	12	0	4	8	5	3
권○○	20	5	9	10	7	9
이○○	53		8	7		2
김○○	36	5	16	10	0	10
김○○	6	3	6	9	0	8

다. 수의사에 의한 방역관리면에 관하여

실제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119개 종돈장 중에서 현장에 전담 수의사를 채용하여 농장에 배치한 경우는 약 8개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의사가 현장에 귀한 이유는 수의과대학의 6년제 전환, 수의사의 생산현장 기피, 수의사의 반려동물병원 개업 증가, 종돈장의 영세성 등에 따른 취업기피 현상을 들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앞

으로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농장의 경우 현장수의사 1~2명(2003년 1월까지 구○○ 수의사 1명) 상주, 영업담당 수의사(상원인티 이○○ 대표), 서울대학교 채○○ 교수(수의 병리학 전공)와 산학협동으로 방역 컨설팅, 위탁농장 관리를 위한 소독방역차 매일운행 등 방역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다른 종돈장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책임있는 관리였다고 보아야 하기에 피고 회사의 경우 돼지콜레라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에 대비한 방역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 농장은 구○○ 수의사가 2003년 1월 퇴사한 후 그 후임을 채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당시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수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는 돼지콜레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이러한 국내 종돈장 및 피고의 실정을 외면한 극히 탁상공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 피고 농장 직원들의 경찰진술에 관하여

원고측은 진술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구○○ 수의사의 경우, 제3농장에 주로 상주한 이유는 S 축산 전체 규모상 제 3농장이 가장 규모가 크며, 자돈들이 위탁으로 이동되어 나가는 경우이기에 당연히 방역상 제일 중요하여 주로 제3농장에 근무하였지만, 정기적으로 제1,2 및 위탁농장을 순회하여 점검하였고, 매주 정기 가검물 의뢰 등 S 축산과 관련한 현장의 모든 수의 방역업무를 맡

아 수행해왔습니다. 실제로 위 구○○의 진술(을10-32의 수사기록 122 및 119면)에 의하면, 구○○은 피고 농장의 모든 수의사업무를 하기위해 입사한 자로서 제1농장과 제2농장의 수의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였냐는 질문에 “ S 축산은 저 이외에 상원인티 이○○ 사장도 S 축산의 계열사 사장으로 수의사이기 때문에 S 축산의 수의사업무는 공동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 의뢰를 하거나 또는 육안으로 검안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즉 이에 비추어보면 현장과 관련하여 질병에 관한 업무에 있어 이상이 감지된다면 당연히 현장수의사가 직접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영업을 담당하는 이○○ 역시 수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돈장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한 농장만을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돈장 수의사가 그 종돈장에 속한 모든 농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다만 진료실과 사무실을 수의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농장 또는 방역 활동에 편리한 위치에 둘 뿐입니다. 구○○ 수의사의 경우에도 제3농장에 진료실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 수행 및 책임 범위는 1, 2 및 3농장이었음은 물론입니다.

(2) 원고는 피고가 돼지콜레라 발생 전 여러 달 동안 비정상적인 규모의 돼지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의사 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선 앞서 앞서 전국 종돈장에서의 수의사 배치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의사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바로 피고의 과실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발생 전 여러 달 동안 내내(적어도 2003년 1월 경까지) 구○○이 수의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진단과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측 주장은 부당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1/38

서울 강남구 테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lh@horizonlaw.com

비정상적인 폐사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면 모든 종합일보 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 정상적인 폐사가 급증한 것은 2002년 12월부터 제 3농장에서 제일 먼저 발생되었고(을10-89 수사기록 598면) 이는 이동제한에 의한 밀사로 인한 위축 및 PMWS의 발생이 원인이었고 이에 대하여 당시 자체 수의사 및 서울대에 정밀 검사 결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3농장의 자돈들은 2003년 1월에 서부위생소의 무작위 돼지콜레라 샘플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이중 위탁농장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위축이 되고 PMWS증상이 있는 자돈을 돈사의 회전을 위해 제 1농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이후부터 제1농장에서는 옮겨온 자돈에서만 폐사가 증가하였지 그 밖의 돈사에서는 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제1농장으로 옮겨온 돼지는 어차피 제3농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축 및 PMWS로 인해 폐사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의 자돈들이었습니다(10-89, 수사기록 598면 및 갑2 역학조사 보고서 114면).

또한 제2농장의 폐사도 150두 라고 진술한 것을 마치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대 해석 하려하지만 총 사육규모 6,000여두 되는 농장의 폐사두수 150두는 2.5%에 불과한 것이며 일반적인 폐사두수 규모이기에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폐사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일부 진술만을 들어 폐사기록 및 보고에 있어 수의사가 이를 전부 담당하지 않고 단순노무직에 불과한 피용자가 대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모든 기록과 보고업무를 반드시 수의사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원고측 주장과 같이 이러한 업무를 반드시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면, 앞서 본 현황 등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종돈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위법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스스로 종돈업계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2/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도 유독 피고에게만 근거 없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사 기록 및 결재를 하는 관리자들은 대부분 축산대학에서 전공을 마쳤고 현장경험이 5년 이상 또는 현장경험이 10년 넘는 관리자이며, 책임자들은 현장경험 20년이 넘는 베테랑급 축산전문가들입니다.

위와 같이 폐사한 돼지의 기록 및 폐사 원인 분석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4년제 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다년간 현장 경험을 한 축산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전문가가 수의사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가축질병학이나 미생물학을 공부하였고 현장 경험을 통하여 통상 발견되는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관리직 직원들이나 현장 책임자들에게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질병(예컨대, 호흡기 질병이나 소화기성 질병)이 아니거나 좀더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 회사 소속 수의사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피고 농장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수의사가 폐사축의 모든 것을 100% 확인하여 검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관리자들이 일반적인 폐사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모든 폐사체를 수의사가 검안 확인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4) 제3농장 관리자 이○○의 경우 역시 전체적인 진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염병의 의심은 전혀 없었다고 확실하게 진술하였고 원고가 지적하는 의심이 되는 병이란 것은 전염병으로 의심하였다는 의미가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3/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보타워빌딩 4층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아니라 수의사가 아닌 본인이 확실하게 특정한 질병 하나로 판정하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또는 자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 채○○ 교수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1) 서울대학교 채○○ 교수는 국내에서 수의병리학을 전공한 몇 안되는 석학 중의 한사람으로서 진단을 허술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채찬희 교수의 진술서(을 10-43, 126)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돼지콜레라와 PMWS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을 정도로 논문 발표도 많았기에 진단사항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돼지콜레라에 대한 채○○ 교수의 전문성은 제출된 자료를 고려할 때 (을 10-43, 55, 56, 57, 58, 59, 76, 126, 137 수사기록 중 인증서 등)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채교수의 전문성으로 보아, 본인도 병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외부에 의뢰하여 진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PMWS와 PDNS 등은 채교수 스스로 확진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질병을 의심하여 진단을 외부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 교수가 오진을 한 사례라고 7건을 제시하나 이는 진단 시기와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위 7건의 경우에 채교수가 진단한 시기 이후에 새롭게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적어도 채교수가 진단할 당시에는 임상 증상나 병리학적 이상소견이 없었다가 그 이후에 진단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단방법의 차이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채○○ 교수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입니다.

바. 검사 결과의 대표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는 중 “ 이는 해당 모돈에 대한 결과일 뿐 피고 농장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전혀 갖지 못하여 ... 도축하는 모돈에 대한 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부지소의 검사는 본 사건을 위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사찰차원에서 수시로 농장 몰래 실시되었으며 다만 그 결과가 후일 밝혀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후보돈은 도축하지 않으므로 서부지소의 도축장 검사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보돈에 대한 검사가 아니더라도 후보돈과 같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이나 웅돈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돼지콜레라의 강한 전염력으로 보아 한 농장에 감염된 돼지가 있으면 연령과 상관없이 다른 돼지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가 위 서부지소의 비밀스런 검사 결과가 의미 없다고 이제와서 발뺌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검역활동의 의의와 결과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 본건 역학조사 관련 기초자료의 충실성 여부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갑 제30호증은 이 사건 돼지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기록 일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기록에는 피고 농장으로부터 후보돈을 분양받았으나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농장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마치 피고 농장에서 후보돈을 구입한 농장은 모두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자료만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갑 제2호증 역학조사 보고서 91면 내용에 의하면 피

고 농장에서 분양을 받았으나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도 상당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혈액검사 결과의 대상표본수 등이 갑2 역학조사 보고서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갑2의 작성과정에서 사용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을 정확히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피고가 감염된 돼지(종돈)를 전국 각지의 농장에 공급하여 돼지콜레라를 전파하였다는 원고측 주장은 수의역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피고 농장에서는 본건 돼지콜레라가 최초로 신고되었던 날인 2003년 3월 18일 이전은 물론 바로 위 당일에도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선행되지 않은 일이 그 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측은 수의역학적으로 타당한 조사방법에 기초한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 초기에 발병이 신고된 농장의 관련사항을 검토하다가 피고로부터 종돈을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자 이 우연한 사실만을 감염원인으로 속단하여 피고를 중심으로 한 표적 조사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피고 농장의 특수한 상황(이동제한에 따른 과밀수용으로 인한 일시적 폐사 증가 현상등)이나 국내 최고의 수의병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역학조사 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6/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디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또한 피고는 종돈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정되어 엄격하고 치밀한 수사결과 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본건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돼지콜레라와 같은 법정 전염병의 발생은 개별 농가들만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유로 인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대규모의 살처분을 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도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돼지고기 수출을 목적으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정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정책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 등은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인 피고에게 구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법적 관계를 무시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11호증 | 위탁농장 선발 리스트 |
| 1. 을 제12호증 | 고촌농장 채혈내역 |
| 1. 을 제13호증 | 용돈 명세서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7/3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horizonlaw.com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5. 1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 금 실



담당변호사 조 용 환



담당변호사 임 성 택



담당변호사 박 영 주



담당변호사 김 성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38/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9. 원고측 변호인단 4차 준비서면 제출(접수: '05.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준비서면

사건 2005가합20052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56의 2 일광빌딩 6층
전화:02-5858-808 전송:02-5858-805 우편:137-881
담당변호사 김태욱, 정성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돼지콜레라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 전파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임이 확실합니다.

S 축산(상주축산 분양 포함)의 돼지를 구입한 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44개 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32개 농장에서 S 축산 분양 돼지와 동거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18개 농장은 S 에서 분양된 돼지에서만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S 축산의 분양돼지가 돼지콜레라에 오염된 채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결과입니다(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91쪽 표 24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농가는 약 17,000개에 이릅니다(갑제32호증의 1, 2, 가축통계 참조). 그런데 유독 피고로부터 분양받거나 관련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당시 전국 1만7천 농가 중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된 농장 대부분은 S 축산 및 관련 분양농장들이었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S 축산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은 S 축산 분양 돼지로 인한 것이었음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합니다) 역학조사과에서는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역학조사내용을 수의학 관련 해외 유명 학술잡지(Veterinary record)에 투고하여 게재 승인되었으며(갑제33호증 수의학 학술잡지 참조), 이는 당시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이 국제적,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 검역원은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공인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바, 이 사건에서 검역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은 돼지 이동상황,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및 물품의 이동상황 뿐만 아니라 정액 공급 내역, 약품의 구입, 사료의 구입, 수

의사의 이동 경로, 출입차량의 이동 경로, 분뇨처리 및 톱밥의 반입, 잔반 급여,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현황 등 돼지콜레라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하여 조사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있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피고가 분양한 돼지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백신주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일어난 결과는 아닙니다.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이 나왔다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는 돼지들이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항체양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야외바이러스의 노출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체양성이 확인된 대부분 농장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들이었습니다).

최근 야외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서 검역원에서 30일령 전후의 자돈에 대한 돼지콜레라 백신의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고역가($106.7\text{TCID}_{50}/\text{두}$)의 백신을 자돈에 접종하여도 안전성이 우수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주는 genotype1에 속하며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야외에서 분리되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모두 genotype3 또는 genotype2로 밝혀져 백신주와는 유전적으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지역 돼지콜레라 항체 검출과 관련하여 검역원에서 실시한 확인 시험에서 LOM 백신주 및 제주지역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탐라주)는 수평감염(동거감염)이 성립되지 않음이 접종시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4. PMWS, PDNS 등의 질병은 반드시 돼지콜레라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당시 폐사 돼지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진단된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PMWS), 돼지피부염신증증후군(PDNS) 등의 질병은 돼지콜레라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하여야 되는 질병들이고, 이러한 점은 대규모 종돈장인 피고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더구나 주변 지역(김포, 강화)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고는 방역기관에 신고 또는 진단 의뢰했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로 수의학 교과서 및 학술논문들을 제출하는바, 위 증거자료들을 전부 번역할 수가 없어 관련부분(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갑제34호증의 1 : 수의학 교과서 '돼지의 질병(Diseases of Swine) 제 166쪽 '급성돼지콜레라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PRRS, 패혈증성 살모넬라증, 파스튜렐라증, 연쇄상구균증, 돈단독, 글래서씨병 등과 임상 병리 소견이 혼동됨으로 반드시 실험실 검사로 감별진단하여야 함'

갑제34호증의 2 : 수의학 잡지(The Veterinary Journal) 게재 논문 제11 쪽 '돼지콜레라는 PRRS 및 PDNS와 감별진단하여야 한다'

갑제34호증의 3 : 수의학 잡지(The Veterinary Journal) 게재 논문 제 329쪽 'PDNS는 돼지콜레라와 아프리카 돼지콜레라와 감별진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PDNS는 임상증상이 돼지콜레라와 유사하다'

5. 피고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 이유는 돼지콜레라로 인한 것 입니다.

S 축산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시기를 분석한 결과, S 축산(제1농장)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 내 한 돈사에 유입된 후 타 돈사의 돼지에 감염시키는데 26 ~ 38일이 소요되므로 검사일(2003. 3. 20.)을 고려하여 같은해 2. 10. 이전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S 축산으로부터 분양받아 발생한 농장 중 검사결과 입식돈에서 양성인 농장 분포를 살펴보면 양성돈 입식 시기가 2003. 1. 14.부터 같은해 3. 14. 까지이므로, 같은해 1. 14. 이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야외농장 감염 시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때까지의 기간(2 ~ 4주) 등을 고려할 때 S 축산에서는 2002. 12. 중순 ~ 2003. 1. 초순 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감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111쪽 참조).

피고농장에서 2003년 1월 무렵부터 폐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위 내용과 같이 돼지콜레라 감염 (2002년 12월 중순 ~ 2003년 1월 초순경) 후 임상증상을 발현하는 시기(약 2 ~ 4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S 제1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 이유는 돼지콜레라 감염에 의한 폐사로 여겨집니다.

비록 백 번을 양보하여 그 증상이 PMWS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돼지콜레라와 유사함으로 혼동하기가 쉬우므로 대규모 종돈장인 피고로서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감별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6. 역학조사 결과는 공정하고 타당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역학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피고 제1,2,3농장 및 위탁농장을 하나의 농장체계로 간주할 때, 바이러스 유입시 모든 농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제1농장에서만 확인되었고 임상증상 관찰결과 에서도 전혀 돼지콜레라 특이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확산이 피고농장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고, S 제2,3농장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된 돼지가 이동하여 제1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S 축산의 농장간 돼지이동상황을 보면, 제1농장은 각 위탁농장으로부터 선발된 돼지가 이동된 후 일정기간 계류하다 분양되는 분양 대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농장 중 어느 농장이 오염되었을 경우 돼지이동과정을 통하여 제1농장이 오염되게 되고, 또한 오염된 제1농장의 돼지가 전국의 양돈장에 분양되면서 해당 양돈장으로 질병이 전파된 것인 반면, 제2, 제3농장은 제1농장이나 위탁농장으로부터 역으로 돼지가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피고농장의 농장간 돼지이동 흐름도는 강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85,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 축산에서는 당시 예방접종은 제2, 3농장 중 5주령 이상의 거세돈 위주와 일부 위탁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을 뿐 제1농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1농장과 그 위탁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거세돈이 아닌 제1농장의 분양대기돈에서 대량(77.3%)의 항체가 검출되었고, S 축산 14개 위탁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전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예방접종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뉴질랜드 모리스 교수의 평가자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모리스 교수의 평가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관한 전문가가 총집합하여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검역원은 못믿으면서 왜 외국의 일개 교수에게 의뢰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모리스 교수의 평가자료는 그 자체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할 점은, 피고가 모리스 교수에게 제출한 평가대상 자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뉴질랜드 모리스교수에게 송부한 자료는 검역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분석자료를 모두 포함한 자료가 아닌 2002~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 여러차례 실시한 돼지콜레라 역학조사위원회 회의 자료 중 2003년 9월에 실시한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동 회의자료 내용만으로는 당시 검역원에서 실시하였던 역학조사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고자 합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1. 이 보고서는 S 축산이 질병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만을 특별하게 요약하고 있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피고가 모리스 교수에게 보낸 자료에도 검역원이 S 축산 및 분양농장을 조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S 축산이 모리스 교수에게 송부한 2003년 9월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결과 보고 제3쪽 2항 참조). 또한 발생농장에 병원체를 유입시키는 원인(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추적조사(tracing)을 실시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기본입니다. 돼지 콜레라 항원 양성 확인된 1개 농장을 비롯하여 이어서 의심축을 신고한 3개 농장들이 모두 한 종돈장으로부터 동일한 시기에 후보돈을 입식하였다면 해당 종돈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

양받지 않은 발생농장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위 보고서 제10쪽 참조).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2. 돼지콜레라 확산의 위험요인들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요인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하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역학조사시 모리스 교수가 언급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출처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타당성이 증명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제 191-193쪽 참조).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3. 역학조사 전반적으로 접근 방법에 뚜렷한 체계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검역원에서는 2003. 11월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발간등록번호 11-1380644-000037-01)을 발간하여 역학조사 수행시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학조사의 이론적 배경 및 역학조사 실무, 역학조사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문위원인 모리스 교수의 저서 (Disease Outbreak! What Can You Do? Epidemiological Skills in Animal Health pp321-327, Post Grad Committee Vet Sci, 1994)의 진행체계를 따랐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4. 발생농장 및 비발생농장을 포함하는 위험 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돼지콜레라 발생시 위험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일정한 거리를 포함하는 방역대에 포함되는 농장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를 위험지역, 3-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농가에 대한 사육정보를 관리하며, 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및 발생이 확인될 시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군 관할 시도지사가 검역원에 통지합니다. 예찰결과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역학조사보고서, 특히 최종본도 아닌 중간회의 자료에 이 명단을 첨부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② 사람, 차량, 돼지 이동 등에 의해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은 S 축산의 위탁농장이거나 S 축산으로부터 후보돈을 입식한 농장들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갑제2호증 보고서 제9-12쪽 및 제23-29쪽에 있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5. 역학조사위원회가 통계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 위원 6인은 바이러스학을 전공한 위원장과 전염병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인, 양돈협회 회장, 양돈 연구소 소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학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자문을 얻고자 함은 역학조사의 방향과 결과의 해석이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관점에서 어긋나는지를 검증받고자 한 것이지 전문화된 역학적 및 통계적 기법을 검증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6. 역학조사 보고서에 교란변수에 대한 보정이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동물의 이동에 의한 전파의 증거를 찾고자 종돈장의 위탁농장 및 분양농장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시간”

및 “사육규모” 등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탁농장 중 미사육 농장,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장, 사육규모, 사료의 실제 섭취량 등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교란변수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였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7. 실험실 검사결과가 거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보고되어 있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실험실 결과는 수의사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 수의사 중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리스 교수가 이 자료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이는 그의 면역학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8. 분자생물학적 결과는 단순히 한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농장에서 한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는 나타내지 않음. 바이러스 계통이 다르게 나타난 농장의 감염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바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계통주(Phylogenetic tree) 분석에 의하면 S 축산(제1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한 익산, 함안, 당진, 김해, 경주, 성주, 상주 지역의 57개 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2003. 3. 18.부터 같은해 5. 8. 사이에 발생한 65개 농장 중 S 축산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2개 농장을 제외한 모든 농장이 S 축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은 44개 농장과 이들에게서 인근전파 또는 오염차량,

사람을 통한 전파로 발생한 18개 농장 개개의 역학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세세한 전파모식도(epidemic tree)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보고서 제10쪽과 같이 발생농장의 전파요인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9. 이 연구결과를 국제적인 과학잡지에 게재하려고 제출한다면 조사방법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반려될 것임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및 역학적 분석 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의학 잡지인 Veterinary Record 2005년 157권 pp113-115에 “Outbreaks of classical swine f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3”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갑제33호 증 참조).

8. 제주도 돼지콜레라 백신주 검출사건에 대하여

2004년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를 하지 않고도 예방접종 실시 후 백신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혈분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해서도 항체가 검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사건으로, 피고는 이를 들어 백신주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역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원의 돼지 급여시험결과 백신주(시중판매 및 제주분리주)를 접종한 돼지의 비강 및 직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바이러스 배설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동거돈에서 바이러스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동거감염 및 전파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제35호증의 1부터 3, '제주도 돼지콜레라 백신주 검출 관련 역학조사 정밀검사 종합보고' 참조). 또한 위 제주도 사건은 검역원이 선불리 어느 농장을

감염, 전파의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9. 결론

돼지콜레라 방역관리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농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및 공중위생상 중요한 각종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발병 시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방역비용 등 막대한 국고 손실은 물론 관련 축산업계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반복될 것입니다.

사육하는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정밀진단을 받아야 함은 양돈가라면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고 더구나 피고같은 대규모 종돈장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9. 피고측 변호인단 5차 준비서면 제출(접수: '06.1.19,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론기일('06.1.19) 참석

[붙임 - 원문]

기 일	2006. 1. 19. 10:00	주 실	가	나	다
-----	--------------------	-----	---	---	---

사 원 피	건 고 고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대한민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속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분영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6. 1.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부분영수	2006. 1. .	
부분영수						
2006. 1. .						
						

준 비 서 면

2006. 1. .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조용환, 임성택,
 박영주,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동타워빌딩 ☎ 135-280
 대표전화: (02) 3430-4300 팩시밀리: (02) 3430-4200 e-mail:llr@horizonlaw.com

준비서면

사 건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이 사건 청구의 법적 허용성 여부

가. 이미 소멸된 채권이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태도를 바꾸어 살처분을 당한 전국의 농장 소유자로부터 살처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갑36의 1-27). 그러나 과연 이러한 채권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2)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36호증의 1 당진 김진원의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아마도 이는 원고가 직접 그 문안을 작성하여 해당자들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 발신인(농장 소유자)은 2003. 2. 19. 경 수신인(피고)으로부터 돼지 종돈을 분양받았는데,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 사건 당시, 발신인의 농장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발신인은 관계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돼지를 살처분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 그리고 수신인은 당시의 전국적 돼지콜레라의 발생, 전파 그리고 발신인 농장의 돼지콜레라 발병에 관하여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발신인은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신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바, 당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한 살처분보상금 177,415,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한민국에 양도하는 바입니다.(밑줄은 피고가 추가한 것입니다)

-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신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대한민국(농림부)에게 위임합니다.

2005. 11.

위 발신인 김진원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①135-280
대표전화 : (02) 3430-45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hlit@horizonlaw.com

2/15

(3) 살처분보상금과 피고의 책임 범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공급한 종돈을 통하여 일부 농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농장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그로 인하여 감염되어 사망한 돼지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염되었다거나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모두 폐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방역정책의 필요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돼지뿐 아니라,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함께 사육하던 모든 돼지들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일반 손해배상의 범리에 따른 손해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적용에 의한 일종의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원고가 이와 같은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개별 농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잠복된 감염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애초 원고가 양돈농가에 지급한 살처분보상금은 실제 감염된 돼지 규모보다 훨씬 확대된 것으로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종돈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인한 초과손실은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3/15

(4) 개별 농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더 나아가 설사 위 살처분에 따른 손실의 책임이 일부나마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된다고 할지라도, 각 농장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 살처분이 실시된 직후에 원고로부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살처분 보상금 상당액의 손실은 위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으로 회복되었고 바로 그 순간 그 범위 내에서 각 개별 농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손익상계의 법리). 따라서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원고에게 양도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가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던 점이 명백한데도, 이제 와서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나. 손익상계 제도의 취지 및 관련 판결의 내용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손익상계 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손익상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손익상계의 법리는 손해배상이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20-4300 팩시밀리 : (02) 3420-4200 e-mail:lit@horizonlaw.com

4/15

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게 된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손익상계는 판례로서도 확고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0. 선고 94나3207 판결).

(2) 그렇다고 하면 개별 농장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최소한 살처분보상금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손익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 소결론

(1) 피고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이 사건 돼지콜레라는 피고가 유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가축전염병이 유사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정 농장이나 개인으로부터 전국적인 가축전염병의 발생 책임을 지울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유발이나 전파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계를 그 책임비율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어디에 이 사건처럼 특정 농장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30
대표전화 : (02) 3430-42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5/15

(2) 더 나아가 만일 진실로 원고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전파에 대하여 특정 농장이나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면 마땅히 법령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 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권양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기하는 이 사건 청구는 법적으로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행한 처분으로 확대된 손실까지도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거짓임이 명백한 내용

가. 피고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종돈을 분양하였다는 증거의 존재여부

(1) 어떤 질병 특히 전국적 가축전염병이 하나의 발생원인 내지 동일한 발원지에서 나머지 거의 모든 발병지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일이나 시각에 동시 다발적으로 다량의 가축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03년 2월부터 한 달 가까이 전국 각 농장에 감염된 종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 대단히 드문 일이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장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공급을 받은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동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hl@horizonlaw.com

6/15

농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발원지라고 추정되는 피고 농장에서 우선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돼지콜레라의 무서운 전염성과 급속한 전파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대로 한다면 최초로 발병이 신고된 익산의 송영민 농장이나 함안의 김외석 농장이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시기는 2003년 2월 18일 무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병이 신고된 3월 18일 무렵까지 한 달 가량 동안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감염된 종돈 속에서 돼지콜레라가 생존하였을 것이며, 결국 수일 내에 폐사가 이루어지고 주위 돼지를 감염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나 경과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종돈의 공급처이자 감염추정지인 피고의 1농장 분양대기돈사에는 특별한 감염양상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역학조사보고서 114면 그림38에서는 피고의 1농장에서 2002년 12월이나 2003년 1월, 2월에 폐사율이 급속히 높아진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폐사가 많았던 돈사는 종돈이 수용된 분양대기돈사가 아닌 자돈사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분양대기돈사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에 이르기까지 폐사율이 극히 낮았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피고 농장의 분양대기돈사에서는 감염이 없었던 상태로 수용되었던 종돈이 분양된 후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발병이 되었다면 이는 분양 전에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분양후 새롭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7/15

(3) 실제로 이 사건에서 돼지콜레라 발병이 확진된 시기를 보면, 상당수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확진이 되었던 2003년 3월 2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 1농장에서 감염이 확진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바로 직전인 3월 18일에 이르기까지 돼지콜레라 양성소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질병요인도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못한 것이 다른 개체를 전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감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농장이 나머지 농장의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판단입니다. 요컨대 피고농장이 전국 각지의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공급한 종돈이 공급 당시에 이미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어떤 직접적인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나. 피고가 이동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돼지를 이동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감염이 확인된 농장들에게 종돈을 공급하기 전에 피고 농장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해 내기 위한 근거 중의 하나로 피고가 이동제한 기간 중에 있던 위탁농장으로부터 종돈들이 수용되었던 1농장으로 돼지가 이동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위 역학조사보고서 98면 그림 32에 의하면, 피고의 위탁농장 중 민00(민병우) 농장이 2002년 12월 7일 무렵에, 이00(이종수) 농장이 12월 10일 무렵에 돼지를 이동하였는데 위 두 농장의 경우 2002년 12월 14일 무렵까지 이동제한기간이었으므로 이동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돼지를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산타워빌딩 ☎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8/15

(2) 피고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수환도 2005년 12월 21일자 증인신문조서 중 59항에서, 피고의 위탁농장에서 12월 14일 이동제한해제공문이 나갔음에도 12월 7일에 돼지를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3) 문제가 된 두 농장은 피고의 위탁농장 중 민○○ 농장과 이○○ 농장입니다. 위 보고서 98면 그림 32에는 돼지이동시기를 기준으로 2002년 12월 7일 무렵 민00 농장으로, 12월 10일 무렵에는 이00 농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산하 검역원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의 하나인 위탁농가 선발리스트(을 제36호증)에 의하면 2002년 12월 7일에는 민○○ 1동 70두, 12월 10일에는 임○○ 70두의 이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민00 으로 표시된 농장이 민○○ 농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12월 10일 돼지가 이동된 임○○ 농장은 사실은 이○○ 농장의 명의인을 이○○, 임○○, 이○○ 3인으로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며 대표로는 이○○ 농장으로 표시합니다. 검역원에 제출된 위탁사육농가내역(을 제37호증)에서 보는 것처럼 위 3인의 전화번호는 모두 011-****-**** 으로 동일하며, 주소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 입니다. 다만 사육두수가 다릅니다. 즉 같은 곳에 위치한 농장에서 돈사 구분에 따라 명의인을 다르게 표시한 것입니다. 결국 보고서에서 표시한 이00는 이○○ 농장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임○○ 돈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9/15

(4)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본건 증인신문 이후에 피고 측이 김포시를 통하여 확보한 당시 이동제한 해제를 알리는 공문(을 제 38내지 40호증)이 있습니다. 즉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에서는 2002년 12월 6일자로 돼지콜레라 검사 성적서를 첨부한 공문(을 제40호증)을 검역원 방역과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피고나 위탁농장들은 수신인이 아니었고 실제로 수령하지도 못했습니다. 위 공문에 첨부된 돼지콜레라 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 에 소재한 이○○ 농장의 경우 40두 검사 결과 항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같은 양촌면 학운리 *** 에 소재한 민○○ 농장의 경우 60두 검사 결과 항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2년 12월 7일자로 위 두 농장을 포함하는 일부 인천 서구 오류동 유○○ 농장 주위의 경계지역내 농장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을 김포시에 지시합니다(을 제39호증 공문 참조). 김포시가 위 지시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음은 물론입니다(을 제38호증 공문 참조). 피고는 당시 김포시로부터 위 내용을 확인하고 12월 7일에는 이○○ 농장의 임○○ 돈사로부터, 12월 10일에는 민○○ 농장으로부터 1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 서구 오류동 유○○ 농장의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2002년 12월 7일자로 해제된 사실은 피고 산하 농림부, 검역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돼지콜레라백서(을 제41호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역학조사보고서의 내용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0/15

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증인 안수환은 한술 더 떠 마치 피고가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며 원고측 증인 안수환입니다. 피고는 2002년 12월 7일자로 이동제한을 해제받고 돼지를 이동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농장도, 이○○농장도 돼지 콜레라 항원 검사에서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6)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극히 안 좋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발표까지 하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본건 역학조사 결과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 예비적 항변 : 일부 농장 소유자들의 부제소 합의

가. 부제소 합의의 내용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원고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년 2월 무렵 추락한 신용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살처분 대상 농장 중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 27곳에 대하여 피고가 돼지를 기증하고 위 기증받은 농장들은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함)를 하고 위 각 농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각서를 받았습니(을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1/15

제42호증, 제43호증의 1 내지 8 각서 등 참조).

나. 일부 채권양도에 대한 예비적 항변사유

위와 같은 부채소 합의를 한 농장 소유자들 중에서도 이천의 강○○, 박○○, 함안의 김○○, 김○○, 여주의 조○○, 원○○, 홍성의 김○○, 김제의 김○○의 경우 본 소송에서 원고에게 관련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부채소 합의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어느 모로 보나 부채소 합의에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58억 원 상당액에서 위와 같은 부채소합의 농장 소유자들의 해당 금액 및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입식돈이 음성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보상액을 공제하면 34억4169만원 상당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을 제44호증 참조).

4. 결론

이상과 같이 본건 청구는 손익상계에 의하여 양도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양도에 기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아 청구의 근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 농장이 특히나 종돈을 공급하던 분양대기돈사의 종돈들이 전국 각지의 농장에서 돼지콜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2/15

레라가 발생하기 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김포시의 채혈검사 결과 모두 돼지콜레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위탁농장에서 돼지를 이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의인지 착오인지 알 수 없으나 마치 피고가 이동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정보를 역학조사보고서에 게재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책임 사유에 대한 법적, 수의 역학적 타당성을 충실하게 검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우 무리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사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강○○ 등 8인의 경우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자연재해의 성격이 강한 점, 피고로서도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던 점,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본건 청구금액은 대부분 방역정책 차원에서 범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본건 발병이 급속히 확산된 것은 조기에 백신접종을 중단한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그 범위는 극히 낮은 비율에 불과할 것입니다.

5. 조정의 필요성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3/15

피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하여 그동안 3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조만간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을 제45호증 손실액 추산서 참조).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없지만 본건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복 불능의 경영상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귀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35호증 | 역학조사보고서 중 일부(이동제한 위반 부분) |
| 1. 을 제36호증 | 위탁농가 선발리스트(1농장 고촌) |
| 1. 을 제37호증 | 위탁사육농가 내역 |
| 1. 을 제38호증 | 가축이동제한 변경고시(김포시 2002. 12. 7.) |
| 1. 을 제39호증 | 인천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경계지역 해제 |
| 1. 을 제40호증 | 인천(유찬원)관련 김포지역 해제대상농가 검사결과보고 |
| 1. 을 제41호증 | 돼지콜레라백서(검역원) |
| 1. 을 제42호증 | 각서 작성자 목록 |
| 1. 을 제43호증의 1 내지 8 | 각 각서 |
| 1. 을 제44호증 | 채권양도 농가 분석표 |
| 1. 을 제45호증 |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S 축산 손실액 추산 |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스번호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4/15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6. 1.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 금 실



담당변호사 조 용 환



담당변호사 임 성 택



담당변호사 박 영 주



담당변호사 김 성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horizonlaw.com

15/15

10. 원고측 변호인단 5차 준비서면 제출(접수: '06.1.19,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론기일('06.1.19) 참석

[붙임 - 원문]

준비서면

사건	2005가합20052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태욱, 정성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가축전염성 발병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반 양돈농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손꼽히는 종돈 생산, 분양 업체이어서 피고가 분양하는 돼지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 이는 곧 전국적인 발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농장에 비하여 돼지

콜레라 등 가축전염성 발병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3. 1. 22.경 이후로 평상시에 비하여 사육현황 대비 폐사 두수가 현저히 늘어나게 되어 전염성질환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관할 관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염성질환 발병의 의심이 있는 돼지를 전국적으로 분양하여 결국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을 야기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돼지콜레라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 전파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임이 확실합니다.

S 축산(상주축산 분양 포함)의 돼지를 구입한 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44개 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32개 농장에서 S 축산 분양 돼지와 동거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18개 농장은 S 에서 분양된 돼지에서만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S 축산의 분양돼지가 돼지콜레라에 오염된 채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결과입니다(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91쪽 표24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농가는 약 17,000개에 이릅니다(갑제32호증의 1, 2, 가축통계 참조). 그런데 유독 피고로부터 분양받거나 관련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당시 전국 1만7천 농가 중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된 농장 대부분은 S 축산 및 관련 분양농장들이었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S 축산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은 S 축산 분양 돼지로 인한 것이었음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합니다) 역학조사과에서는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역학조사내용을 수의학 관련 해외 유명 학술잡지(Veterinary record)에 투고하여 게재 승인되었으며 (갑제33호증 수의학 학술잡지 참조), 이는 당시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이 국제적,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 검역원은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공인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바, 이 사건에서 검역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은 돼지 이동상황,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및 물품의 이동상황 뿐만 아니라 정액 공급 내역, 약품의 구입, 사료의 구입, 수의사의 이동 경로, 출입차량의 이동 경로, 분노처리 및 톱밥의 반입, 잔반 급여,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현황 등 돼지콜레라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하여 조사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있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가축방역에 관한 피고의 농장관리는 지극히 허술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일반 돼지사육농가와 달리 종돈(정액제공용 수태지) 및 후보돈(임신 가능한 암태지)를 공급하는 농장입니다. 피고가 가축전염병에 걸린 돼지를 전국 각 농가에 분양하는 경우 그 파급력 및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돼지사육농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우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농장의 돼지가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만

약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사소한 징후라고 보인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돼지콜레라의 발생 전 여러 달 동안 비정상적인 규모의 돼지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정밀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수의사도 제대로 배치해 두지 않았고 폐사된 돼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 종돈장으로서의 방역위생관리가 지극히 부실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금액

갑제3호증의 1부터 갑제29호증의 2, 각 권리양도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은 모두 피고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농가로부터 제출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약 59억원은 받아야 합니다. 한 것만 채권양도 받았습시다.

3. 결론

돼지콜레라 방역관리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농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및 공중위생상 중요한 각종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발병 시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방역비용 등 막대한 국고 손실은 물론 관련 축산업계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반복될 것입니다.

사육하는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정밀진단을 받아야 함은 양돈가라면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고 더구나 피고같은 대규모 종돈장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을호증 인부

이 사건 돼지콜레라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 전파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임이 확실합니다.

S 축산(상주축산 분양 포함)의 돼지를 구입한 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44개 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32개 농장에서 S 축산 분양 돼지와 동거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18개 농장은 S 에서 분양된 돼지에서만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S 축산의 분양돼지가 돼지콜레라에 오염된 채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결과입니다(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91쪽 표 24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농가는 약 17,000개에 이릅니다(갑제32호증의 1, 2, 가축통계 참조). 그런데 유독 피고로부터 분양받거나 관련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당시 전국 1만7천 농가 중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된 농장 대부분은 S 축산 및 관련 분양농장들이었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S 축산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

고 있어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은 S 축산 분양 돼지로 인한 것이었음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합니다) 역학조사과에서는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역학조사내용을 수의학 관련 해외 유명 학술잡지(Veterinary record)에 투고하여 게재 승인되었으며(갑제33호증 수의학 학술잡지 참조), 이는 당시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이 국제적,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 검역원은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공인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바, 이 사건에서 검역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은 돼지 이동상황,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및 물품의 이동상황 뿐만 아니라 정액 공급 내역, 약품의 구입, 사료의 구입, 수의사의 이동 경로, 출입차량의 이동 경로, 분뇨처리 및 톱밥의 반입, 잔반 급여,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현황 등 돼지콜레라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하여 조사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있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피고가 분양한 돼지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백신주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일어난 결과는 아닙니다.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이 나왔다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는 돼지들이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항체양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야외바이러스의 노출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체양성이 확인된 대부분 농장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농장들이었습니다).

최근 야외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서 검역원에서 30일령 전후의 자돈에 대한 돼지콜레라 백신의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고역가(106.7TCID₅₀/두)의 백신을 자돈에 접종하여도 안전성이 우수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주는 genotype1에 속하며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야외에서 분리되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모두 genotype3 또는 genotype2로 밝혀져 백신주와는 유전적으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지역 돼지콜레라 항체 검출과 관련하여 검역원에서 실시한 확인 시험에서 LOM 백신주 및 제주지역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탐라주)는 수평감염(동거감염)이 성립되지 않음이 접종시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4. PMWS, PDNS 등의 질병은 반드시 돼지콜레라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당시 폐사 돼지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진단된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PMWS), 돼지피부염신증후군(PDNS) 등의 질병은 돼지콜레라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하여야 되는 질병들이고, 이러한 점은 대규모 종돈장인 피고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더구나 주변 지역(김포, 강화)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고는 방역기관에 신고 또는 진단 의뢰했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로 수의학 교과서 및 학술논문들을 제출하는바, 위 증거자료들을 전부 번역할 수가 없어 관련부분(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갑제34호증의 1 : 수의학 교과서 '돼지의 질병(Diseases of Swine) 제 166쪽 '급성돼지콜레라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PRRS, 패혈증성 살모넬라증, 파스튜렐라증, 연쇄상구균증, 돈단독, 글래서씨병 등과 임상 병리 소견이 혼동됨으로 반드시 실험실 검사로 감별진단하여야 함'

갑제34호증의 2 : 수의학 잡지(The Veterinary Journal) 게재 논문 제11 쪽 '돼지콜레라는 PRRS 및 PDNS와 감별진단하여야 한다'

갑제34호증의 3 : 수의학 잡지(The Veterinary Journal) 게재 논문 제 329쪽 'PDNS는 돼지콜레라와 아프리카 돼지콜레라와 감별진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PDNS는 임상증상이 돼지콜레라와 유사하다'

5. 피고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 이유는 돼지콜레라로 인한 것입니다.

S 축산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시기를 분석한 결과, S 축산(제1농장)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 내 한 돈사에 유입된 후 타 돈사의 돼지에 감염시키는데 26 ~ 38일이 소요되므로 검사일(2003. 3. 20.)을 고려하여 같은해 2. 10. 이전에 감염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S 축산으로부터 분양받아 발생한 농장 중 검사결과 입식돈에서 양성인 농장 분포를 살펴보면 양성돈 입식 시기가 2003. 1. 14.부터 같은해 3. 14. 까지이므로, 같은해 1. 14. 이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야외농장 감염 시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때까지의 기간(2 ~ 4주) 등을 고려할 때 S 축산에서는 2002. 12. 중순 ~ 2003. 1. 초순 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111쪽 참조).

피고농장에서 2003년 1월 무렵부터 폐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위 내용과 같이 돼지콜레라 감염 (2002년 12월 중순 ~ 2003년 1월 초순경) 후 임상증상을 발현하는 시기(약 2 ~ 4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S 제1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 이유는 돼지콜레라 감염에 의한 폐사로 여겨집니다.

비록 백 번을 양보하여 그 증상이 PMWS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돼지콜레라와 유사함으로 혼동하기가 쉬우므로 대규모 종돈장인 피고로서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감별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6. 역학조사 결과는 공정하고 타당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역학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피고 제1,2,3농장 및 위탁농장을 하나의 농장체계로 간주할 때, 바이러스 유입시 모든 농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제1농장에서만 확인되었고 임상증상 관찰결과 에서도 전혀 돼지콜레라 특이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확산이 피고농장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고, S 제2,3농장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된 돼지가 이동하여 제1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S 축산의 농장간 돼지이동상황을 보면, 제1농장은 각 위탁농장으로부터 선발된 돼지가 이동된 후 일정기간 계류하다 분양되는 분양 대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농장 중 어느 농장이 오염되었을 경우 돼지이동과정을 통하여 제1농장이 오염되게 되고, 또한 오염된 제1농장의 돼지가 전국의 양돈장에 분양되면서 해당 양돈장으로 질병이 전파된 것인 반면, 제2, 제3농장은 제1농장이나 위탁농장으로부터 역으로 돼지가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피고농장의 농장간 돼지이동 흐름도는 강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85,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 축산에서는 당시 예방접종은 제2, 3농장 중 5주령 이상의 거세돈 위주와 일부 위탁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을 뿐 제1농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1농장과 그 위탁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거세돈이 아닌 제1농장의 분양대기돈에서 대량(77.3%)의 항체가 검출되었고, S 축산 14개 위탁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전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예방접종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뉴질랜드 모리스 교수의 평가자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모리스 교수의 평가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관한 전문가가 총집합하여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검역원은 못믿으면서 왜 외국의 일개 교수에게 의뢰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모리스 교수의 평가자료는 그 자체로 객

관성과 과학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할 점은, 피고가 모리스 교수에게 제출한 평가대상 자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뉴질랜드 모리스교수에게 송부한 자료는 검역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분석자료를 모두 포함한 자료가 아닌 2002~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 여러차례 실시한 돼지콜레라 역학조사위원회 회의 자료 중 2003년 9월에 실시한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동 회의자료 내용만으로는 당시 검역원에서 실시하였던 역학조사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고자 합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1. 이 보고서는 S 축산이 질병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만을 특별하게 요약하고 있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피고가 모리스 교수에게 보낸 자료에도 검역원이 S 축산 및 분양농장을 조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S 축산이 모리스 교수에게 송부한 2003년 9월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결과 보고 제3쪽 2항 참조). 또한 발생농장에 병원체를 유입시키는 원인(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추적조사(tracing)을 실시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기본입니다. 돼지 콜레라 항원 양성 확인된 1개 농장을 비롯하여 이어서 의심축을 신고한 3개 농장들이 모두 한 종돈장으로부터 동일한 시기에 후보돈을 입식하였다면 해당 종돈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지 않은 발생농장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위 보고서 제10쪽 참조).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2. 돼지콜레라 확산의 위험요인들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요인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하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역학조사시 모리스 교수가 언급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출처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타당성이 증명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제 191-193쪽 참조).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3. 역학조사 전반적으로 접근 방법에 뚜렷한 체계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검역원에서는 2003. 11월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발간등록번호 11-1380644-000037-01)을 발간하여 역학조사 수행시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학조사의 이론적 배경 및 역학조사 실무, 역학조사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문위원인 모리스 교수의 저서 (Disease Outbreak! What Can You Do? Epidemiological Skills in Animal Health pp321-327, Post Grad Committee Vet Sci, 1994)의 진행체계를 따랐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4. 발생농장 및 비발생농장을 포함하는 위험 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돼지콜레라 발생시 위험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일정한 거리를 포함하는 방역대에 포함되는 농장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를 위험지역, 3-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농가에 대한 사육정보를 관리하며, 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및 발생이 확인될 시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군 관할 시도지사가 검역원에 통지합니다. 예찰결과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역학조사보고서, 특히 최종본도 아닌 중간회의 자료에 이 명단을 첨부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 ② 사람, 차량, 돼지 이동 등에 의해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은 S 축산의 위탁농장이거나 S 축산으로부터 후보돈을 입식한 농장들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갑제2호증 보고서 제9-12쪽 및 제23-29쪽에 있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5. 역학조사위원회가 통계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 위원 6인은 바이러스학을 전공한 위원장과 전염병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인, 양돈협회 회장, 양돈 연구소 소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학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자문을 얻고자 함은 역학조사의 방향과 결과의 해석이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관점에서 어긋나는지를 검증받고자 한 것이지 전문화된 역학적 및 통계적 기법을 검증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6. 역학조사 보고서에 교란변수에 대한 보정이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동물의 이동에 의한 전파의 증거를 찾고자 종돈장의 위탁농장 및 분양농장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시간” 및 “사육규모” 등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탁농장 중 미사육 농장,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장, 사육규모, 사료의 실제 섭취량 등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교란변수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였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7. 실험실 검사결과가 거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보고되어 있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실험실 결과는 수의사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 수의사 중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리스 교수가 이 자료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이는 그의 면역학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8. 분자생물학적 결과는 단순히 한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농장에서 한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는 나타내지 않음. 바이러스 계통이 다르게 나타난 농장의 감염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바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계통주(Phylogenetic tree) 분석에 의하면 S 축산(제1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한 익산, 함안, 당진, 김해, 경주, 성주, 상주 지역의 57개 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2003. 3. 18.부터 같은해 5. 8. 사이에 발생한 65개 농장 중 S 축산과 역학적 연

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2개 농장을 제외한 모든 농장이 S 축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은 44개 농장과 이들에게서 인근전파 또는 오염차량, 사람을 통한 전파로 발생한 18개 농장 개개의 역학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세세한 전파모식도(epidemic tree)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보고서 제10쪽과 같이 발생농장의 전파요인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 9. 이 연구결과를 국제적인 과학잡지에 게재하려고 제출한다면 조사방법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반려될 것임

위 내용에 대한 반박 :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및 역학적 분석 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의학 잡지인 Veterinary Record 2005년 157권 pp113-115에 “Outbreaks of classical swine f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3”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갑제33호 증 참조).

8. 제주도 돼지콜레라 백신주 검출사건에 대하여

2004년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를 하지 않고도 예방접종 실시 후 백신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혈분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해서도 항체가 검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사건으로, 피고는 이를 들어 백신주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역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원의 돼지 급여시험결과 백신주(시중판매 및 제주분리주)를

접종한 돼지의 비강 및 직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바이러스 배설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동거돈에서 바이러스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동거감염 및 전파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제35호증의 1부터 3, '제주도 돼지콜레라 백신주 검출 관련 역학조사 정밀검사 종합보고' 참조). 또한 위 제주도 사건은 검역원이 선불리 어느 농장을 감염, 전파의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9. 결론

돼지콜레라 방역관리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농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및 공중위생상 중요한 각종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발병 시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방역비용 등 막대한 국고 손실은 물론 관련 축산업계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반복될 것입니다.

사육하는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정밀진단을 받아야 함은 양돈가라면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고 더구나 피고같은 대규모 종돈장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 1. 강제32호증의 | 1 | 가축통계 표지 |
| " | 2 | 위 책자 제1쪽 |
| 1. 강제33호증 | | 수의학 학술잡지(Veterinary Record) 게재 논문 |
| 1. 강제34호증의 | 1 | 수의학 교과서 '돼지의 질병(Diseases of Swine) |
| " | 2, 3 | 각 수의학 잡지(The Veterinary Journal) 게재 논문 |
| 1. 강제35호증의 | 1 | '제주도 돼지콜레라 백신주 검출 관련 역학조사 정밀검사 종합보고' 표지 및 목차 |
| " | 2 | 위 보고서 제9쪽 |
| " | 3 | 위 보고서 요약본 |
| 1. 강제36호증의 | 1부터 27 | 각 채권양도통지서 |

첨 부 서 류

1. 위 각 갑호증

2005. 12.

원고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태욱, 정성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귀중

Ⅲ. 증인 진술서

1. 피고측 신문사항

가. 최○○ 증인 신문사항(접수 : 12.1,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2005. 12. 01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증인 신문사항

증인 최○○

1. 증인은 피고 회사의 상무로서 1976년 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고의 1농장에 상근하면서 피고의 1, 2, 3 농장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나요.
2. 을 제23호증 증인 진술서 내용은 증인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가요.
3. 가. 증인은 2003년 3월에 이르도록 30년 가까이 피고의 농장에 재직하면서 수많은 돼지를 기르면서 각종 질병에 걸린 돼지를 육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나. 증인은 위 회사 재직 중에 대만이나 영국에서 돼지 사육 및 질병관리에 관한 연수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다. 증인은 2000년도부터 2002년 10월 김포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김포시 돼지콜레라 박멸단 (약칭으로 “공방단”이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1/4

라 합) 위원 자격으로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돼지콜레라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도 받고 김포지역의 돼지콜레라 근절 대책도 함께 협의하였나요.

4. 가. 피고 회사에서는 돼지의 질병관리나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증인을 포함하여 위 회사에 고용된 자체 수의사(2003년 1월까지 구○○), S 축산의 종돈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상원인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 수의사 및 1995년 이래 수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채○○ 교수등이 함께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해 왔나요.
- 나.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피고 회사의 각 농장에 있는 돼지들 중에서 돼지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돼지들은 없었나요.
- 다. 위와 같은 판단은 증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수의과대학 채○○ 교수, 2003년 1월부터 재직하였던 구○○ 수의사, 그리고 S인티의 대표이사인 이○○ 수의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나요.
5. 가. 방역당국에서는 익산 송영민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신고를 받은 후 위 농장에 종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3월 18일 11시경 피고의 1농장을 방문하여 1차 조사를 하였나요.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4

나. 위 1차 조사 결과 방역당국에서는 돼지콜레라에 관련된 아무런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1농장 돼지 중 42두로부터 채혈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나왔다고 통지를 하였나요.

6. 가. 방역당국은 위 1차 검사 후 바로 다음날인 3월 19일 피고의 1, 2, 3농장 및 위탁농장 18곳에 있는 돼지들 중 약 800여두 정도에서 2차 채혈검사를 하였나요.

나. 위 3월 19일에 실시된 2차 채혈검사 당시 증인은 1농장으로 채혈을 위해 파견 나온 방역당국의 수의사들과 대부분 수의사들로 구성된 방역본부 직원들에게 1농장의 돼지들 중 돼지콜레라 증상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보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누구도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였나요.

다. 이후 3월 22일에 방역당국은 위 3월 19일자 채혈검사 결과 2두에서 돼지콜레라 양성 소견이 나왔다고 통지를 하였나요.

7. 가. 방역당국은 3월 23일에 피고의 1농장에서 제3차 채혈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증인은 채혈검사를 위해 나온 방역당국 직원들에게 3월 22일에 돼지콜레라 양성판정이 내려진 2두를 육안으로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요.

나. 또한 채혈을 위해 파견나온 방역본부 요원들에게도 돼지콜레라 의심 증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3/4

상이 있는 개체들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구분하지 못했
나요.

8. 기타 관련된 사항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4/4

나. 유○○ 증인 신문사항(접수 : 12.1,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증인신문사항

증인 유○○

1. 증인은 현재 영남대학교 생물자원학부 겸임교수 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S 축산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 을 제24호증 증인 진술서 내용은 주로 증인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간한 역학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통계학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인가요.
3. 기타 관련된 사항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890-12 다보타워빌딩 @135-280
대표전화 : (02) 3430-4300 팩시밀리 : (02) 3430-4200 e-mail:lit@horizonlaw.com

2. 원고측 증인진술서

가. 안수환 증인신문사항(접수 : 12.8,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2005가합20052호 손해배상(기)

증인 안수환에 대한 신문사항

(갑제31호증 증인 안수환의 진술서 제시하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 후)

(증인의 경력에 대하여)

1. 증인은 수의학 박사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돼지콜레라분과위원의 역학조사위원장이었지요.

(S 축산을 돼지콜레라 발병의 진원지로 지목한 것에 대하여)

2. 2003년 3월에 전라북도 등에서 돼지콜레라 신고가 있어 조사를 실시하였지요.

3. 그 때 검역원은 돼지콜레라가 전염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를 조사하였지요.

4. 그 결과 나머지 매개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S 축산에서 돼지를 공급

받았다는 공통적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돼지콜레라의 전파는 돼지의 이동이 가장 중요한 전파요인이기 때문에 S 축산을 주목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지요.

5. 검사 방법은 돼지콜레라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고 시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담당자가 숙지하고 있는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였지요.
6. S 축산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일부에서 야외 돼지콜레라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또한 높은 수준의 항체양성율이 나왔지요.
7. 이에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한 바, S 축산에서 현재 돼지콜레라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요.
8. 그래서 S 축산 후보돈 분양과 관련된 타 농장의 돼지콜레라 전파여부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역학조사를 확대하게 되었지요.
9. 조사결과 S 축산 분양농장 중 약 절반 정도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요.
10. 발생농장 중에는 입식돈과 동거돈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도 있었고, S 축산 관련 입식돈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도 있었지요.
11. 결론적으로, (1) S 축산이 타 농장으로 후보돈을 분양하는 농장인 제1농장의 돼지콜레라병 감염 확인, (2) '03년 2월 1일 이후 S 축산 분양농장 82개 농장 중 39개 농장(약 47.5%)에서 돼지콜레라병이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 (3)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중 입식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39개 농장 검사결과 32개(82.1%) 농장에서 입식돈과(또는) 동거돈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특이하게도 20개(51.3%) 농장에서 S 축산 관련 입식돈에서만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됨, 등의 사실은 S 축산 후보종돈 분양으로 인해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12. 더구나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S 축산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배열이 100% 일치한다는 사실은 S 축산에 책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지요.
13. 즉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는 유전자염기서열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유전자염기서열이 100% 일치한다고 함은 양자가 동일한 바이러스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지요.
14. 또한 2002년에 S 축산 인근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도 있지요.

(S 축산의 방역관리의무 소홀에 대하여)

15. S 축산은 일반 돼지사육농가가 아니라 종돈 및 후보돈을 전국에 공급하는 농장이어서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돼지가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지요.
16. 그러나 S 축산은, 돼지콜레라의 발생 전 여러 달 동안 비정상적인

규모의 돼지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정밀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수의사도 제대로 배치해 두지 않았고, 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 노무 직원이 수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폐사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는 등, 전국에 종돈을 공급하는 대규모 종돈장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방역관리가 지극히 부실하였지요.

(갑제31호증 진술서 제17항은 진술서로 대신하고 신문 생략)

18. PMWS, PDNS 등은 증상이 돼지콜레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S 축산에서는 진단이 가능한 방역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어야 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지요.

(갑제31호증 진술서 제19, 제20항은 진술서로 대신하고 신문 생략)

21. 또한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된 일부 위탁농장에서 이동제한 기간 내에 S 제1농장으로 돼지가 이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종돈장으로서의 방역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었지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22. 돼지콜레라 방역관리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23. 따라서 정부는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농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

을 높여야 하지요.

24.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및 공중위생상 중요한 각종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발병 시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방역비용 등 막대한 국고 손실은 물론 관련 축산업계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반복될 것이지요.

25. 기타 신문사항.

3. 피고측 증인 반대신문사항

가. 최○○ 증인 반대신문사항(접수 : 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2005가합20052호 손해배상(기)

증인 최○○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증인은 축산학 학위나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2. 하지만 증인은 약 30년 동안 S 축산에서 근무하면서 가축질병에 대한 경험 및 교육을 받아 가축질병 특히 돼지콜레라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3. S 축산은 자체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4. 수의사 구○○은 2001. 1. 15.부터 2003. 1. 30.까지만 피고 농장에 근무하였을 뿐이며, 피고 농장은 그 이후부터는 수의사를 두지 않았지요 (을제10호증의 32 구경민 진술조서 참조).

5. 또한 위 구○○은 피고 농장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던 중에도 주로 제3 농장의 업무만을 보았으며 제3농장의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태였지요.
6. 폐사된 돼지는 반드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요.
7. 더구나 피고농장은 전국에 종돈을 공급하는 대규모 농장으로서 만약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사소한 징후라고 보인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지요.
8. 그러나 위 구○○이 근무 중에는 주로 제1농장과 제2농장이, 구○○이 퇴직한 후에는 피고농장 전체적으로 수의사의 지시나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사된 돼지를 사체통에 처리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해 가는 등 임의로 처리하여 왔지요(을제10호증의 18 방용이 진술조서, 을제10호증의 32 구○○ 진술조서, 을제10호증의 34 박○○ 진술조서, 을제10호증의 36 이○○ 진술조서 등 참조).
9.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합니다)과 시도방역기관 만이 돼지콜레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요.
10. 증인은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돼지피부염신증증후군(PDNS) 등과 돼지콜레라를 누구보다도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PMWS 등 증상이 나타나도 이를 돼지콜레라로 의심하진 않았고 따라서 검역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11. 하지만 위 PMWS 등 질병은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이 돼지콜레라 감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미 수의학 교과서 및 여러 논문 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12. 더구나 당시 주변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등 상황과, 전국적 종돈 공급업체라는 피고 농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방역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13. 기타 신문사항.

나. 유○○ 증인 반대신문사항(접수 : 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붙임 - 원문]

2005가합20052호 손해배상(기)

증인 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증인은 수의사인가요.
2. 증인은 가축육종학, 즉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는 분야의 전문가이지 가축질병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요.
3.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합니다)은 1909년 설립된 국립동물검역소와 1911년 설립된 수의과학연구소가 1998년 통합되어 발족된 가축방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기관이지요.
4. 증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의학 잡지인 'Veterinary Record'라는 저널을 아나요.
5. 위와 같은 잡지에 논문이 게재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제적,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요.
6. 증인은, 검역원이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및 역학적 분석을 한 내용이 2005년 위 잡지에 게재된 사실을 아나요.

7. 증인은, 검역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아나요.
8. 자연과학에 있어서 통계학적 또는 확률론적 분석은 기초적인 도구이기는 하나, 가축전염병, 그것도 그 해악이 커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의 경우, 그 진원지 및 전파경로를 확인하여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요.
9. 증인은, 검역원이 하나의 위험요인, 즉 S 축산으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검역원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유입할 수 있는 모든 요인, 즉 돼지 출하 및 이동차량, 중개인, 동물약품, 사료, 분뇨처리, 수의사, 이웃, 가족 등과 관련한 차량 및 출입자 등을 모두 역학조사하였는데 어떤가요(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제95쪽 참조).
10. 증인은, 검역원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미발생 농장 포함하여 S 축산 분양농장 81개 농장 전부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35개 농장에서 감염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 어떤가요(갑제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제83쪽 참조).
11. 기타 신문사항.

4. 원고측 증인 반대신문사항에 대한 최종 답변자료 제출

가. 안수환 반대신문사항(제출 : 12.22,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측에서 최종 120문항에 대해 질의한 답변서

[붙임 - 원문]

2005가합 20052 손해배상(기)

반대신문사항

증인 안수환

(진술서 1. 증 본건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1. 증인은 수의역학이나 의학역학 등 역학을 전공하거나 수의역학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나요.

- 저는 수의역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수의역학분야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수의역학이란 수의학 또는 가축질병학 내의 한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의역학'을 따로 전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본건 역학조사 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고 함)이나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수의역학 전공자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누구였나요.

-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는 수의역학 전공자가 없지만 모두 돼지질병 전문가입니다. 역학조사위원 중에는 강원대 박선일 교수님이 수의역학을 전공하셨으며, 역학조사의 실무를 담당한 역학조사과에는 2명의 역학 전공자(이은섭, 윤하정)가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역학조사 과정에 수의역학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증인은 뉴질랜드 메시 대학의 로저 모리스 교수를 아는가요.
-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 문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모리스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관여하였고 검역원에서는 장기간 위 모리스 교수가 재직 중인 뉴질랜드의 메시 대학으로 직원의 연수를 보냈으며, 위 교수를 검역원의 명예 연구관으로 선임하여 역학조사 등에 관한 조언을 들어왔나요.
- 모리스 교수는 검역원의 명예연구관이 아니라 해외 자문위원입니다.
 - 역학조사과 직원 2명이 3~7일간 다녀온 바가 있고 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 모리스 교수를 일주일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 검역원은 해외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인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우리 검역원을 벤치마킹하는 실정입니다. 해외 어느 교수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5. 모리스 교수가 위와 같이 검역원의 역학조사에 자문을 해주며 직원 교육을 맡기도 했던 것은 검역원에서도 수의역학 분야에 있어서 위 교수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인가요.
- 구체적인 자문이나 직원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하는 일이나 분석기술들을 우리쪽에 접목하기 위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해외과학자를 초청하거나 현지에 가는 일은 연구분야에서는 흔한 일

입니다.

6. 위 교수는 본건 역학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본건 역학조사는 조사의 구조나 자료의 분석 양 측면에서 수의역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그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나요.
 - 그런 의견을 역학조사위원회나 역학조사과에 밝힌 적은 없습니다. 최근 피고측 소송자료를 보고 모리스 교수의 평가서가 피고측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을 제10호증의 124,125 모리스 교수 평가서 제시)

7. 나아가 모리스 교수는 피고측의 자료제공 및 요청에 따라 본건 역학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위와 같이 수의역학상 타당성이 결여된 보고서라는 평가서를 제출해 주어 피고가 이를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증인이나 검역원에서는 위 모리스 교수의 평가서 내용을 검토해 보았나요, (하였다면) 언제 하였나요.
 - 6번항에서 답변한 대로 피고측의 소송자료에서 모리스 교수의 평가서를 보고 역학조사과에서 검토하였고 지난 11월21일 검토자체의 부담함을 e-mail로 작성하여 항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검역원에서 전문성을 인정한 수의역학 전문가의 평가서를 왜 검토하지 않았나요.
8. 증인은 검역원의 직원인 위성환, 김도욱, 윤하정을 아는가요, 각각 무슨 직책에 있나요.
 - 알고 있습니다, 위성환은 전 역학조사과장이고 김도욱은 현 역학조사과장, 윤하정박사는 역학조사과 직원입니다.
9. 2005년 11월 말 경에 검역원의 역학조사과장 김도욱이 모리스 교수에게 본건 역학조사보고서가 타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

-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측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모리스 교수의 평가서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10. 검역원에서는 모리스 교수에게 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나요. 모리스 교수가 국제적으로 수의역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서 그동안 검역원에 많은 조언과 영향을 준 것을 고려하여 그의 평가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인가요.(해당없음)

- 피고측 자료를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11. 위 요청에 대하여 모리스 교수는 12월 9일경 역학조사과 직원 윤하정을 통하여 김도욱에게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고를 통하여 본 법원에 제출된 자신의 평가서대로 검역원의 역학조사보고서는 역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왔나요.

-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확인결과 당시 모리스 교수는 한국의 역학상황을 평가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평가한 자료 역시 2003년 9월 당시의 역학조사위원회의 내부 단편적인 회의 자료로써 모리스교수가 당시 역학조사 전반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나는 모리스 교수의 평가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을 제31호증 모리스 교수의 2005.12.09 자 전자우편 제시)

12. 위 전자우편 답신 내용에 의하면 2003년 역학조사 당시 검역원 역학조사과장 위성환이 모리스 교수에게 역학조사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가 발병인자에 대한 식별방법의 선택이나 인과관계 분석과정에서 수의역학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조사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당시에 위성환과 모리스 교수 사이에 이러

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확인결과, 당시 모리스 교수의 의견은 독단적인 주장일 뿐 입증할 만한 증거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리스 교수의 방문목적은 당시 한국에서 발생된 2002년 구제역을 중심으로 역학분석연구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 결과는 현재 논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시 돼지콜레라에 대한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모리스 교수가 관심을 보여 일부 설명을 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13. 사실 본건 역학조사는 그 기획 및 수행 과정에서 수의역학 전공자의 검토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 질병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는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역학개념이 반영되어 있음)에 의거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고, 역학조사 결과와 분석자료는 역학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14. 혹시 본건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는 역학조사보고서 초안 특히 피고 농장이 감염전파의 주역이라는 결론이나 조사대상 선정 등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한 위원은 없었나요.

- 없었습니다.

15.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에게 보고서의 기초자료를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에 배포해 주었나요 아니면 회의 참석시에 배포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들었나요.

- 최종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내용이 누설되지 않게 회의 당일 자료를 배포하였고,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회수하는 것이 관례이며, 회의 진행시에는 먼저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의하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분과위원회 회의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부터 종식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고 수 많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은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16. 분과위원회에서는 피고 S 축산측의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 S 축산에 대한 역학조사 당시 관련자들(한○○ 대표이사, 1농장 최○○ 상무, 2농장 관리인 박○○, 3농장 관리인 이○○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동 분과위원회에 피고측이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돼지콜레라 발생원인, 전파경로 등을 규명하는 전문가들이 토의하는 회의로서 발생농장에 사육일지 등 각종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피고 또는 피고측과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면 최종 결과 도출 전에 미확인 자료가 사전에 여과없이 보도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본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감염 전파자로 지목된 당사자야 말로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인데 이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삭제)
18. 본건 역학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간되기 전에 국내외 수의역학 전공자에게 별도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삭제)
19. 국내외를 통틀어 특정 종돈장에서 종돈 공급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를 전파하였다는 보고가 본건 외에 또 있나요.
 -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한 종돈장이 전국적 대규모로 돼지콜레라를 전파시킨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돈에서 유래되는 전염병이 전파되는 사례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위와 같이 이례적이고 드문 일에 대하여 검역원에서 위 역학조사보

고서 내용을 국내외 학회지에 보고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한 검증을 받고 발표하면 상당히 관심을 끌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미 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는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역학조사내용을 국제적인 수의학 저널(Veterinary record)에 투고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되었으며 이미 지난 2005년 5월에 발간된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등에 수회에 걸쳐 학술발표를 하였습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수의역학적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S 축산을 돼지콜레라 발병의 진원지로 지목한 것에 대하여)

(진술서 2. 관련)

21. 농림부는 2003년 3월 18일 및 19일 익산의 송영민 및 함안의 김의석으로부터 돼지콜레라 발생 신고가 접수된 후에 두 농장의 공통점으로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나요.

- 확인하였습니다.

22. 위 익산이나 함안 지역은 원래부터 돼지 농장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위 신고 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는 돼지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나요.

- 익산지역은 농장 밀집지역으로 질병 발생율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알고 있으나 함안지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을 제27호증의 2 양돈협회 제공 2003. 3. 20.자 양돈 뉴스 제시)

23. 농림부에서는 3월 19일에 바로 피고로부터 종돈 및 정액을 공급받은 농장의 목록을 제출받아 바로 그 다음날인 3월20일 피고의 종돈 거래처 82개 농장 돼지들로부터 채혈을 하여 정밀검사후 당일 18:00까

지 보고하도록 검역원에 지시한 바가 있지요.

○ 있습니다.

24. 경북 상주의 박경화 및 충남 당진의 김진원 농장은 위와 같은 피고 거래처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었던 것이지 위와 같은 일제 검사 전에 증상 발생이 선행하여 신고가 된 것은 아니지요.

○ 경북 상주의 박경화 농장은 '03.3.19일 축주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북 시험소에서는 농장에 출장하여 임상관찰 및 부검소견결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어 검역원에 신고(3.20일), 검사 의뢰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충남 당진의 김진원농장은 송영민('03.3.18 발생농가) 역학관련 농가로 통보를 받았고, 충남 축산위생연구소 통합지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에 신고(3.19일), 검사 의뢰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되었습니다.

25. 위 기사에 의하면 농림부는 3월 20일 일제 지시를 내린 근거로 4개 농장이 아니라 익산의 송영민, 함안의 김외석의 농장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지시 이전에 박경화, 김진원 농장에서 자발적인 신고가 있었다면 이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누락한 적이 없습니다.

○ 전북익산의 송영민, 경남함안 김외석, 경북 상주 박경화는 축주 신고에 의해 확인되었고, 충남당진의 김진원은 시·도방역기관에서 현지 출장결과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검역원에 신고로 확인된 농장입니다.

(을 제34호증 2003년 돼지콜레라 국내 발생 상황 제시)

26. 위 상황도에 의하면 피고가 종돈거래처 목록을 제출한 3월 19일 이전에 돼지콜레라 증상 신고가 된 농장은 송영민, 김외석 뿐이고, 상

주의 박경화, 당진의 김진원 등 나머지 농장들은 피고가 제출한 종돈 거래처에 대한 일제조사 개시 후인 3월 20일 후에 신고나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S 축산의 거래처에 대한 일제 조사 개시 전에 증인이 진술한 4개 농장 모두에서 연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증상 발생 신고가 있었던 것이 맞나요.

- 위에서 언급했듯이 박경화는 축주 신고에 의해 확인되었고, 김진원은 관할 가축방역기관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검역원에 신고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제조사는 농림부에서 3.20일자 공문으로 시도지사에게 지시되었고, 관할 시도 방역기관에서 일제히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7. 즉, 방역당국은 사실은 4개가 아니라 단 2개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양성이 나온 이후 피고 S 축산을 전파원인으로 추정을 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의 거래처 위주로 일제 조사를 한 것이지요.

- 위에서 언급했듯이 박경화 농장도 축주의 신고에 의해 발생 신고가 있었습니다.
- 피고의 농장처럼 발생시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농장일 경우에는 2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농장만 관련되었다라도 방역당국에서는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야하는 것입니다.
-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2-23호:'02.5.11) 규정에 의거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진술서 3. 4. 관련)

28. 종돈공급자인 피고 외에 나머지 매개체에 관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만큼 광범위하게 관련 접촉 영역에 관한 채혈검사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나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돼지콜레라로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9. 본건 조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중에는 피고와 관련되지 않은 농장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감염경로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였나요.
- 2003년에는 3월18일 전북 익산 왕궁면 송영민 농장에서 최초 신고된 이후, 5월 8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 총 65개 농장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5개 농장에 대해서 검역원 및 각 시·도 방역기관에서 역학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생농장간 전파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 중 1개가 S 축산의 제1농장이고, 44개 농장이 S 축산의 후보돈 분양농장이었으며, 18농장은 S 축산 후보돈 분양농장에서 인근전파 또는 오염된 사람·차량 등으로 인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중 제95쪽 참조) 즉 피고와 관련되지 않은 농장은 단 2곳 뿐이었는데 역학조사결과에서 S 축산과의 연관성은 물론 발생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83page에 기타(원인미상)로 분류하였습니다.
30. 위와 같이 피고와 무관한 상태에서 양성판정이 된 농장들은 일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돼지콜레라 증상이 발생하여 신고가 되어 조사를 한 결과 확인된 것이지요.(추가)
- 아닙니다. 총 65개 발생농장 중 목적예찰에 의한 발생건수 : 34건(54%), 신고에 의한 발생건수 17건(41%), 기타 3건(5%)이고, 총 65개 농장 중 63개 농장이 S 축산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단 2개(김철. 김삼호) 농장만이 역학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총 65개 농장 중 45개 농장(S 축산 포함)이 S 축산의 돼지이동과 관련이 있어 일제조사에 의해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18농장도 S 역학관련 농가들로서 능동예찰을 통하여 역학조사 및 혈청검사 결과 확인된 농장들입니다. 이들 농장들 역학조사결과 S 축산 관련 발생농장의 인근 또는 사람이나 차량등의 이동에 의한 전파로 조사되었습니다.
31. 돼지콜레라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후에 혈중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는 시기와 증상으로 발현되는 시기는 각각 며칠 후 정도부

터인가요.

- 혈중에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시기나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이나 돼지 개체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5-7일이면 혈중에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임상증상은 관찰자의 능력에 따라 인지 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나 전문가의 경우 빠르면 5일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사육두수가 많은 농장상황에서는 돼지콜레라의 뚜렷한 임상증상이 나타나 관찰자가 인지하기까지는 3-4주 정도 상당 시간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32. 통상적으로 채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시일이 더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 농장상황이나 돼지의 건강상태 및 바이러스의 병원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돼지콜레라의 전형적인 증상은 바이러스가 혈액중에 나타난 이후에 발현됩니다. 항원양성이 확인되었는데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초기에 뚜렷한 임상증상 없이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피고농장처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나 성장한 돼지들이 이동되는 특수한 경우는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고열, 피부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주요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악성전염병입니다.

33. 위와 같은 경우에 증상없이 채혈검사만 양성이 나온 경우보다 증상이 발현된 경우가 더 오래 전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 보통인가요.

- 위 32번 답 동일

(을 제28호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2. 12. 2.자 새소식, 갑 제30호증

의 18 안○○ 농장 조사 자료 제시)

34. 2002년 11월 27일 경에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지역이었던 강화의 이○○ 농장의 자돈 140두 혹은 220두가 전주시 방향으로 무단 반출된 사실이 있었나요.
- 있었습니다.
35. 위와 같이 이동제한을 무시하고 반출된 돼지들은 전북 완주군 비봉면 안○○(축주 배○○) 농장으로 출하된 것으로 밝혀졌나요.
- 2002.11.26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번지 소재 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동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10Km)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계지역내의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번지 소재 이○○가 2002.11.26 22:00경 자돈(60-80일령) 220두를 전북 완주군 소재 안○○(배○○) 농가에 반출하였습니다.
 - 전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안○○ 농가에 입식된 돼지 220두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전두수 음성(이상이 없는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이후에도 14일간 특별관리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36. 위 완주군 안○○(배○○) 농장에서 제일 먼저 본건 발병신고를 한 송영민 농장이 위치한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는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있었나요.
- 전북 익산 왕궁면에 최초 발생농가 송영민 농가와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접농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7. 돼지콜레라는 정액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 정액을 통해 전파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지만 외국(네덜란드)의 발생 사례에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웅돈 정액이 1700개 농장에 공급되었으나 단 20개 농장에서만 돼지콜레라 항체(항원) 양성으로 확인되어 정액을 통한 감염률은 지극히 낮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 A.J. de Smit 등 Veterinary Microbiology 67(1999)239-249)

38. 본건 역학조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중 갑 30의 18에 표시된 안○○(축주 배○○) 농장의 경우 피고의 종돈 공급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증상 발생 신고 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위 농장에 드나들던 임신진단사 조택종이 익산 왕궁단지를 오가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나요.
- 피고는 2002.11.26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이○○ 농가에서 안○○ 농가에 불법 반출한 돼지에 의해 왕궁단지에 최초 발생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 농가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불법 반출한 돼지 220두는 전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여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안○○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시점이 2003.3.23일이므로 불법 반출 시점인 2002.11.26일과는 무관합니다.
 - 역학조사결과 안○○ 농장의 발생원인은 돼지콜레라가 최초 발생된 신고된 왕궁지역('03.3.18일)을 출입한 사람 및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확인되었습니다.
39. 검역원에서는 위 안○○ 농장의 임신진단사를 중심으로 그 거래 농장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경우처럼 일제 채혈검사를 하였나요.
- 안○○ 농장을 출입한 임신진단사(조택종)과 관련된 농가들에 대해서도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해당농장에 대하여도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관련공문 : 방역과51580-533; '03.3.27)

(을 제29호증 정액판매처 목록 제시)

40. 검역원에서는 이 사건 발생 초기인 2003년 3월 19일 무렵 피고로부터 종돈 거래농장 외에 정액을 공급받은 농장 목록을 제출받아 관련 농장을 모두 조사하였지요.

- 조사하였습니다.
41. 그 결과 피고의 정액 거래 농장 50여 곳 중에 돼지콜레라 양성 판정을 받은 곳은 전혀 없었나요.
- 정액거래농장에서 인공수정을 통한 돼지콜레라 발생은 없었습니다.
42. 만일 피고를 통하여 감염된 돼지가 전국 각 농장에 전파된 것이라면 정액공급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다릅니다, 감염된 돼지가 입식된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지만 정액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37번 답변 참조)
 - 정액을 채취한 웅돈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정액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 감염이 되었다하더라도 발병 초기 일정기간에만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염된 정액을 모돈에 수정한 경우라도 극히 일부만이 감염이 되므로 반드시 정액을 공급한 농장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3. 그런데 피고로부터 정액을 공급받은 농장에서는 감염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농장에는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피고 농장이 정액공급 후에 별도의 경로로 감염을 당하였을 뿐 정액공급을 통하여 감염을 전파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41번 답변과 같이 정액공급을 통하여 전파된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42번과 같습니다.
44. 피고 농장의 돼지들 중에서 2003년 1월이나 2월 중에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나요.
- 피고농장의 정밀검사결과와 피고 돼지분양 발생농장들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02년 12월중순~'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S 축산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시기를 분석한 결과,

- S 축산(제1농장)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내 한 돈사에 유입된 후 타 돈사의 돼지에 감염시키는데 26~38일이 소요되므로 검사일(3.20)을 고려하여 2.10일 이전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참고문헌 : Laevens 등(Vet Quart 1998;20:41-45, Vet Quart 1998;20:46-49, Vet Rec 1999;145:243-248)
- S 축산 분양(발생)농장 중 검사결과 입식돈에서 양성인 농장 분포를 살펴보면 양성돈 입식 시기가 '03.1.14일부터 3.14일까지 이므로, 1.14일 이전에 이미 일부 분양예정 후보돈이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Laevens 등. Vet Rec 1999;145:243-248)
- 따라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야외농장 감염 시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때까지의 기간(2~4주) 등을 고려할 때 '02년 12월중순~'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역학조사보고서 111쪽).
- '03년 1월 무렵부터 폐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위 내용과 같이 돼지콜레라 감염 ('02년 12월중순~'03년 1월 초순경) 후 임상증상을 발현하는 시기(약 2~4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S 제1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 이유는 돼지콜레라 감염에 의한 폐사로 판단됩니다 (역학조사보고서 113쪽).

(을 제26호증의 1 내지 8 2003. 2. 아산의 돼지콜레라 발병 자료 제시)

45. 2003년 2월 19일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이○○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증세로 의심된다는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증인이 검역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현지 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46. 위 농장에서는 2월14일 경부터 고열, 피부청색증, 비틀거림 등 마비 증상과 같은 돼지콜레라 증세가 발생하여 이 중 2마리가 폐사되었고, 2월 18일 밤 1차 검사를 한 건국대 이준복 교수가 검역원에 병

성감정을 재의뢰하여 검역원에서는 19일 오전 9시에 돼지콜레라 양성 판정을 하였습니다.

- 이용배 농장건은 2.18일 건국대 이중복 교수가 의뢰한 시료 1점(비장 시료 1개)에서 의양성(양성이 의심되는 결과) 반응이 나타났으나, 최종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03.2.20)

47. 검역원에서 2월 19일 양성 판정을 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요

[폐사된 돼지의 부검소견이나 혈중 바이러스 검사 등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검사가 무엇이었나요].

- 검사방법은 46번과 관련된 검사는 돼지콜레라 진단 체계에 따른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돼지콜레라 진단체계 : 역학조사보고서 151page 참조)

48. 그런데 2월 20일 증인이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를 한 후에는 음성으로 최종 판정을 하였습니다.

- 현장출장은 2.19일 실시되었고 최종음성 판정은 농장에서 추가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로 2.20일 최종 판정 보고 하였습니다.

49. 위 최종 음성 판정은 어떤 검사에 근거하였나요.

- 48번과 관련된 검사는 돼지콜레라 진단 체계에 따른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진단체계 : 역학조사보고서 151page 참조)

50. 갑 2호증 198면,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 농림부고시 2003-44 제9조 2항 별표 4에 의하면 사육규모 300~700두 농장의 경우 샘플 채취 두수는 30두 ~40두 정도인가요.

- 네 맞습니다. 이 두수는 혈청학적 예찰 검사에 필요한 기본 두수이며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1. 그런데 위 이○○ 농장의 경우 오직 9두의 샘플 검사를 한 후에 음성판정을 확정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 왜 그랬나요.
- 혈액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환돈의 병변조직 가검물이라면 위의 기준두수에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가장 의심스러운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52. 채혈 검사의 오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모든 검사방법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법을 적용하여 최종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53. 이 사건 발생후 피고의 거래처로서 3월 20일에 양성 판정을 받은 이성근 농장은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 소재하여 위 이○○ 농장과 같은 면에 위치한 곳인가요.
- 같은면에 위치한 것은 맞습니다.
54. 그러면 사실은 2003년 2월에 문제가 된 이○○ 농장이나 그 주변에 돼지콜레라가 잠복되어 있다가 위 이○○ 농장으로 전염이 되어 발병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나요.
- 이○○ 농장이 음성이었는데 전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 또한, 이○○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이용배 농장과는 아무런 역학적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술서 5. 관련)

55. 방역기관 중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에서 검사한 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가요.
- 검사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검사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단 시료채취가 어떻게 이루어 졌나(장소,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03.3.18일 제1농장 42두 돼지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돼지콜레라 항원은 음성이었으나, 17두는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제1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서부지소에서는 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음성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S 제1농장은 사육체계 및 농장간 돼지 이동사항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돈사별로 고르게 채취하되 검사두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검역원에서 수행한 동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을 제266호증의 8 기사 제시)

56. 돼지콜레라 사건이 한창이던 2003년 4월 2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의 기사(을 26의 8)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못믿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2003년 2월의 아산 이○○ 농장 및 3월 23일 무렵의 일부 종돈장이나 AI센타의 경우 1차 양성 판정이 있었음에도 살처분을 하지 않고 2차 검사를 하여 음성으로 판정하고, 피고 거래처와 같은 대다수 농장의 경우 1차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을 하는 등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처리를 하게 된 것인가요.

- 이○○ 농장은 1차 검사에서 의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경우이고, 피고농장은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된 확실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57. 특히 2003년 3월 25일 전남 장수의 종돈장에서 1차 양성 판정 이후 다시 2차 검사를 하여 음성 판정을 내린 것은 피고 거래처 농장의 경우 1차 채혈검사에서 단 한마리만 양성이 나와도 바로 매몰 조치시킨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매우 커다란 의문점

을 갖게 됩니다. 이미 3월24일 S 축산을 전파원인이라 단정하여 언론보도 및 형사고발까지 한 후이고 또한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던 상황에서, 특히 장수의 종돈장이 피고의 종돈공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국내에서 제일 큰 축산계열그룹의 회사라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돼지콜레라에 대한 검사는 정해진 검사방법에 의한 것일 뿐 어떠한 농장의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습니다.
- 전북 장수의 종돈장의 경우 전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의사돼지콜레라로 보고되었으며 검역원의 확인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진술서 6. 7. 관련)

58. 항체 고역가가 야외 감염에 의하여 나타났다면 여기서 말한 1차와 2차 검사에서 고역가 양성율이 39%에서 18.9%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항원양성은 2%에서 8.8%로 급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 간단합니다.

역학조사보고서 88페이지에 <표 22>와 같이 피고농장의 항원과 고역가 항체 양성율이 돈사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돈사별 일정두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1차 검사와 전두수 채혈 검사결과는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차 검사에서 전 두수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59. 본건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 S 축산의 돼지콜레라 감염시기는 2002년 12월에서 2003년 1월 경이며 이로 인해 종돈 분양을 통한 전국적인 감염을 유포하였다고 합니다. 돼지콜레라의 전파력을 감안하면 피고의 제1농장은 이미 2월경이면 돼지콜레라가 만연되었을 것이며 또한 제1농장에 있는 90여두 인공수정용 웅돈들도 많은 부분 감염 되었을 것입니다. 피고 농장에서 2003년 1월 내지 3월18일 기간

중 사용된 정액이 약 2600여두분인데 이렇게 많은 정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액을 채취한 웅돈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정액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 감염이 되었다하더라도 발병 초기 일정기간에만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염된 정액을 모돈에 수정한 경우라도 극히 일부만이 감염이 되므로 반드시 정액을 공급한 농장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염된 웅돈의 정액이 항상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03.3.23일 S 제1농장 웅돈 전두수(83두) 검사결과 단 3두에서만 항원양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감염웅돈의 정액을 통하여 다른 농장에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고 판단됩니다.

60. 특히 최초 발병신고를 한 익산 송영민, 함안 김외석 농장의 경우 증상발현이 선행된 후 검사결과 돼지콜레라 양성이 확인된 것에 비하여 피고 농장의 경우 검역원 기타 방역당국자들도 감염 증세를 확인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임상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혈액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 피고의 제1농장이 오래 전에 먼저 감염되어 외부로 전염을 시킨 것이 아니라 3월 초순경에 거래농장으로부터 역으로 감염되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 역으로는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농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므로 뚜렷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송영민, 김외석 농장과 같이 피고 거래농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야외 바이러스 감염시 임상증상이 바로 발현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피고농장과 송영민, 김외석농장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시기를 분석한 결과 피고농장은 적어도 1월 초순이전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송영민, 김외석 농장은 2월1일 이후 피고의 돼지

분양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시기상으로 역감염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술서 8. 관련)

61. 3월 22일부터 시행된 피고 제1농장의 921두에 대한 전두수 채혈검사 결과가 검역원에 보고된 것은 언제인가요 3월 23일 이후이지요.
 - S 제1농장 전두수(921두) 채혈검사는 3.23일 검역원 자체적으로 수행된 것이며 검사결과는 3월 27일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62. 그에 비하여 방역당국에서는 피고가 3월 19일 제출한 거래처 리스트를 토대로 관련농장에 대한 1차 채혈검사를 3월 23일 이전에 모두 시행하였나요.
 - 농림부에서는 3월20일 관련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후 보고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63. 따라서 피고 1농장 전두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역학조사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거래 농장들 전체에 대하여 선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에 피고 1농장에 대한 전두수 검사를 실시한 것이지요.
 - 피고 거래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는 피고농장의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돼지콜레라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취해진 당연한 법적 긴급방역조치로 수행된 것입니다.
 - 그리고, 전두수 검사는 피고농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경로와 시기,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진술서 9. 관련)

64. 최초 발병신고를 한 송영민, 김외석의 두개 농장 외에 피고 거래 농

장 중에 채혈 검사 전에 돼지콜레라 증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였나요.

- 송영민, 김외석 농장이외에도 경북 상주의 박경화 농장에서도 축주의 신고에 의해 돼지콜레라가 확인되었습니다.

65. 사실은 증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확인되어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제 채혈검사를 하여 그 결과 일부 농장에서 증상유무와 무관하게 돼지콜레라 양성 판정 소견을 얻은 것이지요.

- 아닙니다. 송영민, 김외석, 박경화 3개 농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되었고 공통적으로 피고농장의 돼지분양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농장에 대한 일제검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고 이전에 발생농장을 사전 검색함으로써 돼지콜레라가 더 이상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66. 특히 피고 거래 농장 중에 일부 농장의 경우에는 1차로 시행된 일제 채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에 시행된 2차나 3차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나요.

- 피고 거래농장에대한 일제검사는 농림부에서 3.20일 지시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67. 위와 같이 피고 거래 농장들은 채혈검사 양성소견이 확인되면 추가 재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전두수 매몰 처분을 하였나요.

- 돼지콜레라 항원양성으로 확인되면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68.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이전에는 채혈검사 결과 양성소견이 없었다가 예방접종 후에 실시된 채혈검사서 양성이 확인된 것은 예방접종 후에 새로 감염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양성인 확인된 사례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새끼돼지 구입과 예방접종 소홀 및 무분별하게 증개상을 통한 돼지 입식과정을 통하여 농장에 유입됨으로써 발생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역학조사보고서 136페이지).
- 그러나, 피고농장과 관련한 1차 일제검사에는 이런 농장이 없습니다.

(진술서 10. 관련, 갑2호증 역학조사보고서 91면 제시)

69. 위에서 피고 관련 입식돈에서만 양성인 나온 곳이 20개 농장이라고 하였으나 위 20개 중에는 동거돈을 검사하지 않은 2개 농장이 포함되어 있나요.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S 분양 발생 44개농장 정밀검사 결과 입식돈의 검사가 가능한 39개 농장 중 입식돈 양성, 동거돈 음성이 18개 농장이고 입식돈 양성 동거돈 검사를 못한 농장이 2개 농장입니다.

70. 특이하게 입식돈이 음성, 동거돈이 양성인 경우도 7개 농장이나 있었나요.

- 네 있었습니다.

71. 피고 농장에서 공급받은 입식돈은 음성임에도 그외의 나머지 돼지들에서 양성인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그 농장의 감염은 피고의 종돈공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근거가 되나요.

- 돼지콜레라의 농장간 전파는 감염된 돼지의 이동이외에도 발생 농장을 출입한 사람, 차량, 기구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도 전파 됩니다. 상기 7개 농장의 경우는 상기 7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돼지콜레라가 유입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 농장의 돼지 입식과정을 통하여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술서 11. 관련)

72. 본건 역학조사는 검역원에서 발간한 역학조사 지침에서 소개한 역학조사 방법 중 어떤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분석된 것인가요 예를 들어 환례-대조군 연구인가요 아니면 단면연구인가요.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는 질병의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밝히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절차(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로서 긴급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환례-대조군 연구나 단면연구 등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환례-대조군 연구나 단면연구는 긴급 역학조사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행하는 것입니다.

73. 본건 역학조사 과정이나 그 결과 분석과정에서 편의(비뚤림, bias)나 교란변수(confounding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 본건 역학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S 축산에서 2003.2.1일 이후 후보돈을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일제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내에 위치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및 예찰을 실시하였을 뿐아니라 전국적인 가축방역사업에 의해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뚤림이나 교란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진술서 12. 13. 관련)

74. 유전자 염기서열에 관한 정보가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분리주 간에 유전적 변이가 있거나 농장간 발생 시기의 차이 또는 감염축 비율의 차이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돼지콜레라의 농장간 전파경로는 발생농장과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자료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것이며, 유전자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는 것은 농장간 전파된 바이러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5. 본건 역학조사의 경우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었나요.

(아니라면)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염경로를 알 수는 없는 것인가요.

- 74번 답변 참조

76. 피고 S 축산이 나머지 감염 확인 농장들에 비하여 선행하여 감염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요.

- 60번 답변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시기 분석 결과 참고
- S 축산(상주축산 분양 포함)의 돼지를 구입한 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44개 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32개 농장에서 S 축산 분양 돼지와 동거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18개 농장은 S 에서 분양된 돼지에서만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S 축산의 분양돼지가 돼지콜레라에 오염된 채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농가는 약 17,000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유독 피고로부터 분양받거나 관련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당시 전국 1만7천 농가 중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된 농장 대부분은 S 축산 및 관련 분양농장들이었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S 축산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돼지콜레라 발생은 S 축산 분양 돼지

로 인한 것이었음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77.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지 않으면 감염원이 다르거나 감염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74번 답 참조)

78. 그렇다면 강화-김포에서 2002년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 염기서열이 다른 농장이 다수인데 이 경우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감염된 것을 의미하는가요.

○ 김포, 강화의 경우에는 농장간 분리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예도 있으나 역학조사결과 발생농장간 전파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학조사보고서 60페이지 참조>

○ 2002년 강화, 김포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결과를 분석하여 각 농장의 감염시기를 추정할 때, 10월 8일 노광우 농장의 최초 발생보고 이전인 9월 하순경에 3~4개 농장(1~4차 발생농장)이 이미 오염되어 있었으며, 감염추정일과 타 발생농장과의 역학 관련사항으로 고려할 때 노광우 농가와 한명섭 농가가 원발농장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노광우 농가와 한명섭 농가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발농장에서 인근농가로의 전파는 오염된 사람·차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79. 경기도 포천 김철농장의 경우 피고의 종돈공급과 무관한데 2003.4.10경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는데 그 감염경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본건 역학조사보고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왜 없나요.

○ 경기도 포천 소재 김철, 김삼호 농장에서도 피고농장의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돼지 이동상황, 출입차량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동제한, 소독 등의 방역조치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한 역학조사결과에서 S 축산과의 연관성은 물론 발생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83page에 기타(원인미상)로 분류하였습니다.

80. 피고 농장이 다른 농장들에 비하여 증세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3차에 걸친 전두수 검사에서도 비교적 낮은 감염률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가 전북 익산이나 경남 함안 등 이미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S 축산으로 사후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나
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역학조사보고서에 분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네 고려해 보았습니다.
- 2003년 발생당시 최초 발생한 전북 익산 송영민 농가와 이어서 발생한 경남 함안 김외석 농장, 경북 상주 박경화 농장 및 충남 당진 김진원 농장은 공통적으로 S 축산으로부터 2.1일 이후 분양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60번 답변과 같이 역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제시)

81. 피고 농장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은 강화 천상렬, 종석출 농장과 100% 일치하며 또한 2002년 11월 27일 전북 완주 농장으로 자돈을 무단 이동시킨 강화의 이환무 농장도 천상렬, 종석출 농장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결국 강화에서 완주, 익산, 아산 및 기타 인접 지역, 함안 등의 순서나 기타 그에 유사한 경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바이러스가 최종단계에서 유입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가요.
- 천상렬, 종석출 농장은 2002년 발생되어 종식되었고, 이환무 농장은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이며, 다른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 농장이 감염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당시 전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던 지역에 피고의 주장대로 광범위하게 돼지콜레라가 퍼져 있었다면 전국 여러 농장에서 발생신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신고는 전북 익산 송영민, 경남 함안 김외석, 경북 상주 박경화는 피고농장의 돼지가 분양된 농장입니다.

82. 피고의 위탁농장은 수차례에 걸친 채혈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는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피고의 위탁농장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가요.

<역학조사보고서 99페이지 참조>

- 20개 위탁농장 중에서 당시 돼지를 사육중인 14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은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S 축산의 진술과는 달리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미 사육 6개 농장은 검사 당시 돼지가 없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양관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급사, 후구마비 등 돼지콜레라 유사 증상이 관찰 되었으며 폐사율 증가와 사료 섭취량 저하 등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의 방역관리업무 관련)

(진술서 15. 16 관련)

83. 요즘과 같은 혹한의 날씨 속에 돼지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과밀한 공간에 다수의 돼지가 밀집하여 수용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PMWS 증상이 유발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돼지 사양 및 위생관리가 열악한 농장일수록 폐사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84. 피고 농장에서 2002년 말 무렵에 있었던 일부 돼지들의 폐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피고 농장의 관리자들이나 이를 지도감독해 준 서울대 수의과대학 채○○ 교수의 의견인데, 검역원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나요.
-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변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상황에서 급사, 후구마비 등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면 피고는 즉각 방역기관에 신고했어야 합니다.(역학조사보고서 101페이지 참조) 당시 폐사 돼지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진단된 살모넬라감염증, PMWS 등의 질병은 돼지콜레라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하여야 되는 질병들로 여러 논문 등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85. 일반적으로 돼지농장에 폐사가 나면 모두 수의사가 검안이나 진단을 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가요.
-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거하여 수의사의 검안을 의뢰할 수도 있고 방역당국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농장은 대규모 종돈장이고 당시 돼지콜레라 발생상황이었으며 방역당국에서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계속 홍보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당연히 즉시 신고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6. 검역원에서 피고 농장의 감염시기로 추정하는 2002년 12월 내지 2003년 1월 말까지 피고 농장에서는 전담 수의사가 상근하고 있었고, 피고 각 농장의 농장장은 단순 노무 직원이 아니라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축산전문가입니다. 증인은 피고 농장에서 2003년 2월 이전 여러달 전에 폐사처리에 관

하여 수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수의사 구○○ 및 피고 농장의 근무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형사사건 당시 진술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위 구○○은 “2002년도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제2,3농장 등에서 집중 육성된 돼지가 이동 없이 사육되다가 제1농장으로 옮긴 1월부터는 상당히 많은 돼지가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2농장의 경우는 150두 가량의 돼지가 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사된 돼지의 원인 등을 규명한 장부 등은 보관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작성하는 것은 없고 회사 내 각 농장에서 관리인들이 폐사 원인을 기재 작성한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폐사된 돼지의 관리, 원인 분석 등이 수의사 등의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 노무직에 불과한 피고 농장의 관리자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돈장의 방역위생관리가 지극히 부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제2농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는 “병든 돼지를 발견한 경우 박○○ 관리이사에게 병태를 보고하면 관리이사가 병명을 판단하여 약물 투여를 지시하면 이에 따랐고, 폐사된 돼지가 발생하면 관리이사에게 보고한 후 사체통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제3농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이○○는 “수의사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경험상 알고 있는 병명일 경우에는 폐사보고서 작성 (임의) 처리하고, 의심이 되는 병으로 폐사된 것은 가검물을 채취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 정밀검사를 받아 처리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되는 병’이라 함은, ‘가축전염성 감염 여부가 의심된다’라는 의미임은 할말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위반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고농장의 다른 관계자들은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하나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농장에서 폐사된 돼지를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돼지 사체를 위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비록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종돈장으로써 피고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안일하기 그지없는 인식과 대응 수준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진술서 17. 18. 관련)

87. 서울대 수의대 채○○교수가 보수를 받고 컨설팅을 했다고 해서 본 사건이 발생한 2003년 3월 이전에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겨둔 업무에 관하여 객관적이 아니거나 공정하지 않은 입장을 취할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가요.

-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 교수에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여 S 축산의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학이나 민간 실험실에서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부검, 임상소견 등이 있었으면 방역당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그래서 당국은 그렇게 하라고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88. 돼지콜레라는 비교적 연령대가 고르게 발생하고 폐사가 급속하게 발생하여 확산되며, 심한 떨림, 빙글빙글 도는 증세나 후구마비 등의 신경증상 등이 잘 나타나는 반면 PMWS는 40-100일령 등 특정 연령대의 돼지에서 잘 발생하며 폐사가 서서히 나타나고 위에서 언급한 신경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가요.

-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서 돼지콜레라와 임상증상이 유사하여 감별해야 하는 질병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피고농장의 경우에는 특히 농장사육일지에 급사(폐사), 후구마비 등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89. 증인이나 검역원 기타 방역당국에서 피고 농장에서 2003년 3월 18일 이전에 돼지콜레라의 증상이 있었다는 근거로 확인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 피고농장의 정밀검사결과와 피고 돼지분양 발생농장들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02년 12월중순~'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44번 답변 참조)

90. 피고 농장의 사료섭취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검역원에서 제시한 기대섭취율에 관하여 국내 실정에 근거한 자료가 있나요. 검역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기대섭취율을 산정하였나요.

- 기 발표되어 있는 돼지 일령별 사료요구율에 사육두수를 곱하여 기대섭취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돼지 일령별 사료요구율은 여러 양돈 잡지 통계자료와 여러 양돈전문수의사, 사료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산정하였습니다.

91. 이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고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은 농장 외의 비슷한 조건의 다른 농장에 대하여도 동등한 조건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비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 요청 받은 바 없습니다.
- 요청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에서는 연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03년도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는 25,363농가, 항원검사는 5,836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92. 위 요청은 수용되었나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91번 답변 참조

(을 제26호증의 아산 돼지콜레라 기사 제시)

93. 위 기사에 의하면 2003년 2월 19일 당시 충남 아산에서 의사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되어 증인이 “돼지콜레라는 보통 잠복 기간이 6~7일로 이모농장에서는 처음 증세가 나타난 지 7일이 지났으나 다른 돼지에서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네요.

- 있습니다.

94. 아산의 위 농장에서는 1차 증상신고가 있었음에도 그 이후 7일이 지나도록 추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돼지콜레라 판정을 내리지 않은 반면에 피고 농장의 경우 증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 과거의 특정시기에 대규모의 돼지콜레라 감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네요.

- 아산 위 농장은 1차신고 및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판정된 반면, 피고 농장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입니다.
- 44번, 89번 답변과 같이 피고 농장은 과거 특정 시기에 돼지콜레라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서 19. 관련)

95. 증인이 진술서 19번에서 제시한 예는 PMWS의 의심이 되어 의뢰한 결과 돼지콜레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콜레라가 의심이 되어 신고 했는데 진단 결과는 PMWS로 나왔다는 것인가요.

- 맞습니다.

96. 그러면 반대의 경우 즉 수의사나 축산전문가가 PMWS라고 진단하면서 확인을 하기 위하여 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라고 나온 경우도 있었나요.

- 국내에도 그러한 예가 있으며 외국(영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농장과 같이 수의사가 PMWS라고 진단을 한 사안에 대하여 돼지콜레라를 추정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 피고농장은 병성감정결과 PMWS 등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나 당시 위탁농장에서 후구마비, 급사 등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농장의 인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에서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에 대한 신고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농장에서는 방역기관에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 PMWS 질병은 돼지콜레라와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통해 감별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교과서 및 여러 논문 등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같이 대규모 종돈장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술서 21.관련)

98. 피고 농장에서 이동제한 기간 내에 1농장으로 돼지가 이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피고농장의 위탁농장 사육일보를 확인한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위탁농장(민○○, 이○○)에서 이동제한 기간중에 피고 제1농장으로 돼지

가 이동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역학조사보고서 97-98면 참조)

(을제10호 증의 130 김포시 돼지수매 현황표 제시)

99. 피고의 위탁농장에서 돼지를 이동하기 전에 2003년 12월 5일부터 경기도 서부위생시험소에서 이동해제를 위한 혈액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음성으로 판정 받아 김포시청 지시하에 이동한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피고가 제시한 돼지수매현황표는 위탁농장에서 도축장 출하를 목적으로 검사 이동한 것인 반면에 98번에서 지적한 돼지 이동은 돼지의 이동이 제한된 이동제한 기간중 위탁농장에서 제1농장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경계지역을 벗어나 이동한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100. 분과위원장인 증인 조차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피고측 관계자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 진행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98, 99번 답변과 같이 피고의 위법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기에 피고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101. 또한 2003년 3월 18일 익산의 송영민 농장에서 첫 발병신고가 접수된 직후에 방역당국에서 위 농장에 종돈을 공급한 피고 농장을 방문하여 종돈 분양 대기사인 제1농장을 관찰하였으나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찾을 수 없었고, 4여두에 대한 채혈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난 사실이 있었나요.

- 경기도 서부지소에서 42두를 채혈하여(3.18일) 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 항원은 음성이었으나, 17두는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역원에서 추가채혈(3.20일)을 실시하였고 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102. 위 내용은 왜 본건역학조사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나요.

- 추가검사로 양성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 내용이 없더라도 발생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 서부지소와 검역원의 채혈시기가 2일 차이 뿐이므로 피고농장에 대한 감염전파 등을 해석하는데 피고농장의 역학상황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고가 감염을 전파하였다는 추정과 상반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한 것인가요.

-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서부지소에서 검사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역원에서 추가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된바 있어 발생농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22. 이하 관련)

103. 최근 국내에서 두 번 발생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1차 돼지콜레라 등에서 소위 원발농장이 밝혀졌다고 하여 본건 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청구한 사실이 있나요.

- 본건 외에는 책임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유지했다면 일본으로 연간 약4억불의 돼지고기 수출로 인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농장에서 전국에 분양된 오염된 돼지에 의해 청정화가 무산되어 돼지고기 수출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양돈농가의 원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본건 전에는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한 대처는 전염병이 근절되지도 않고 막

대한 국고 손실이 반복되며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차단하고 전체 축산업계 및 국익 증대의 차원에서 이번 민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104.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살처분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돈 공급처 등 감염원으로 규명된 자에 대하여 민사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 외국의 사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105. 본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기 전에 방역당국에서는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있는가요.

○ 있습니다.

106. 왜 위와 같이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였나요.

○ 돼지콜레라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107. 2002년 김포강화나 본건의 돼지콜레라 발병은 위 예방접종 중단 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으로 밝혀졌나요.

○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2건)과 동년 10-12월 인천,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11건)는 유전자 분석결과 기존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roup 3)와는 다른 유전자형(Group 2)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8. 위 유전자형은 외국에서 전파되어온 새로운 유형으로 판단되었나요

○ 그렇습니다.

109. 이 사건 발생 직후 2003년 3월 19일 경부터는 감염이 확인된 농장

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가서는 전국 각 농장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다하였나요.

- 피고농장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예방접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10. 통상적으로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돼지콜레라에 잘 걸리지 않게 되나요.

- 그렇습니다

111. 사실 본 사건은 방역당국이 돼지고기 수출을 위하여 조급하게 예방접종을 중단한 것이 감염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돼지고기 수출을 위하여는 돼지콜레라병의 청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그간의 노력으로 청정화가 된 것을 확신하고 최종 위험평가지험과 공청회를 통한 후 예방접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돼지콜레라가 완전히 청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정화 선언을 함으로서 재발생이 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청정화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group 3)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정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group 2)입니다.
- 이는 청정화가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며 피고의 주장대로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조급하게 예방접종을 중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중단하게 된 것은 첫째 면역항체가가 97%이상 유지되어 예방접종을 100% 실시한 것이 입증되었고, 둘째 2년이상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 OIE 청정국 인증 기준에 부합되었으며, 셋째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01.6-10월)을 실시한 결과 이상

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병원성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넷째 지역적 예방접종 중단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이 없었고 다섯째 양돈협회에서 예방접종 전면 중단을 농림부에 건의('01.11.2) 하였기 때문입니다.

112. 검역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역정책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였나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 위 111번에서 언급했듯이 돼지콜레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학계, 산업체,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돈협회건의를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을 제33호증 축산신문 홍문표 수의가 기고문 제시).

113. 증인은 2003년 5월 14일자 축산신문에 기고된 홍문표 수의사가 “수출도착증이 부른 돼지콜레라 재앙”이라는 글을 읽어 보았나요.

- 읽어 보았습니다.

114. 위 글에 의하면 2001.9.20 검역원에서 이루어진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일 수출을 하루라도 빨리 재개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급하게 중단하는 것은 재발 위험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히 불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고 공청회 결론은 “접종중단은 공식적으로 공포하되 위험지역과 원하는 농가는 접종을 허용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일본과의 수출 재개 협상에서 일본측의 강경자세에 밀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전면 중단정책을 결정하였고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백신 접종 중단 한지 일년도 못되고 2002년도 4월에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고 그 후 2003년도에 전국적인 확산으로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근원적으로는 이 사건 역시 정부 방역정책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 홍문표 수의사도 돼지콜레라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정화 선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가 있었습시다만 정부는 대부분의 양돈농가 및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청정화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성공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재유입을 사전에 우려하여 청정화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지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조속히 청정화를 하라고 강경하게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아니라도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115. 국가간 전염병 전파는 국가의 국경 검역을 통해서만 방지할 수 있을 뿐 개별 농장에서 막기가 어려운가요.

- 해외여행객 및 수출입 물량 증가로 국가에서 국경검역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100% 해외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하되 일부 국내에 유입되었을 병원체를 농장내 가축에게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소독 등 국내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농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관련법령 및 규정과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경검역 강화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차량 및 소독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찰활동과 농가 교육,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농가에서는 자기 재산은 본인밖에 지킬 사람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 당국에서 홍보한 이동통제 및 소독방법 등에 따라 방역을 한다면 청정농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조기 신고로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농장의 경우에는 피고농장의 오염된 돼지를 전국에 분양하여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확산될 때까지 신고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116. 본건의 돼지콜레라 유형인 type 2의 경우 종래의 국내 바이러스 유형이 아니라 동북아 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나요.
- 유전자 분석결과 2002년 강화, 김포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Group2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2003년 발생한 바이러스도 Group2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로 해외에서 새롭게 유입된 것입니다.
117. 정부는 종돈을 통하여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종돈장의 관리를 위하여 본건 발생 전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는가요.
- 종돈장은 방역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종돈장방역관리 요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 방역기관을 통해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방역이라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부분과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과의 총합적인 방역활동인 것입니다. 특히 종돈장인 경우는 돼지를 전국에 공급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118. 적어도 2002년 김포 강화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있었다면 그 지역내의 종돈장을 관리하기 위한 더 신중한 대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국가가 직접 개개의 농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는 예찰활동, 홍보, 교육, 소독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119. 그런데 방역당국은 2003년 1월 6일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재발생을 막기 위하여 강화-김포지역에 유일한 종돈장인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관찰지도와 모니터링을 하였나요.

- 피고 농장을 포함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하루에 2번 이상은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증상 발견시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토록 지도,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 (농림부 방역 51580-1773:2002.12.30일자 공문 참조)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 역학관련 농장내 자돈폐사 상황 등,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병성감정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화예찰도 실시하였습니다.
- 피고농장과 같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종돈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며 자율방역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20. 종돈이나 정액이 질병 전파의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종돈장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도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침을 주고 종돈장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야 하지 않나요.

- 방역당국은 종돈장이 방역상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발생전부터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을 제정·운영하고 돼지콜레라 등 주요질병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 피고농장과 같이 종돈장의 경우 외부인의 입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이 발현되는 돼지가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확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IV. 관련 회의

1. 농림부 회의

가. 개요

- 회의 목적 : S 축산 민사소송 관련 공증인의 재판 증언에 앞서 주요 쟁점 사항 점검 및 인증서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
- 일시 : 2005. 11.2일(14:00~16:00)
- 장소 : 농림부 가축방역과
- 참석자 : 안수환 박사, 정성재 변호사, 농림부(김태용 사무관, 장순석), 검역원(박최규 연구관, 이병용) 총 6명

나. 주요 회의 내용

1) 주요쟁점(S 축산측 주장)

- 2002/2003년 돼지콜레라 전국 발생·전파가 S 축산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과학적인 증명자료 미흡
- 검역원의 역학조사 방법이 객관적이고 타당하지 않음
- 백신주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돼지콜레라 항체가 검출될 수 있음
- S 축산 병성감정결과, 돼지콜레라가 아닌 살모넬라, PMWS, PDNS 로 진단되었음
- S 제1농장에 폐사가 많았던 이유는 밀사와 흑한에 의한 것임

2) 추가 필요한 보완자료(관련과 협조)

- S 축산 제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서 작성(역학조사과 주관)
 - 뉴질랜드 모리스교수의 한국의 역학조사 평가자료에 대한 반박, 설명 자료 작성(역학조사과 주관)
 - S 축산 후보돈 분양 81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조사) 결과 제시 (바이러스과 협조)

-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 신고, 감별진단 등 돼지콜레라 관련 홍보 및 공문발송 자료 정리(방역과 협조)

2. 소송관련 T/F팀 구성·운영

가. 개요

- 국내의 돼지콜레라 청정유지 상황에서 2003년 3월에서 5월에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기도 김포소재 S 축산에 대하여 농림부에서는 '05년 3월10일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차례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 과정을 진행중에 있었음
- 동 소송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승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피고측의 120문항의 최종 질의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테스트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였음

나. 활동내역

- 1) 운영기간 : 2005년 12월 19일~21일(3일간)
- 2) 사무실 설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회의실
- 3) 구성인원 : 농림부 2명, 검역원 10명

다. 주요 쟁점 사항

- 2003년 돼지콜레라 전국 발생 전파가 S 축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과학적인 증명
- 2002-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에 대한 뉴질랜드 수의역학분야 모리스 교수의 평가와 역학조사 수행의 타당성 문제 등
- 2003년 당시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중 S 축산과 관련이 없는 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진위여부 등

**라. 원고측 질의 120문항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05.12.22, 서울중앙
지방법원)**

-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원고측에서 질의한 최종 120문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V. 관련자료

1. 뉴질랜드 모리스 교수 평가자료

가. 검토배경

- S 축산의 법정 제출자료 중에서 뉴질랜드 모리스 교수의 한국의 역학 조사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 동 자료를 검토 후 당사자(모리스 교수)에게 평가내용의 부당함을 항의할 필요가 있으며 작성된 검토자료는 향후 법정 참고자료로 활용

나. 검토 결과

○ 모리스교수 평가내용의 주요 사항

- 검역원 작성 보고서의 객관성 결여 및 비과학성(통계처리 등)
- 역학조사 및 분석방법의 부적절성 및 이에 따른 결론의 비타당성 등

○ 모리스교수 평가내용의 주요 문제점

- 평가자료의 부적절성: 모리스 교수가 평가한 자료는 공식적인 최종 역학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역학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이므로 이를 한국의 역학조사 전반을 평가하는데 이용한 것은 부적절 함
- 역학조사, 분석의 비과학성: 역학조사지침에 의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음 (우리원 역학조사지침은 모리스 교수의 저서를 대폭 반영한 것임)
- 과학잡지에서 거부당할 것임: 국내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내용은 SCI 저널에 게재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음

다. 추진사항

○ 모리스 교수 평가내용의 주요 문제점 등을 요약 정리하여 e-mail로 송부하였음

- 동 자료 작성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자료 작성배경 등 답변 요구
- 평가 대상자료 및 평가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문의

【 참고자료 】

Roger Morris 교수의 역학조사 평가내용에 대한 검토자료

I. Morris 교수의 주요 평가내용

- 검역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객관성이 결여됨
- 자료와 자료를 수록한 방법이 부적절하며, 결론은 타당성이 없음
- 실험실 정보에 대한 해석이 과학적으로 적절하지 못함
- 농림부가 채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방역정책은 질병의 발생을 관리하는데 적절하지 못함

II. Morris 교수의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

< Morris 교수에게 제출된 평가대상 자료의 부적절함 >

- S 축산의 요청에 의하여 뉴질랜드 Massey 대학교의 Morris 교수가 작성한 평가서의 평가대상으로 사용되었던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결과 보고”는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보고서의 최종본이 아님.
- 이는 2003년 9월에 개최되었던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의 회의 자료일 뿐이며 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역학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그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정리되었음.
- 따라서 Morris 교수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함.

☞ 평가내용 1. 이 보고서는 S 축산이 질병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만을 특별하게 요약하고 있음.

- ▶ 검역원 : S 축산 및 분양농장의 조사경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음 (S 축산에서 모리스 교수에게 송부한 2003년 9월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결과 보고 p3, 2항)
- 발생농장에 병원체를 유입시키는 원인(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추적조사(tracing)을 실시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기본임

- 돼지 콜레라 항원 양성이 확인된 1개 농장을 비롯하여 같은날 연달아서 의심축을 신고한 3개 농장들이 모두 한 종돈장으로부터 동일한 시기에 후보돈을 입식하였다면 해당 종돈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함
-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지 않은 발생농장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음 (p10)

☞ **평가내용 2. 돼지콜레라 확산의 위험요인들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요인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하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 **검역원 :** 역학조사시 모리스 교수가 언급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출처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타당성이 증명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함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pp191-193, 2003.12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 발간등록번호 11-1380644-000040-01)

☞ **평가내용 3. 역학조사 전반적으로 접근 방법에 뚜렷한 체계가 없음**

▶ **검역원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2003. 11월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발간등록번호 11-1380644-000037-01)을 발간하여 역학조사 수행시 교과서로 삼고 있음. 이 책은 역학조사의 이론적 배경 및 역학조사 실무, 역학조사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문위원인 Morris교수의 저서 (Disease Outbreak! What Can You Do? Epidemiological Skills in Animal Health pp321-327, Post Grad Committee Vet Sci, 1994)의 진행체계를 따랐음.

☞ **평가내용 4. 발생농장 및 비발생농장을 포함하는 위험집단에 대한 정보**

가 없음

▶ 검역원 : 돼지콜레라 발생시 위험집단

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일정한 거리를 포함하는 방역대에 포함되는 양돈

-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를 위험지역, 3-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농가에 대한 사육정보를 관리하며, 임상 및 혈청예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서 공문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함.

- 예찰결과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역학조사보고서, 특히 최종본도 아닌 중간회의 자료에 이 명단을 첨부할 필요성이 전혀 없음.

② 사람, 차량, 돼지 이동 등에 의해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

- 이는 S 축산의 위탁농장이거나 S 축산으로부터 후보돈을 입식한 농장들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pp9-12 및 별첨2-5(pp23-29)에 있음.

☞ 평가내용 5. 역학조사 보고서에 통계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

▶ 검역원 :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 위원 6인은 바이러스학을 전공한 위원장과 전염병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인, 양돈협회 회장, 양돈 연구소 소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에게 역학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자문을 얻고자 함은 역학조사의 방향과 결과의 해석이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관점에서 어긋나는지를 검증받고자 한 것이지 전문화된 역학적 및 통계적 기법을 검증받고자 함이 아님.

☞ 평가내용 6. 역학조사 보고서에 교란변수에 대한 보정이 없음

▶ 검역원 : 동물의 이동에 의한 전파의 증거를 찾고자 종돈장의 위탁농장 및 분양농장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시간” 및 “사육규모” 등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위탁농장 중 미사육 농장,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장, 사육규모, 사료의 실제 섭취량 등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교란변수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였음.

☞ **평가내용 7. 실험실 검사결과가 거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보고되어 있음**

▶ **검역원** : 실험실 결과는 수의사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 수의사 중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음. 모리스 교수가 이 자료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이는 그의 면역학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을 판단됨.

☞ **평가내용 8. 분자생물학적 결과는 단순히 한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농장에서 한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는 나타내지 않음. 바이러스 계통이 다르게 나타난 농장의 감염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바가 없음**

▶ **검역원** : Phylogenetic tree 분석에 의하면 S 축산(제1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한 익산, 함안, 당진, 김해, 경주, 성주, 상주 지역의 57개 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함. 이 사실은 '03.3.18-5.8일 사이에 발생한 65개 농장 중 S 축산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2개 농장을 제외한 모든 농장이 S 축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S 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 받은 44개 농장과 이들에게서 인근전파 또는 오염차량, 사람을 통한 전파로 발생한 18개 농장 개개의 역학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세세한 epidemic tree를 나타낼 필요가 없음. 어느 농장이 어느 농장을 감염시켰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p10과 같이 발생농장의 전파요인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낼 수 없음.

☞ **평가내용 9. 이 연구결과를 국제적인 과학잡지에 게재하려고 제출한다면 조사방법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반려될 것임**

▶ **검역원** :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및 역학적 분석 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의학 잡지인 Veterinary Record 2005년 157권 pp113-115
에 “Outbreaks of classical swine f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3”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음

2. '03년 돼지콜레라 발생 살처분 농가 「권리 양도 확인서」

- 피고농장으로부터 돼지를 분양받아 돼지콜레라가 확인된 농장(41농가)들을 대상으로 권리양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음
- 주요내용 :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돼지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았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S 축산에 대하여 본인이 갖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 제3장 최종 조정안 〉

여 백

제3장 최종 조정안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 건 2005가합2005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태욱, 정성재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축산
김포시 고촌면 태리 〇〇
대표이사 한〇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재판장 판사	강재철	기 일	: 2003. 1. 19. 10:30	
판사	이상원	장 소	: 민사법정 동관557	
판사	장수영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주사	차봉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태욱	출석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출석

재판장 판사

수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

결정 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중금 300,000,000원은 2006.2.28. 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2006.8.31.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 원 주 사 차 봉 구

재판장 판사 강 재 철

〈 제4장 평가 및 교훈 〉

여 백

제4장 평가 및 교훈

돼지콜레라는 1950년대부터 38선 이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방역당국과 양돈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의기를 투합하여 1996년 6월에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거국적인 단계별 근절대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질병은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2002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발생되지 않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국임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2년 4월에 강원도 철원군에서 그리고 동년 10월에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이 병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결과 발생원인은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유전형의 돼지콜레라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후 또 다시 피나는 근절대책을 수행하였으나, 발생이 종식되어 가는 시점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종돈장인 S 축산에서 종돈을 구입 또는 입식하는 농장 및 이들 농장과 관련되어 전국(제주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제외) 65개 농장으로 이 병이 전파되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돼지콜레라 백서, 2005년 발간).

이러한 어이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돈산업계와 정부의 꿈인 돼지콜레라 재청정화는 무산되었고 불안한 양돈농가들의 요구로 또다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음은 물론 백신접종 스트레스에 의한 자돈의 성장장애 및 각종 질병 피해의 가중 등 국내 양돈산업에 미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하겠다. 또한 이 시기에 긴급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약 96,000두의 돼지가 살처분 되었고 183억원의 살처분보상금 및 304억원의 방역비용 등 약 4,000억 원 이상의 농림부 방역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이후 의무적인 백신접종을 근간으로 하는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 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양돈농가의 불안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 종돈장의 주요 전염병 방역조치에 대한 방심과 과오가 우리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되새겨 보고 금후 국내 모든 축산업 분야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전절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얻은 소중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타 농장으로 종축 및 자축 등을 판매 또는 위탁 사육하는 종돈장 (종축 및 종계 농장)과 계열화 사업 주체 농장 등의 등록 의무화 및 방역관리 강화

- 축산 관련 생산물의 생산, 판매, 이동, 폐기 등의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 표준 방역관리지침 제정 및 실시대장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 방역관리 담당 전속 또는 위탁 수의사의 고용 의무화
- 방역관리 우수 농장의 포상,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②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종돈장(종축 및 종계 농장)과 계열화 사업 주체 농장주, 가축중개인,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에게 제조물책임법 또는 기타 관련법에 준하는 피해액을 구상(징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③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해당 농장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수의사 또는 병성감정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수의사법(윤리위원회) 등에 의한 처벌규정 강화

- 병성감정기관 등에 진단기술지도 강화 및 진단약품 제공 확대
- 우수 병성감정기관 등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④ 이동가축 방역관리요령 제정 및 관리체계 구축

- 이동가축의 검사결과, 예방접종, 건강상태 파악 및 기록
- 차량, 사람, 기자재, 청소도구 등의 소독관리 강화

- 입식 가축의 방역관리를 위한 격리사 또는 시설 등의 운영 유도 및 지원

㉔ 축산농가 및 종사자에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교육 및 홍보 강화

- 자율적인 차단방역의 생활화(차단방역요령 제정)
- 방역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 백

부 록

I.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요약) 253

II.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해외 발표 논문 264

여 백

I. 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요약)

1. 역학조사 방법

가. 역학조사 방법 및 원칙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인 역학조사 방향은 ① 발생농장에 병원체의 유입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매개체)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② 질병이 발생한 이후 발생농장에서 유래한 병원체에 오염된 매개체들에 의하여 다른 농장의 감수성 가축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조사·분석하여 질병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자료를 제공하는 2 단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후자의 경우 질병확산 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역학조사 내용을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적절한 긴급방역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발생농장의 축주와 종업원 등 1차 조사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본적인 역학사항을 파악한 다음, 환축의 임상증상 관찰내용과 농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3) 1차 조사되는 현지 내용 중 돼지 이동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이는 돼지콜레라의 유일한 숙주동물인 돼지의 구입과 이동이 가장 중요한 전파요인이 되기 때문이며, 이 이외에도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모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자료(사료, 동물약품, 인공수정, 기자제 등의 차량운행 일지, 배달일자, 판매대장) 등에 대해 반복하여 확인, 점검함으로써 역학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4) 이러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돼지콜레라의 전염위험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역학관련농장 및 인근농장에 대해서도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이 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병의 역학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타 농장 방문금지 및 소독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이들이 출입한 타 농장들에 대한 특별 임상관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소독 조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2003년 최초 돼지콜레라 발생, 신고경위

〈 참고자료 : 2002년 ~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개요〉

-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인천 서구(1건)와 강화군(5건), 경기 김포시(4건)와 이천시(1건)에서 총 11건의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2003년에는 3월18일 전북 익산 왕궁면 송영민 농장에서 최초 신고된 이후, 5월 8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 총 65개 농장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 송영민 농장(전북 익산 소재, 최초 신고) : '03.3.17일 17:30경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소에서 2002년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행한 『돼지콜레라 긴급 행동지침』의 별지1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접수서) 양식에 따라 전북 가축방역위생본부 방역사의 신고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된 가검물에 대해서 전북 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잠정 진단되어 그 다음날인 3.18일 05:30경에 전라북도 축산진흥원에서 검역원에 상황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역원에서 즉각 농림부에

돼지콜레라 의사환축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게 되었고, 농림부에서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2-23호; '02.5.11)”에 의거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긴급 방역조치를 시달하였습니다.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 3.18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 조사결과 '03.2.19일 발생농장으로 후보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S 축산 사육돼지에 대하여 농림부는 이동제한 조치 및 혈청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경기도에 지시하였습니다.

- 송영민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 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고시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돼지콜레라의 확산방지와 전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역학조사는 발병이 확인된 농장에서 추가로 타 농장으로 전파 가능한 경로뿐만 아니라 발병 농장이 이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되었는지 역추적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최초 신고된 송영민농장에 대해서 '03.3.18일 검역원 역학조사팀이 현지 발생농장에 내려가 농장현황 및 사육규모와 더불어 돼지콜레라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전파요인이 될 수 있는 돼지 이동상황(구입, 판매)을 중심으로 돼지와 접촉한 사람, 차량 및 물품의 이동상황 뿐만 아니라 정액 공급 내역, 약품의 구입, 사료의 구입, 수의사의 이동 경로, 출입차량의 이동 경로, 분뇨 처리 및 톱밥의 반입, 잔반 급여,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현황 등 다각적인 역학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학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2002년)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발생지역과의 역학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역학조사 내용 중 S 축산으로부터 '03년 2월19일 6개월령 돼지5두, 3월12일 6개월령 돼지 6두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S 축산에 대한 긴급방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나머지 매개체에 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검역원에서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발생농장에 돼지를 출하한 차량기사에 대한 차량 내·외부 소독, 사료를 공급한 사료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출입수의사, 정액을 배달한 사람, 임신진단자 등에 대한 15일간 타 농장 방문금지, 정액을 공급한 김제AI센터에 대해서는 정액을 공급한 기타 농장에 대하여도 추적조사 등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나. 김외석(경남 함안 소재) : '03.3.18일 17:40경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2002년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행한 『돼지 콜레라 긴급 행동지침』의 별지1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접수서) 양식에 따라 경남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신고로 접수가 이루어졌고, 경남 연구소에서는 신고농장에 현지 출장하여 임상관찰 및 부검소견 결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어 11두를 채혈하였고, 그 다음날인 3.19일 06:30분경에 검역원에 상황보고 및 확인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역원에서는 동 상황을 농림부에 보고하고 현지에 역학조사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위의 최초 신고된 송영민 농장과 같이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역학조사 원칙에 준수한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송영민 농장과 공통적으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S 축산으로부터 2.6일 6두, 2.18일 6두, 3.7일 4두 총 16두 후보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농림부에서 S 축산에서 최근 돼지를 분양한 농장에 대해 조속히 채혈 검사를 실시하라고 각 시·도에 방역조치를 시달하였습니다.

다. 김진원 농장(충남 당진 소재) : '03.3.19일 송영민 역학관련 농가로 통보를 받아 충남 축산위생연구소 통합지소의 공무원이 김진원농장에 현지 출장하여 임상관찰 및 돼지를 채혈하였고, 실험실 검사 결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어 검역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원농장도 위 역학조사 원칙에 따라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송영민, 김외석농장과 공통적으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S 축산으로부터 2.19일 15두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박경화 농장(경북 상주 소재) : '03.3.19일 축주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북 시험소에서 신고농장에 출장하여 임상관찰 및 부검소견 결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어 돼지35두를 채혈하였고 검역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화농장도 위 역학조사 원칙에 따라 모든 매개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송영민, 김외석농장과 공통적으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S 축산으로부터 2.18일 30두, 3.13일 11두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 4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존('02년) 발생농장과의 역학적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고, 공통적으로 경기 김포 소재 S 축산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나머지 매개체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방역당국에서는 당연히 S 축산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 위 4개농장 신고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초기에 발생농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경기도 김포 소재 S 축산의 돼지가 이동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검역원의 역학조사결과에서도 S 의 돼지가 이동되었음을 다시 확인, 추가 보완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접촉전파 등)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것이 임상증상으로 뚜렷이 발현되는 데에는 약 2~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 4개 농장은 공통적으로 2. 18.~19.에 피고농장으로부터 후보돈이 입식되어 4주후에 신고 된 것으로 보아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3. S 축산 역학조사

가. 사육체계 및 농장간 돼지 이동사항

〈 참고자료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

돼지콜레라 발생시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대(위험지역 : 발생농장 중심으로 3Km이내, 경계지역 : 3-10Km)를 설정하였고, 또한 이동제한지역(방역대)에 대해 이동제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돼지 및 양돈장 부산물 등의 전염 가능한 물건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1) S 축산은 제1,2,3농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농장 모두 '02년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김포 및 인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 제1농장(고촌농장, 경기도 김포시 소재) : '02년도 발생농장 방역대 밖에 위치
 - 제2농장(검단농장, 인천 서구 소재) : '02년도 인천 서구 발생농장의 경계지역내 위치
 - 제3농장(대곶농장, 경기 김포시 소재) : '02년도 경기 김포 발생농장의 경계지역 내 위치

- 2) S 축산은 경기, 인천지역에 20개소의 위탁관리 농장을 두고 있으며 이 중 12개소가 '02년 발생농장의 방역대(위험, 경계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동 지역 이동제한 기간내에는 돼지이동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역원 조사당시(3.20일) 14개 농장에서만 돼지를 사육 중이었고, 6개 농장은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없었습니다.

- 3) S 축산의 위탁 사육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지역(경계지역)으로 설정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일부 위탁농장(민○○, 이○○)에

서 이동제한 기간내에는 돼지를 타 농장으로 이동 할 수 없었으나, S 축산 제1농장으로 돼지가 이동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 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증 97~98면 참조).

- 4) S 축산의 농장간 돼지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제2농장(원종돈장, 순종을 생산)에서 생산된 자돈은 제3농장(종돈장) 및 제1농장(종돈장)으로 이동되며 제3농장의 자돈은 위탁사육농장으로 이동·사육되고, 제1농장은 일반종돈장과는 달리 판매용 종돈의 대기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돈사 외에는 여러 위탁농장에서 반입된 돼지가 각기 다른 돈사에 일정기간 체류하였다가 판매되어지는 대기돈사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S 제1,2,3농장과 위탁농장은 돼지이동경로로 볼 때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증 85-86면 참조).

나. S 제1농장 예방접종 현황

- 1) S 축산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당시 예방접종은 제2, 3농장 중 5주령 이상의 거세돈 위주와 일부 위탁농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을 뿐 제1농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2) 농림부는 '2002. 12. 24.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실시요령을 시달하였는 바, 그 기본방향은 02년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 경기지역의 위험·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단 종돈은 축주 희망에 의거 실시). 당시 피고의 제2, 3농장은 2002년 인천 서구, 경기 김포 발생농가의 경계지역으로 예방접종대상농가로 선정되어 있었고 제1농장은 예방접종대상농가가 아니었습니다.

다. 정밀검사 결과

- 1) 최초 신고된 송영민농장의 역학조사결과 S 축산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림부에서 경기도에 정밀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에서 '03.3.18일 제1농장 42두 돼지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돼지콜레라 항원(병원체)은 음성이었으나, 17두는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S 제1농장은 1. 사육체계 및 농장간 돼지 이동사항의 “라” 항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돈사별로 고르게 채취하되 검사두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2) 이후 검역원 1차(3.20일 채혈) 검사결과 제1농장 100두에서 항원양성 2두가 확인되었고, 검역원 2차 확대검사(3.23일 전두수 921두 채혈)에서 항원양성 81두(8.8%), 항체양성 712(77.3%)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역원의 검사결과는 제1농장에서 미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이 된 상황에서는 야외 강독 바이러스로부터 대부분의 돼지가 보호되기 때문에 항원양성 개체가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임상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개체를 골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에 돼지콜레라 강독 바이러스가 재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 높은 역가(8000배 이상)의 고역가 항체가 돼지체내에 생성되게 되는데 당시 S 축산(제1농장) 검역원 2차 확대검사에서 고역가 항체 보유 돼지가 18.9%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S 축산 분양농장 역학조사

- 1) '03.2.1일 이후 S 축산 돼지분양농장은 총 81개 농장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38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S 축산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한 상주축산은 '03.2.18일 이후 9개 농장에 돼지를 분양을 하였는데 그 중 5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 2) S 축산(상주축산 포함) 분양농장 중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44개 농장에 대한 입식돈 및 동거돈 정밀검사결과, 입식돈 검사가 가능한 39개 농장 중 20개 농장은 입식돈에서만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S 축산의 돼지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의 제91쪽 <표24> 에서, '입식돈 양성·동거돈 음성'은 아직까지 동거돈에 돼지콜레라가 전염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입식돈 양성·동거돈 양성'은 동거돈에 전염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식돈 음성·동거돈 양성'의 경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피고농장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대부분의 돼지가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돼지만이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있었으나(확대조사 항원양성을 8.8%), 이 중 예방접종된 돼지는 돼지콜레라 감염에 저항하므로 자신은 항원(바이러스)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돼지의 이동과정(돼지, 사람, 이동차량, 기구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매개·전파되어 동거돈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마. S 축산 위탁농장 역학조사

- 1) 20개 위탁농장 중에서 사육중인 1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돼지콜레라 항원음성, 항체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검사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농장에서도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S 축산의 진술과는 달리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야외 돼지콜레라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돼지콜레라 항체는 오직 2가지의 경우에서만 검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2) 조사당시 돼지 사육을 중단한 6개 위탁농장에 대한 과거의 폐사율, 사료섭취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폐사율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폐사가 증가한 시점부터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어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육중인 돼지가 없어 실험실검사(항원, 항체 검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4. 2003년도 6월이후 12월말까지 산발적 발생 역학조사

가. 발생현황 및 역학조사

- 1) 2003년도 6월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총 7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 하였습니다.
- 2) 위 7건 발생 중 경북 상주소재 이상철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S 축산 종돈장의 돼지가 이동된 상주축산(박경화)의 후보돈 분양 과정을 통하여 농장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울산 울주 소재 윤문준 및 경북 경주 소재 이상태 농장은 공히 경북 영덕지역의 돼지를 입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지역은 '03년 3월 S 축산 후보돈 분양과 관련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으로 발생농장(조임치) 및 인근 2개 농장에서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따라서 위 3개 농장은 S 축산의 돼지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중 제123쪽~136쪽 참조)

- 나머지 4개 농장은 예방접종이 안 된 무분별한 돼지입식과정 등을 통해 발생된 것으로 직접적인 S 축산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지만 위 농장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S 축산 바이러스와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5. 2003년 발생농장간의 전파요인 분석

가. 발생농장간 전파요인 분석 결과

- 1) 2003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65개 농장에 대해서 검역원 및 각 시·도 방역기관에서 역학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생농장간 전파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 중 1개가 S 축산의 제1농장이고, 44개 농장이 S 축산의 후보돈 분양농장이었으며, 18곳이 인근전파 또는 오염사람·차량으로 인한 전파로 분석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 중 제95쪽 참조)

- 2) '03년 65개 발생농장 중 시료가 확보되는 59농장 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S 축산 제1농장 분리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여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만으로 발생농장간 전파경로를 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간 전파경로는 발생농장과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자료는 역학조사결과를 보충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SHORT COMMUNICATION

Outbreaks of classical swine f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3

S-H. WEE, C-K. PARK, J-M. JEONG,
C-H. KIM, I-J. HWANG, S-J. KIM, H. YOON,
E-S. LEE, H-M. NAM, J-Y. PARK, O-K. MOON

CLASSICAL swine fever (CSF) is an economically important viral disease that occu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and Asia (Moennig and others 2003, Paton and Greiser-Wilke 2003). In the Republic of Korea, CSF was first reported in 1947, and subsequent outbreaks have made CSF one of the most devastating diseases to affect the South Korean pork industry. In an effort to rid the country of the disease, a nationwide, three-stage CSF eradication campaign was initiated in 1996: the first stage consisted of the wider use of vaccination and culling of infected animals, to reduce the number of outbreaks; the second stage consisted of mandatory nationwide vaccination and testing, to bring the disease under control; and the final stage consisted of a complete vaccination ban, so that the country could be declared free from CSF. Vaccination was conducted throughout mainland South Korea, but not in the Je-ju Islands,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100 per cent compliance. Serological surveillance was also conducted to detect infection and monitor compliance with the vaccination programme. As a result of the campaign, the number of cases of CSF decreased until none was reported in 2000 and 2001. On the basis of this situati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decided to ban all CSF vaccination on December 1, 2001, and notified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that South Korea had achieved all the OIE requirements to declare the country free from CSF.

Unfortunately, in April 2002, two cases of CSF were confirmed in Gang-won province, and 11 more cases were reporte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of the same year in Gyeong-gi province. The low temperatures at that time made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remises difficult, thus increasing the risk of the disease spreading to other areas. The decision was therefore made in December 2002, to implement emergency CSF vaccination in the surrounding regions, while implementing a stamping-out policy on the infected and neighbouring farms. The outbreaks were restricted to confined areas and it was assumed that they represented isolated cases, such as might be expected after the cessation of vaccination. No change in the overall policy was considered at that time and, once these outbreaks had been contained, efforts to declare the country free from CSF were resumed. However, CSF was confirmed in 65 pig farms across the country, between March and May 2003, resulting in the resumption of the nationwide vaccination policy. This short communication describes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to the outbreak, which attempted to locate the source of the infection.

On March 18, 2003, a suspect case of CSF was reported at a farm located in Ik-san city, Jeon-buk province, and samples were sent to th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NVRQS) for laboratory testing to confirm CSF. Additional suspect cases were then reported on farms located in Ham-an county (Gyeong-nam province), Sang-ju city (Gyeong-buk province) and Dang-jin county (Chung-nam provinc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four farms with suspected CSF revealed that they had all purchased young breeding pigs on February 18 or 19, 2003, from a

breeding farm (farm S) located in Kim-po city, Gyeong-gi province, in the region where the CSF outbreak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02 had occurred. Consequently, the NVRQS began investigations to trace farms that had purchased pigs from farm S since February 1, 2003, and conducted clinical examinations and CSF laboratory tests on pigs from these farms as part of a proactive surveillance programme.

Farm S consisted of three farm units, a great-grandparent (GGP) unit, a grandparent (GP) unit and the parent stock (PS) unit. Piglets born at the GGP unit were either kept on the unit to be used as GGP stock or supplied to the GP unit. Piglets born at the GP unit were allocated to nearby pig farms, which were under contract to rear the pigs until 150 days of age; at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 there were 20 such farms. Piglets suitable for breeding were then selected from these farms and moved to the PS unit to be reared until 180 days of age, when they were sold to ordinary pig farms, that is, not a pig-breeding or parent stock farm.

Laboratory tests were conducted using an ELISA to detect high antibody levels, and reverse transcriptase-PCR and an antigen ELISA to detect CSF virus (CSFV), from blood and tissue samples collected from the GGP, GP and PS farm units. Initial laboratory tests of 100 pigs on the PS unit showed that two pigs were CSFV positive; subsequent testing of the whole herd the following day showed that 81 of 921 (8.8 per cent) pigs were CSFV positive. Some of the piglets produced from the GGP unit were sold through the PS unit to a pig farm located in Sang-ju city, Gyeong-buk province. This farm (designated as farm S1) had already been confirmed as having CSF when the epidemiological link was discovered, and further investigations showed some of the pigs bought from farm S had been sold on to nearby farms as breeding pigs. A total of 81 pig farms had purchased young breeding pigs from farm S since February 1, 2003, and 38 of these were confirmed as being CSFV positive. Farm S1 had sold young breeding pigs to nine different pig farms, and five of these had CSFV confirmed. From the epidemiological studies of farm S, one additional pig farm that had purchased pigs during January 2003, was also confirmed positive for CSFV. Consequently, a total of 44 confirmed cases of CSF, accounting for 68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cases of CSF, were directly linked to farms S and S1 through the purchase of breeding pigs between March and May 2003.

Fig 1 shows the course of the CSF outbreak from March 19 to May 8, 2003; the 65 confirmed cases were spread across six provinces.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peaked on March 21, with 14 cases. The pattern of CSF case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group 1, consisting of 44 cases reported between March 18 and 28; group 2, consisting of 18 cases reported between April 5 and 20; and group 3, consisting of three cases reported on May 8. In group 1, there were 39 CSF positive cas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young breeding pigs from farms S and S1, which accounted for 89 per cent of the cases in this group. In group 2, seven cases were linked to farm S, accounting for 39 per cent of this group, while nine cases were due to local spread; the cause of the other two cases was unknown. In group 3, all three cases were due to local spread.

Fig 2 shows the number of CSF cases by region. Of the nine provinces in South Korea, only three, Gang-won, Chung-buk and Je-ju, were unaffected. Jeon-buk province had the largest number of cases, followed by Gyeong-nam; most of the pig farms in these areas are small in size (fewer than 1000 pigs per farm), are densely populated and had frequent visits by other farmers, which could explain the relatively large number of cases attributed to spread from neighbouring farms. This finding concurs with similar observations that farms located in herd-dense regions are at high risk of acquiring CSF from neighbouring infected farms (Mintiens and others 2003). Local spread of infection can be a major transmission route, as demonstrated by the 1997/98 epizootic of CSF in the

Veterinary Record (2005)
157, 113-115

S-H. Wee, DVM, MSc, PhD,
C-K. Park, DVM, MSc,
PhD,
J-M. Jeong, DVM,
C-H. Kim, DVM, MSc,
I-J. Hwang, DVM, MSc,
S-J. Kim, DVM,
H. Yoon, DVM, PhD,
E-S. Lee, DVM, MPH,
H-M. Nam, DVM, MSc,
PhD,
Veterinary Epidemiology
Division,
J-Y. Park, DVM, MSc, PhD,
Foreign Animal Disease
Research Division,
O-K. Moon, DVM, MSc,
PhD,
Animal Disease Diagnosis
Division,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480, Anyang City,
Gyeonggi-do, 430-824,
Republic of Korea

SHORT COMMUN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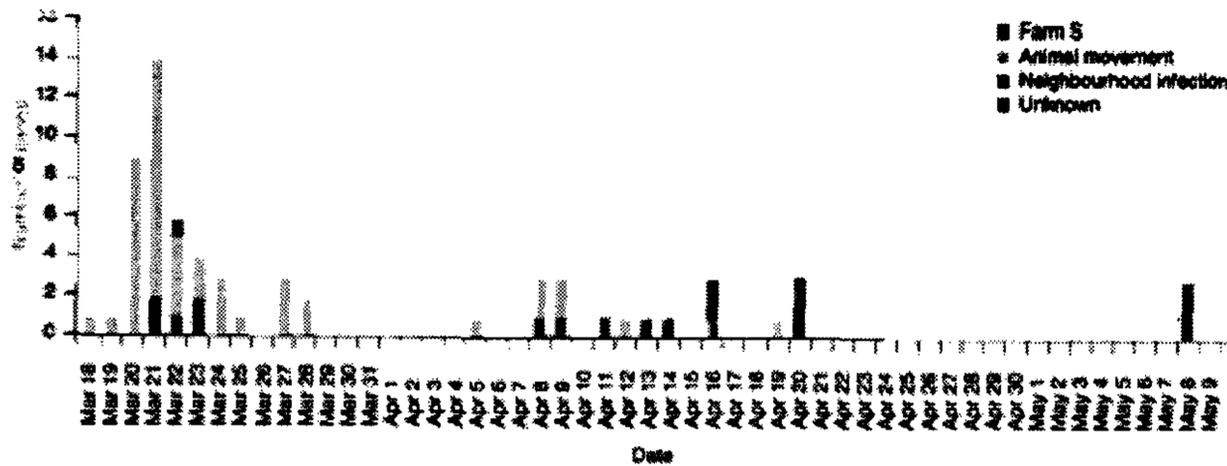


FIG 1: Number of cases of classical swine f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March and May 2003

Netherlands, in which neighbourhood infection was a major route of transmission, especially after the first control measures were enforced (Elbers and others 1999). When taking these factors into consideration, the spread of CSF in these areas could have been reduced if pre-emptive slaughter had been implemented on the high-risk neighbouring farms (Benard and others 1999).

Proactive surveillance was conducted on 90 pig farms, which were found to have purchased young breeding pigs from farms S and S1 (81 from farm S and nine from farm S1) b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f these 90 farms, 35 (accounting for 54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CSF positive cases) were identified by proactive surveillance as being positive for CSF. Proactive surveillance was especially effective becaus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had been able to find the main transmission route quickly and trace all the epidemiologically related farms. During the 1997/98 epizootic in the Netherlands, the most common source of detection was the farmer and veterinary practitioner, accounting for 56.4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breaks (Elbers and others 1999). This meant that more than half of the cases in that epizootic were detected by the presence of clinical signs. However, because the proactive surveillance programme used in South Korea included laboratory testing, it was possible to detect infected animals before the onset of clinical signs, allowing early detection and the prevention of subsequent infections on neighbouring farms. The South Korean experienc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proactive surveillance.

CSFV isolates were obtained from 60 pig farms, including farm S. The South Korean field isolates were all attributed to genetic group 2, and the 5' non-coding region and E2 nucleotide sequences of all but one of the 60 isolates were identical to those from farm S. The one farm with an isolate with different nucleotide sequences had no epidemiological link to farm S. Genetic typing of CSFV has contribut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possible source and route of CSF infections. These techniques were used during the 1997 epizootics of CSF in the EU, and demonstrated that the outbreaks had spread from Germany to the Netherlands, Italy, Spain and Belgium in succession, and were caused by a new introduction of CSFV belonging to a rare subgroup, 2.1 (Widjoatmodjo and others 1999, Greiser-Wilke and others 2000). Currently, CSFV is classified into three genetic groups, with group 3, which occurs solely in Asia (Moennig and others 2003), including all previous South Korean field isolates, which belonged to subgroup 3.2 (Paton and others 2000, Moennig and others 2003). Given that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South Korean field isolates (group 2) were found to be distinct from previous South Korean CSFV isolates, it is concluded that the recent isolates are of a new CSFV introduced from overseas. This is further supported by

reports that recent CSF outbreaks in China were caused by a CSFV belonging to group 2 (Tu and others 2001).

The South Korean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more attention is required for farms with the potential for causing a rapid spread of CSFV, such as a breeding farm. Breeding farms were presumed to be unlikely to become infected as they are managed at a high standard, but farm S was located in the region that had had an outbreak of CSF just four months previously, and better vigilance could have prevented the nationwide spread of CSF. Although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proactive surveillance were effective in finding the major transmission route and subsequently infected farms, additional control measures, including pre-emptive slaughter in the herd-dense regions, were needed. Countries seeking to eradicate CSF must consider these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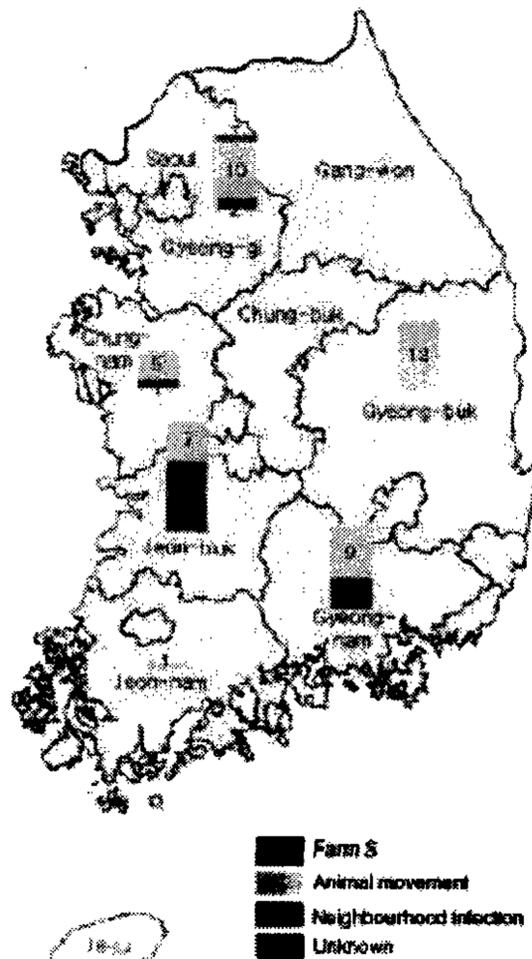


FIG 2: Number of diagnosed cases of classical swine fever by province during March to May 2003

when developing their long-term strategies for the control and eradication of CSF.

References

- HENAREZ H. J., STARK, K. D. C., MORRIS, R. S., PFIFFER, D. U. & MOSEK, H. (1999) The 1997-1998 classical swine fever epidemic in the Netherlands - a survival analysis.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42**, 235-240.
- ELBERS, A. R. W., STEGEMAN, A., MOSEK, H., EKKER, H. M., SMAAR, J. A. & PLUJMERS, F. H. (1999) The classical swine fever epidemic 1997-1998 in the Netherlands: descriptive epidemiology.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42**, 157-164.
- GREISER-WILKE, J., FRITZEMEIER, J., ROENEN, E., VANDERHALLEN, H., RUTELA, D., DE MIA, G. M., ROMERO, L., ROSELL, R., SANCHEZ-VIZCAINO, J. M. & GARRIEL, A. S. (2000) Molecular epidemiology of a large classical swine fever epidemic in the European Union in 1997-1998. *Veterinary Microbiology* **77**, 17-27.
- MINTIENS, K., LAEVENS, H., DEWULF, I., BOELAERT, F., VERLOO, D. & ROENEN, E. (2003) Risk analysis of the spread of classical swine fever virus through 'neighbourhood infections' for different regions in Belgium.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60**, 27-34.
- MOENNIC, V., FLOINGEL-NIRSMANN, G. & GREISER-WILKE, J. (2003) Clinical signs and epidemiology of classical swine fever: a review of new knowledge. *Veterinary Journal* **165**, 11-20.
- INTON, D. J. & GREISER-WILKE, J. (2003) Classical swine fever - an update. *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 **75**, 169-178.
- INTON, D. J., MCGOLDENCK, A., GREISER-WILKE, J., PARCHARIYANON, S., SONG, J. Y., LIJOL, P., STADJEK, T., LOWINGS, J. P., BORKLUND, H. & NEJAK, S. (2006) Genetic typing of classical swine fever virus. *Veterinary Microbiology* **73**, 137-157.
- TU, C., LI, Z., LI, H., YU, X., LI, X., LI, Y., ZHANG, H. & YIN, Z. (2001) Phylogenetic comparison of classical swine fever virus in China. *Virus Research* **81**, 29-37.
- WEDJICATMOPPO, M. N., VAN GENSEN, H. G. P., DE SMIT, A. J. & MOORMAN, R. J. M. (1999) Comparative sequence analysis of classical swine fever virus isolates from the epidemic in the Netherlands in 1997-1998. *Veterinary Microbiology* **66**, 291-299.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백서

2006년 10월 일 인쇄
2006년 10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Tel : 031-467-1818
Fax : 031-467-1739

발행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문일

편집인 : 박최규, 이병용, 김태용, 장순석, 송재영, 위성환,
김병한, 김정주

감 수 : 안수환, 이주호, 김창섭

인쇄처 : 건양기획인쇄 ☎ 031)466-8735
